#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박 광 동 •김 명 아 • 문 흥 안 • 김 대 용 • 유 웅 조

## 법제교류 연구 14-18-(3)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박 광 동•김 명 아•문 흥 안•김 대 용•유 웅 조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The research on ways for cooperation among relevant legislative exchange institutions

$$
\begin{aligned}
& \text { 연구자: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 \text { Park, Kwang Dong } \\
& \text {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text { Kim Myung-Ah } \\
& \text { 문흥안 (건국대학교 교수) } \\
& \text { Moon, Heung-Ahn } \\
& \text { 김대용 (KDI 팀장) } \\
& \text { KIM, Daeyong } \\
& \text { 유웅조 (숙명여대 겸임교수) } \\
& \text { You, Woong Jo }
\end{aligned}
$$

$$
\text { 2014. 11. } 28
$$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square$ 연구의 배경

○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 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현재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 계와 관련하여 중복성과 분절화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square$ 연구의 목적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방향과 합리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주요 내용

공공연구기관○ 사업규모 확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 반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필요법학대학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생활밀착현 법제교류, 적 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제개발협 력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

○ 현지화 전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유•무상지원사 업과의 연계,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필요중앙행정부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집행 체계 구축 필요
$\square$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 법제교류협력협의회 구축을 통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 력 필요

## III. 기대효과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square$ 연구 결과에 따른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 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2 주제어 : 개발원조, 법제교류, 법제교류협력, 법제교류협력지원, 법 정비지원


##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O November 25, 2009, Korea became the 24th membe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with unanimous approval by all DAC member states.

O Legislative Exchange served as a means for sharing Korea's leg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benchmark model of legislation to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promoting legisla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

O There is some degree of segmentation and redundancy on efficiency of Legislative Exchange among related legislative exchange institutions.Purpose of this study

O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eek discussion on resonable ways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network among related institutions.

## П. Main Contents

Public InstitutionsO Expand size of the Business, Integrate mid to long term vision and strategy, and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 Cultivate Legal expert and create new market, establish right department and groundwork, Common cooperatives task planningLaw Schools

O Shift thinking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alistic legislative exchange, actively attract foreign students, Overcome unsupportive department, cultivate exper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quare$ Civilian Institution (Economic Related Institution)

O localization strategy, comprehensive and organized task, connect business between those incur expense vs free of charge. Execute legislative exchange from public point of view.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 Raise efficiency through comprehensive and nonduplicate taskLegislative Exchange Model for relevant institution

O Need cooperation among legislative exchange related institutions via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 П. Expected Effects

Elevate credibility by setting a right direction for legislative exchange cooperation among related institutionThe research outcome will serve a guide for Korea's legislative exchange cooperation method2 Key Words : Development Assistance, Legislative Exchange, Legislative Exchange cooperation, Legislative Exchange cooperation support, Legal Organization support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6
제 2 장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 19
제 1 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19

1. 무상원조 사업 (외교부, KOICA 등) ..... 20
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기획재정부 주관) ..... 24
3. 연구회 국제협력사업 ..... 27
4. 기타 관련 연구 및 사업 ..... 28
5. 해외 사례 ..... 29
제 2 절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 30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31
7. 국토연구원 ..... 33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36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9
10. 한국개발연구원 ..... 42
11. 한국법제연구원 ..... 45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8
1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51
14. 한국행정연구원 ..... 54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56
제 3 절 평가 및 개선방안 ..... 59
16. 시사점 ..... 59
17. 평 가 ..... 61
18.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 70
제 3 장 법학대학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 77
제 1 절 대학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77
19. 대학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 77
20. 법과대학에 있어서 국제교류 ..... 80
21.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 82
제2 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 86
22. 해외교육기관과의 교류 현황 조사 ..... 86
23.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실적 분석 ..... 97
24. Campus Asia 시범사업 ..... 103
제 3 절 평가 및 개선방안 ..... 106
25. 시사점 ..... 106
26. 평 가 ..... 111
27.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 113
제 4 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 협력 방안 ..... 139
제 1 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139
28. 아시아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 ..... 139
29. 법제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 142
제 2 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 145
30. 감정평가협회 ..... 145
31. 아시아교류협회 ..... 154
32. 아시아법연구소 ..... 172
33. 한국협력센터(수파누봉대학) ..... 175
34. 법무법인화우의 중앙아시아 법제 민간교류 협력 ..... 185
제 3 절 평가 및 개선방안 ..... 188
35. 평 가 ..... 188
36. 시사점- 일본의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 사례 ..... 191
37. 추진전략 및 정책 제언 ..... 192
제 5 장 중앙행정부처의 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 197
제 1 절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 197
38. 일반적 현황 ..... 197
39. 문제점 ..... 201
제 2 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사업 현황 ..... 205
40. 외교부 ..... 205
41. 기획재정부 ..... 210
42. 사업현황 ..... 213
43. 법무부와 검찰청 ..... 215
44. 법제처 ..... 222
45. 대법원 ..... 224
46. 기타 주요 행정부처 국제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사업영역 ..... 225
제 3 절 개선방안 ..... 237
47. 이론적 측면 ..... 237
48. 사업내용적 측면 ..... 238
49. 추진조직적 측면 ..... 240
50. 추진절차적 측면 ..... 241
51. 추진기반적 측면 ..... 242
제 6 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 243
제 1 절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 243
52. 유사사업 개념 ..... 243
53. 유사사업 협력 방법 ..... 246
54.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의 근거 및 교류 형태 ..... 254
제2 절 분야별 협력 모형 ..... 269
55. 중앙행정부처 협력 모형 ..... 269
56. 공공연구기관 협력모형 ..... 271
57. 법학대학 협력모형 ..... 272
58. 민간기관(경제기관) 협력모형 ..... 272
59. 종합모형 ..... 273
참 고 문 헌 ..... 27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내 법제 관련 기관의 해외의 법제 관련 기관간의 법제교류 협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협력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 겠으나, ${ }^{1)}$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우리 법제에 대한 자신감에 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용어적 사용이 있다. 즉 ‘법제 지원’, ‘법정비지원’, ‘법제개혁지원’, ‘법무협력’, ‘법률문화교류’, ‘법제 한류'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2) 그런데 용어의 사용과 관련 하여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와 대상국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용어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법제교류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다만, 법제교류협력의 내용 안에는 법제 교류 및 지원이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내용은 명확 하게 표시하는 용어로서는 '법제교류지원'이 타당할 것이다.3)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상국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라는 관점에서 법제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법제교류협력이 활발해 짐에 따라 관련 기관의 사업에 있어 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중 법제교류협력 기관간 사

[^0]업의 중복과 분절화로 인한 비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법제교류협력 기관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주요 예산 및 르로그램은 $\mathrm{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원조),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기관별 자 체 예산 및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 된다.

이러한 사업의 예산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제교류협력 기관간 사업의 중복과 분절화를 최대한 줄이면서 그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협력모형의 구축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의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는 중앙행정부처, 공공연구기관, 법학대학,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4)

중앙행정부처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법원,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 소 등(가나다 순)을 제시할 수 있고, 공공연구기관으로서는 KOICA, KDI ,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법학대학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와 법학교육 관련 기관을 제시할 수 있으 며,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으로는 일반 기업들에 의한 법제교류협력 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제2장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김대용 KDI 팀장 담당)과 관련하여 사 업의 종류, 추진체계와 기관별 현황, 평가 및 시사점, 개선방안에 대 해서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법학대학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 안(문흥안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민간기관
4) 법제교류협력기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한 ODA 연구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에 대해서(김명아 한 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담당), 제 5 장에서는 중앙행정부처의 국제법 제교류협력 현황 및 개선방안(유웅조 숙명여대 겸임교수 담당), 마지 막으로 제6장에서는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한국법 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담당)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br> 법제교류협력방안 

## 제 1 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학계•연구계, 민간 부문에 이 르기까지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출연연의 대다수가 국제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크다. 국제협력사업의 중요성 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분 류를 확립하고 그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연구기관,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국제협력사업은 참여하 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발주형태 및 추진방식에 따라 나눈다 면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교부 주도 하에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원조 사 업이나 그 위탁기관인 KOICA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다. 둘째, 한국이 그동안 경제사회 분야에서 축적한 발전경험을 공유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mathrm{KSP})^{5}$ ) 중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셋 째, 연구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 서 연구회는 과학기술, 경제인문사회 분야 등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진 조직인데, 일종의 출연연 간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넷
5) KSP는 통계 분류 및 구분 상 무상원조로 분류되기는 하나 비용분담 원칙을 기반 으로 한 공동 컨설팅을 추구하고 있으면 사업 대상국의 경우에도 ODA 수원국 이 외에 OECD 가입국, G20 국가은 물론, 자원부국 및 기타 전략국 등과도 사업을 실 시하고 있는 등 기존 무상원조 사업과는 별개로 구분하였다.

째, 각 연구기관별로 배정된 일반 또는 연구 관련/지원 사업 중 일부 를 국제협력 또는 교류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앞서 언급된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의 사업 형태는 주로 수탁용역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기 언급된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협력사업, 특히 법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각각의 분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무상원조 사업 (외교부, KOICA 등) ${ }^{6}$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쓰이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 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 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 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 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 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국제개발협력 지원 자금의 상환 조건이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는 무 상원조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유상원조 간의 분류 기준이 된다.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를 의미하며,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원조다. 특히 무상원조의 주무부처는 외교부로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80 \%$ 정도를 기획하여 시 행하고 있다. 외교부가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6) ODA Korea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검색일: 2014.11.28)) 제시된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을 작성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left.(\mathrm{KOICA})^{7}\right)$ 과 논의, 조정하여 ODA 사업을 진행한다.

무상원조의 경우, 정부 중앙 부처, 청, 지자체 및 공공 기관들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 예산을 배분받아 집행하며, 프 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등의 사업유형으로 구분된 다. 이 중 상당부분은 국가 간 협력을 반영하는 초청연수 및 봉사 사 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단체의 ODA는 소규모의 도시 간 자매 협 정, 인적 교류 사업 등이 많다.

ODA 사업 중 법제교류사업은 KOICA는 물론, 일부 부처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공공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제처는 제 1 회 아시아법제포럼을 통해 체결된 미얀마 법무부와의 MOU를 바탕으로 미얀마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KOICA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측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 법제기관 교류사업,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등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8)에서 는 2002년부터 KOICA로부터 위탁을 받아 몽골, 베트남, 중국, 방글라 데시, 카자흐스탄, 파나마, 에디오피아,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등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사법제도 연수과정을 실시하였 다. 그 외에 법무부 ODA 중 APEC 기업환경법제개선지원 사업, 개도 국 법제정비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경찰청 ODA 중 형사사법

[^1]8) http://www.scourt.go.kr(검색일: 2014.11.28)

업무전산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법제교류사업이 각 부처 및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중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이 두 기관이 ODA 예산을 별도로 배분받아 집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KDI 는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한국 발전경험을 협력대상 국과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 총괄•집행하고 있다. KSP 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원조 형태/구분9)

| 구 분 | 2011 |  |  | 2012 |  |  |
| :---: | :---: | :---: | :---: | :---: | :---: | :---: |
|  | 양자간 | 다자간 | 총ODA | 양자간 | 다자간 | 총ODA |
| 강원도 | 0.46 | - | 0.46 | 0.27 | - | 0.27 |
| 경기도 | 0.44 | - | 0.44 | 0.52 | - | 0.52 |
| 경기도 교육청 | - | - | - | 0.18 | - | 0.18 |
| 경상남도 | - | - | - | 0.11 | - | 0.11 |
| 경상북도 | 1.87 | - | 1.87 | 6.37 | - | 6.37 |
| 경찰청 | 1.29 | - | 1.29 | 1.13 | - | 1.13 |
| 고용노동부 | 1.89 | 5.16 | 7.05 | 1.84 | 12.43 | 14.27 |
| 공정거래위원회 | 0.10 | - | 0.10 | 0.15 | - | 0.15 |
| 관세청 | 0.10 | - | 0.10 | 1.86 | - | 1.86 |
| (구)교육과학기술부 | 33.42 | 7.3 | 40.72 | 42.64 | 3.66 | 46.30 |
| 국가보훈처 | 0.05 | - | 0.05 | 0.05 | - | 0.05 |
| 국무조정실 | $\mathbf{1 . 8 2}$ | $\mathbf{0 . 5 7}$ | $\mathbf{2 . 3 9}$ | $\mathbf{4 . 4 2}$ | $\mathbf{0 . 8 1}$ | $\mathbf{5 . 2 2}$ |
| 국민권익위원회 | 0.03 | - | 0.03 | 0.04 | - | 0.04 |
| 국방부 | 1.44 | - | 1.44 | 0.81 | - | 0.81 |

[^2]제 1 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 군분 | 2011 |  |  | 2012 |  |  |
| :---: | :---: | :---: | :---: | :---: | :---: | :---: |
|  | 양자간 | 다자간 | 총ODA | 양자간 | 다자간 | 총ODA |
| (구)국토해양부 | - | 0.1 | 0.10 | - | 0.10 | 0.10 |
| 국회 | 0.20 | - | 0.20 | - | - | - |
| 금융위원회 | 0.14 | - | 0.14 | 0.02 | - | 0.02 |
| 기상청 | 0.06 | 0.07 | 0.13 | 0.59 | 2.14 | 2.72 |
| 기획재정부 | 22.54 | 48.69 | 71.23 | 30.67 | 49.46 | 80.12 |
| (구)농림수산식품부 | 10.19 | 8.63 | 18.83 | 11.15 | 8.67 | 19.82 |
| 농촌진흥청 | 7.13 | 0.32 | 7.45 | 9.33 | 0.33 | 9.66 |
| 대검찰청 | 0.30 | - | 0.30 | - | - | - |
| 대구광역시 | 0.03 | - | 0.03 | 0.05 | - | 0.05 |
| 대전광역시 | 0.01 | - | 0.01 | - | - | - |
| 마사회 | - | - | - | 0.11 | - | 0.11 |
| 문화재청 | 0.25 | 0.09 | 0.34 | 0.30 | 0.36 | 0.65 |
| 문화체육관광부 | 1.37 | - | 1.37 | 2.48 | 0.42 | 2.90 |
| 방송통신위원회 | 3.78 | 1.31 | 5.09 | 4.26 | 1.39 | 5.65 |
| 법무부 | $\mathbf{1 . 0 2}$ | - | $\mathbf{1 . 0 2}$ | $\mathbf{0 . 7 2}$ | $\mathbf{0 . 1 8}$ | $\mathbf{0 . 9 0}$ |
| 보건복지부 | 6.78 | 11.95 | 18.73 | 9.36 | 17.07 | 26.43 |
| 부산광역시 | 0.16 | - | 0.16 | 0.20 | - | 0.20 |
| 산림청 | 3.49 | 2.69 | 6.17 | 4.62 | 1.61 | 6.23 |
| 서울특별시 | 0.97 | - | 0.97 | 1.89 | - | 1.89 |
| 여성가족부 | 0.74 | 4.83 | 5.57 | 0.71 | 4.42 | 5.13 |
| (구)외교통상부 | 22.02 | 53.94 | 75.96 | 80.41 | 69.89 | 150.30 |
| 울산광역시 | 0.01 | - | 0.01 | 0.04 | - | 0.04 |
| 인천광역시 | 2.63 | - | 2.63 | - | - | - |
| 전라남도 | 0.01 | - | 0.01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0.00 | 0.36 | 0.36 |
| 중소기업청 | 0.02 | - | 0.02 | - | - | - |
|  |  |  |  |  |  |  |
|  |  |  |  | - |  |  |

제 2 장 공공연구기관 국제협력사업 현황 및 평가와 개선방안

| 구 분 | 2011 |  |  | 2012 |  |  |
| :---: | :---: | :---: | :---: | :---: | :---: | :---: |
|  | 양자간 | 다자간 | 총ODA | 양자간 | 다자간 | 총ODA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0.17 | - | 0.17 |
| (구)지식경제부 | - | 0.16 | 0.16 | 6.96 | 1.58 | 8.55 |
| 충청남도 | 0.00 | - | 0.00 | - | - | - |
| 통계청 | 0.09 | 0.05 | 0.14 | 0.51 | 0.10 | 0.60 |
| 특허청 | 0.81 | 0.01 | 0.82 | 1.13 | 0.35 | 1.47 |
| KDI | 6.38 | 0.76 | 7.14 | 5.54 | 1.78 | 7.32 |
| 한국수출입은행 | 428.98 | 5.00 | 433.98 | 487.28 | 5.00 | 492.28 |
| 한국은행 | - | 176.56 | 176.56 | - | 228.03 | 228.03 |
| (구)행정안전부 | 16.25 | - | 16.25 | 18.86 | - | 18.86 |
| 환경부 | 4.81 | 3.68 | 8.48 | 0.45 | 3.68 | 4.13 |
| KIEP | 0.64 | - | 0.64 | 0.44 | - | 0.44 |
| KOICA | $\mathbf{4 0 4 . 8 6}$ | $\mathbf{3 . 1 5}$ | $\mathbf{4 0 8 . 0 1}$ | $\mathbf{4 4 4 . 5 4}$ | $\mathbf{0 . 5 0}$ | $\mathbf{4 4 5 . 0 4}$ |
| 합계 | 989.57 | 335.02 | $1,324.5$ | $1,183.1$ | 414.28 | $1,597.4$ |
| 9 | 7 | 5 |  |  |  |  |

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적 수요 및 이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2004년에 발족되었다. KSP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정책이나 제도를 협력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 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협력국 간의 경 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KSP 사업은 정책자문사업, 모듈화사업, 국제기구 컨설팅 사업으로 나뉘게 된다. 첫째, KSP 정책자문사업은 양자 간 사업 형태로 한국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돕기 위해 맞춤형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하고 정리하여 100 여개 모듈, 즉 한국 발전경험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기존 양자협력 형태의 KSP 사업을 다자협력의 형태로 발전시켰는데, 한국의 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이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2013년 기간 동안 총 46개국, 606개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2004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을 시작으로 그동안 사업 대상국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36개국에 156개 의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수행하였다. 자문과제도 수출 진흥과 경제기획에서 녹색성장전략 등으로 다양화되었고 협력대상국 들도 OECD 회원국, G 20 국가는 물론, 자원부국 등으로 확대되었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2004년~2013년 기간 동안 총 46개국, 606개 정 책자문을 제공하였다. 2004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을 시작으로 그 동안 사업 대상국이 크게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36 개국에 156 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문을 수행하였다. 다음의 그림들은 KSP 정책자문사업의 규모 확대,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2] KSP 정책자문사업 연도별 지원현황('09~'13년) ${ }^{10)}$

| 구 분 | 09 | ${ }^{\prime} 10$ | ${ }^{\prime} 11$ | '12 | '13 |
| :---: | :---: | :---: | :---: | :---: | :---: |
| 예산 <br> (지원국) | 50 <br> (11개국) | 74.5 <br> (17개국) | 140 <br> (26개국) | 170 <br> (33개국) | 166 <br> (36개국) |
| 국별예산 <br> (평균) | 4.5 | 4.9 | 5.4 | 5.2 | 4.6 |

10) KDI 내부 자료

| 구 분 | 09 | '10 | '11 | '12 | '13 |
|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중점 } \\ & \text { 지원국 } \end{aligned}$ | 베트남 | 베트남, <br> 인니, 우즈벡, <br> 캄보디아 | 베트남, 인니, 우즈벡킴볻p난 몽골 가나, 페루 | 인니, 우즈벡, 캄보디아, <br> 사우디, 몽골, 알제리, 리비아, 가나, 스리랑카, 페루, 에콰도르 | 스리랑카, 몽골, 미안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온두라스, 사우디, 우즈벡 |
| $\begin{aligned} & \text { 일반 } \\ & \text { 지원국 } \end{aligned}$ | 리비아, <br> 인니컂훙 <br> 캄보디아, <br> 쿠웨이트 <br> 도매냐궁, <br> 우즈벡, <br> 우크리나 <br> 얄챠리ㄱㅏㅏ | 몽고 라오스, <br> 카자흐, UAE <br> 쿠웨이트, <br> 브라질 페루, <br> 아제르, <br> 사우디, <br> 리비아, <br> 가나, <br> DR 콩고, <br> 도미니카(공) | 사우디, UAE, 카자흐 라오스, 미안마, 필리핀 스리랑카, 브라질, 도미니카(공), 온두라슥퍄뺘 에콰도르, 볼리비아, 적도기니, 가봉, 에티오피아, 얄제맅ㅌㄴㄴㅈㄹ약 남아공 | UAE , 카자흐, 가봉, 도미니키(공, 라오스, 멕시코, 미안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에티오피아, 오만, 온두라스, 적도기니, 콜롬비아, 탄자니아, 터키, 파나마, 필리핀, 루마니아; 파키스탄 남아공 | 베트남, 코스탸리카; 가봉, 쿠웨이트,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DR 콩고, 가나, 이집트, 멕시코, 벨리즈,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러시아, 루매ㄴㅏㅑㅑ캬쟈흐스탄 헝가리, 터키, 도미니카(공)태국, 탄자니아, UAE |

특히 법제와 관련된 KSP 사업으로 2009 인도네시아 KSP로 추진되 었던 경쟁법에 관한 자문이나 2012 몽골 KSP 주제였던 몽골 예금보 험법에 대한 자문, 2013 KSP 중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공정거래법 자문, 캄보디아 상표법 관련 자문 등이 대표적이다.

KSP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KSP 정책자문사업 등 지식공유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더 나아 가 한국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1차적으로, 2012 년까지 3 년에 걸쳐 100 대 과제에 대한 모듈화 사업을 완료하였다.

KSP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개선을 위해 2011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Joint Consul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을 발 족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에서 동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은 평행협력(Parallel cooperation) 방식의 사업 수행을 통해 KSP 와 국제기 구의 재원 및 역할 분담을 통해 원조의 분절화를 방지하고, 원조 공 여기관 간 조화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1년 출범 이 래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총 7개 국제기구와 39건의 공동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였다

KSP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사업을 재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위탁 사업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예. 한국행정연구원 등) 중 일부가 담당하 여 추진하게 된다. 또한, 최근 정책자문사업의 총괄기관을 KDI , 산업 연구원(KIET), 국토연구원 등으로 나누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 써 보다 많은 출연연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인 KSP를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3. 연구회 국제협력사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 경제인문사회 분야 등의 각종 정 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연구회라는 총괄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 각 연구회별로 소속 출연연 간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

의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이러한 연구회의 사업실적 중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 연구재단은 별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사업 중 하 나의 큰 분류로 정의하여 이에 포함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도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연구기관 협동연구(예. OECD와의 연구협력 및 국 제회의, 국제석학 및 글로벌 전문가 포럼 등)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기타 관련 연구 및 사업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 이외에도 출연연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 하게 되는 일반연구나 연구 관련 및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 력사업을 간접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으로는 협 력대상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하는 국제회의나 행사, 주요 해외 협력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각 연구기관 의 자체예산을 이용하여 추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11)에서는 아시아법제 연구라는 간행물을 출간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각종 전 문가 초청포럼과 국제학술회의가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아시아 법령정보네트워크 사업 ALIN(Asian Legal Information Network) ${ }^{12)}$ 을 통 해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 관련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법령정보를 상호교류하고 아시아 각국의 법령, 판례, 관보 기타 법령정보를 수집•정리함은 물론 주요 법령을 번역•분석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해 왔으며, 이는 2007년부 터 법제교류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시행하여 왔다.
11) http://www.klri.re.kr(검색일: 2014.11.28)
12) http://www.e-alin.org(검 색일: 2014.11.28)

## 5．해외 사례

## （1）일 본13）

일본 법무성 산하 「법무총합연구소」의 경우 2001년 4월부터 국제협 력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국제협력부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부 터의 요청을 받아 외무성，JICA 등과 협력하여 요청국의 시장경제발 전을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민•상사법분야의 법령정비와 그 확실한 운용데 초점을 맞추어 법정비 지원을 진행해 왔다．14）국제협력부는 외무성，JICA，국제민상사법센터 등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고 활동하 고 있으며，또한 법정비지원활도에 관여하는 기관이 함께 대체로 매 년 1회 모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법정비지원연락회」를 개최하고 있다．${ }^{15)}$

이외에도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일본변호사연합회，일 본사법서사연합회，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고베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와세다대학 비교법연구소，관서아시아민상 사법연구회 등 많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 부중심에서 탈피한 모든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열린 원조를 지 향하며 NGO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16）

[^3](2) 독 일17)

독일 연방행정부의 법률안 작성을 위한 예비연구를 위탁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독일에 국책연구소인 막스플랑크연구회가 있다. 독일 의 막스플랑크연구회는 국책 연구소로서, 정부 재원으로 설립된 독립 적인 연구기관이며, 총 77 개의 연구소와 3 개의 기타 연구기관이 설립 되었다. 막스플랑크연구회(Max-Plank-Gesellschaft)를 모체로 분야별로 총 76 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막스플랑크연구회는 국제적인 연 구기관으로서 독일뿐만 아니라 EU의 유럽집행위원회의 위탁연구를 수행하거나 독일 연방행정부 및 EU 의 위탁연구 외에 독자적인 연구 도 수행한다. 정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이지만, 연구 내용에 대해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지닌다.

그 중에서 함부르크에 위치한 "해외 및 국제적인 사법을 위한 연구 소(Max-Plank-Institut fuer auslae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가 사법(Privatrecht)분야에서 국제법을 비롯하여, 각 국의 법체계를 비 교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만의 독자적인 연구 외에 사법 및 경제법(Privat- und Wirtschaftsrecht) 분야에서 연방행정부의 위탁 연 구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 과 관련하여 해당 연방행정부로부터 연구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제 2 절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항

본 절에서는 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1) 비전 및 가치, 목표,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4) 재정 및 재원 등 네 가지 측면에서의 현황은 물론, 이러한 현황이
17) 한국행정학회, 선진 각국의 기업법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등 현황과 발전적 모 델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53-59면 중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주로 법제 분 야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 회의 제반 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의 비 전은 「국리민복과 국제공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글로벌 리더」이며, 3 대 가치는 (1)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2) 국민 삶의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 (3) 국제사회 발전에 기 여하는 과학기술정책 등이다.

연구원의 비전 중 국제공영 기여, 글로벌 리더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는 점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 (2) 조직 및 인원

아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국제기술혁신협력 센터를 두어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개발협력사업 중 기술협력, 조사분 석,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 센터는 올해 초 출범하 여 창립세미나 및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글 로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47 명(선임연구위원급 13 명, 연구위원급 19 명, 부연구위원급 14 명, 전문연구원급 1 명), 행정 직 8 명으로 구성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내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그림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직도18)

(3) 주요 사업

국제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 요 사업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책 대안 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과학기술의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 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정부•산업계•학계 및 외국기 관과의 연구용역 수탁•위탁 및 공동 협력연구, 연구결과의 보급•홍 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특히 국제협력정책 분야 중•과학기술 외교/국제화/협력 정책, 국제 기구, 다자간 협력 이슈, FTA 등 새로운 과학기술 국제규범 대응방안
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tepi.re.kr(검색일: 2014.11.28)

등에 관한 연구 및 사업, 동북아/남북한협력 분야 중 중국 과학기술정 책 동향, 동북아 과학기술 대응전략,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및 남북한 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은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 연금은 131 억원이고, 사업수입이 77억원, 부대수입이 2 억원 정도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사업이 약 21 억원, 연구 관련 및 지 원 사업이 약 16억원, 일반사업이 약 31억원, 수탁용역사업이 77억원 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 중이 $86 \%$ 정도 수준으로, 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 수탁용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 \%$ 수준이다.

## 2. 국토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 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의 비전은 「선진 국토창조의 동북아 국토정책 핵심연구 기관」이며, 중장기 목표는 (1)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2) 글로 벌인지도를 지닌 연구기관 도약, (3) 국내 국토정책 선도 연구기관, (4)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원의 목표 중 글 로벌 인지도를 지니는 것과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라는 측면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간이 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

정책 지식플랫폼 구축이나 외국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 연구협력 네 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및 인원

국토연구원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라는 국제개발협력 및 교류 분야 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 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 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도 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본 센터는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각종 개발관련 연구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mathrm{UNDP}, \mathrm{A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외협력기구와 연계하여 국제활동을 하는 등 해외 연구기관들과 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가적 연구개발의 주도적 역할 을 담당하여 국제적 연구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100 명(선임연구위원급 23 명, 연 구위원급 34 명, 책임연구원급 35 명, 연구원급 8 명), 전문직 4 명, 관리 직 16 명으로 구성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내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 (3) 주요 기능 및 사업

국토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은 물론,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 연구용역 수탁하여 수행하고, 국토전 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그림 2] 국토연구원 조직도19)



특히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프로그램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통상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 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 개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 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 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개 도국의 발전가능성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검색일: 2014.11.28)

또한, 국제협동연구라는 추진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10 개국 16 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구인력 및 정보를 상호교환, 공동연 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 에서 신설한 국토개발관련 교육, 연구, 정보 협력기구(TRISHNET)에 이사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사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국토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연금이 약 197억원, 위탁수입이 약 95억원, 기타수입이 약 1.5 억원을 차지한 다. 전체 예산 중 위탁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 수준이다. 이 중 에서 연구사업비는 약 216억원이다.

##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 세기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 기 위해 1989년 12월 29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비전은 「한국경제 위상강화를 선도적으로 지 원하는 연구기관」이며, 미션은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중장기 목표는 (1)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보, (2) 선도적 경제정 책 연구기능 강화, (3) 창조적 기관운영체계 구축 등이다.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 가치 등을 기준으로 할 때 국제개발협력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나 기반이 미약한 편이긴 하나 사업이나 업무 의 특성 등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 조직 및 인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55 명(선임연구위원급 10 명, 연구위원급 9 명, 부연구위원급 17 명, 전문연구원급 15 명, 연구원 급 4 명), 전문직 2 명, 행정직 8 명, 기능직 2 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조직 내 국제협력정책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협력정책팀, 개발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세 개 팀으로 구성된다.

국제협력정책실은 다자간 경제협력 이슈 연구, 국정과제 중 주요 국 제경제 협력 이슈에 대한 정책지원 연구, 경제허브 정책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 연구, 통일 관련 국제협력 연구 등을 담당한다. 첫째, 협력정책팀은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연구, 동아시 아 무역, 투자 등 부문별 협력에 대한 연구, GTI 등 동북아경제협력 관련 연구, 국정과제 중 글로벌 경제이슈와 연관된 주제에 대한 연구, 신흥지역 국가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각종 자원획득 경쟁, 글로벌 공 유자원의 문제 등 연구,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 정책 관련 연구, 특구 관련 규제 완화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둘째, 개발협력팀은 세계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교연구 및 동향분석,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ODA) 정책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 관련 컨설팅 사업 등을 수행한다. 셋째, 통일국제협력팀은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연 구, 북한 경제의 체제전환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한다.
[그림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직도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연구 관련 사업으로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KIEP-PRI-CASS 회의, KIEP-IMF Conference 등의 국제회의 개최, 해외유관기관 연구교류, KIEP 북경사무소 운영,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KU-KIEP-SBS EU센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홍보사업을 통해 해외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 및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온라인 홍보고객 관리를 통하여 정보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사업의 경우, 미 KEI 운 영, 세계지역연구 네트워크 강화, 한-미 관계, 북한 이슈 및 한반도 문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검색일: 2014.11.28)

제에 관한 공동연구，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동 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추진지원，전략지역 심층연구，중국 권역별•省 별 연구단 운영，주요 지역별•부문별 개발협력방안 연구，국제행사 타당성 조사，온라인 신흥지역 정보 네트워크 운영，중점협력국의 국 가협력전략（CPS）연구，중국종합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출 연금은 약 308억원이고，사업수입이 24억원，부대수입이 2억원 정도이 다．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기본연구사업이 약 18 억원，연구 관련 및 지원 사업이 40 억원，일반사업이 152억원，수탁용역사업이 9.7 억원 을 차지한다．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 중이 $92 \%$ 정도 수준으로，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 \%$ ，수탁용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 수준이다．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수탁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4．정보통신정책연구원
（1）비전 및 가치，목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 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 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비전은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정책연구기관」이며，중장기 목표는（1）신ICT 생태계 대응 국가 핵심

아젠다 선도, (2) 스마트 시대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이다. 특히 경영 목표 중 글로벌 리더쉽 확보와 연계되어 ICT 국제협력 강화 및 연구 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가 충분하며, 이를 위해 ICT 글로벌 협력 및 통상협상 강화, 한국 ICT 성공경험의 국제공유 및 정책자문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 하고 있다.
(2) 조직 및 인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79 명(선임연구위원급 13 명, 연구위원급 13 명, 부연구위원급 42 명, 전문연구원급 7 명, 연구원 급 4 명), 행정직 12 명, 기능직 4 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국제기구협력그룹, 국제개발협력그 룹, ICT 통상센터로 구성된다.

우선 국제기구협력그룹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ITU (국제전기통 신연합)에서 다루는 주요 ICT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APEC (아태경제협력체), $\mathrm{ASEAN}($ 동남아연합)등 아태 지역기구에 서의 ICT 부문 협력과 AIBD 등의 방송기구에서의 논의사항을 분석,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개발협력그룹의 경우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등 다자 기구와의 개발협력업무를 지원하고, ICT 분야 개발협력(ODA)전략 수 립, 남북 ICT방송부문 협력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ICT 통상센터는 WTO, FTA등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 추진 시 ICT 분야 협상 대응을 담당하며, 주요 ICT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를 통해 효과적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직도21)

(3) 주요 사업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 국제협력 분야 전담부서인 국제협력연구실 은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 자문 및 협력사업, ITU-D 대응 및 전략연구, 방송통신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촉진 사업, 방송통신통상협상력 강화, FTA확산 등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대응방안 연구, TPP 참여시 대응전략 관련 심층연구, ICT 인적역량 개발지원의 글로벌 현황 및 APCICT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협력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로, 「중국
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sdi.re.kr(검색일: 2014.11.28)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분석」，「사이버공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서울 총회에의 시사점」 등 2종을 발간하였다．
（4）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출 연금은 약 87억원이고，사업수입이 118 억원이다．이를 사업별로 살펴 보면，기본연구사업이 약 5억원，연구 관련 및 지원 사업이 약 11 억 원，수탁용역사업이 118억원，그 외 기타사업이 19 억원을 차지한다． 사업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외 사업 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7 \%$ 정도 수준으로，수탁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 \%$ 수준이다．특히 수탁용역사업이 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 5．한국개발연구원

（1）비전 및 가치，기능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71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아 왔으며，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기초한 선제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수립 에 기여해 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비전은「세계적인 연구수월성을 인정받는 KDI」이 며，경영목표는（1）국가적 어젠다 중심 연구，（2） KDI 의 국제화，（3）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 강화，（4）조직안정 및 연구관리제도 내실화 등이다．특히 연구원의 경영목표 중 KDI의 국제화 측면은 국제개발협 력사업을 수행하는데에 근거가 된다．
(2) 조직 및 인원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127 명(선임연구위원급 15 명, 연구위원급 12 명, 부연구위원급 20 명, 전문위원급 35 명, 전문연구 원급 44 명, 연구원급 1 명), 사서 1 명, 행정직 21 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담하는 KDI 국제협력센터는 경제발전경 험 공유사업 $(\mathrm{KSP})$ 의 총괄기관 역할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자문•기획실, 정책자문•평가실, 개발 연구실 등 세 개 실로 구성된다.
[그림 5]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직도22)

(3) 주요 사업현황

먼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점증하는 국제협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82년에 설치된 국제개발교류협력프로그램(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을 모태로 2004년 KDI국제정책대학원 내의
22)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di.re.kr(검색일: 2014.11.28)

경제협력센터로 설립되어, 2007년 KDI 본원으로 이관된 후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연구와 자문의 통합 추진을 위해 2010년 부설기관으로 발 족했다. 2004년에 시작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수행 및 관리, 경제개발 및 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기관 과의 협력, 국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자문실과 개발경제, 국제개발협력, 한국 발전경험 연구, 개발협력 동향 분석, KSP 심화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발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사 회의 공동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개발협력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도 하에 일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 한국 ODA의 양적 - 질적 확대에 대비한 개 발정책 및 개발경제 연구, 국제 개발협력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 성•확대를 통한 공동연구 및 개발협력 동향분석, 『한국경제•사회발 전 60 년』기록 사업 - 원로들의 증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유사업 인 국제연찬사업의 경우 세계 각국 경제학자, 연구원, 경제관료 등 경 제전문가들간의 정책교류의 장으로서 주요 정책과제, 정책공과 등을 토론하고 공유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참여국간의 정책적 연 대를 강화하며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 고 있다.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전략과제를 KDI가 기획•발굴하고 국제기 구,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연구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한국경제의 선진 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OECD 등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 및 연구교류 를 강화함으로써 선진국의 제도 운용 경험에 대한 이해도 및 한국 제 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제도•정책 운 용의 역량을 확충하는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환경 하 의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된 경제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유기적인 지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술 및 정보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초청연수 사 업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G20 관련 연구를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한국의 역할 모 색, G20 Think Tank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14년 오스트레일리아 • ${ }^{\prime} 15$ 년 터키 G20 의제 개발 지원, 한국의 가교 리더십 구축을 위한 국 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OECD 한국센터를 설립•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의 제도나 경험을 아시아지역에 전수•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 OECD선진국의 정책 동 향 파악 및 연구 등을 도모하고 있다.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798억원이고, 부대수입이 343억원, 차입금 및 기타 214억원 정도이다. 이를 사업별 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사업이 약 26억원, 연구 관련 및 지원 사업이 약 55억원, 일반사업이 약 148억원, 수탁용역사업이 172억원, 청년인 턴쉽운영 사업이 1.4 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 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4 \%$ 정도 수준으로, 일반사업이 차지하 는 비중은 $37 \%$, 수탁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 \%$ 수준이다.

## 6. 한국법제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비전은「세계화에 기반을 둔 국가입법연구의 HUB」 이며, 미션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충실한 공공서비스제공을 위 하여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여 선진국가 도약에 이바지’이며, 3대 경영목표로는 (1) 신뢰받는 연구수행 시스템 운영, (2) 국내외 연 구협력 강화, (3) 정책연계를 통한 책임 입법지원 등이다.

연구원의 비전이나 미션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 HUB 등에 키워 드를 제시하였고, 경영목표 중 국내외 연구협력 강화를 제시한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국제개발협력 및 교류사업의 추진근거 및 명분이 충 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글로벌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 비교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및 사업,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연 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및 인원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32 명(선임연구위원급 3 명, 연구위원급 12 명, 부연구위원급 16 명, 전문연구원급 1 명), 행정직 4 명 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원 내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은 다른 국가의 법령과 우 리 법령에 대한 비교법제연구,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법제연구, 법정비 지원 및 법제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법제 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비교법제연구실과 함께 법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6]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직도23)

(3) 주요 기능 및 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국 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보급과 그 전산망 사업, 입 법기술•법령용어정비•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국 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인 초청연구사업,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 부-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등을 유관 연구 및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기본연구사업으로는 통일법제분석, 국제법제연구, 연구 협력 사업(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간행 등)을 추진하고, 일반연구사업 으로는 비교법제연구, 법제교류지원사업, 협동연구, 아시아법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관련사업 중 국제협력 및 교류와 밀접한 연
23)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lri.re.kr(검색일: 2014.11.28)

관이 있는 국내외 연구공조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은 법제연구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내적으로는 법제연구의 국내외 유관단 체와 연구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에 기여한다.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연금 은 123 억원이고, 자체수입이 30 억원 정도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 면, 기본연구사업이 약 10 억원, 연구 관련 및 지원 사업이 약 26 억원, 일반사업이 약 43.5 억원, 수탁용역사업이 13 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예 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9 \%$ 정도 수준 으로, 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7 \%$, 수탁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14 \%$ 수준이다.

##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복 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비전은 「세계적 수준의 여성정책 연구기관」 이며, 중장기 목표는 (1) 국민이 체감하는 성 평등 정책 연구, (2) 성 평등 연구 네트워크 허브, (3) 양질의 연구 환경 시스템 구축 등이며, 이에 부합되는 경영목표로는 (1) 성 평등 정책 연구의 현장성 제고, (2) 연구 네트워크 강화와 다변화, (3)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성과관리 제고 등이다. 특히 연구원의 중장기 및 경영목표 중 성 평등 연구 네 트워크 허브와 연구 네트워크 강화와 다변화라는 측면은 국제개발협

력사업을 추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산학연 협력 관계 체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2) 조직 및 인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40 명(선임연구위원급 4 명, 연구위원급 21 명, 부연구위원급 10 명, 전문연구원급 5 명 ), 전문직 4명, 행정직 13 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원 내 기획조정본부 산하에는 국제개발협력팀이라는 국제개 발협력 분야의 전담부서가 두고 있다.
[그림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직도24)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wdi.re.kr(검색일: 2014.11.28)
(3) 주요 기능 및 사업

앞서 살펴본 국제개발협력팀은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국 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아태 개발협력포럼 기획 및 운영, 국제연구교류 및 방문 프로그램 운영, MOU 체결 및 관리, 기관의 국제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등을 담당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 ODA 정책에 성 주류화 정착 및 성 인지적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 공여국 으로서 개도국의 양성평등 추진을 선도할 책무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ODA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고 수원국의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 아시아 지역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작업과 여성정책 네트워크 확대, 아시아 개도국과 한국 여성정책 발전 경험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전략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 연금은 146.5 억원이고, 사업수입이 65 억원 수준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본연구사업이 약 12 억원, 연구 관련 및 지원 사업이 약 12.5 억원, 일반사업이 약 56 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 사업 이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 \%$ 정도 수준으로, 일반사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 \%$ 이다.

##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사항 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 공공지출 - 공공기관의 운 영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전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 경제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며, 기본철학은 (1)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정 책연구 지향, (2) 조세•재정분야의 학제적 연구 강화, (3) 새로운 연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등이다. 3 대 경영목표로는 (1) 실용적 정책대 안 연구, (2) 성과창출형 통합연구 강화, (3) 구성원의 잠재력 강화 등이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정책수요를 반영한 실용연구 강화
(2) 협력적 연구시스템 강화
(3) 연구전문성 제고
(4) 발전과 융합을 도모하는 창조적 기관운영

특히 연구원의 목표 중 협력적 연구시스템 강화라는 측면은 국제개 발협력사업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 국제개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2) 조직 및 인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40 명(선임연구위원 급 10 명, 연구위원급 5 명, 부연구위원급 2 명, 전문연구원급 7 명, 연

구원급 11 명 등), 전문직 13 명, 주임기술원 2 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원 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재정연구본부 내 아태재정협력센터가 유관 업무를 일부 담당 하고 있다.
[그림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직도25)

(3) 주요 기능 및 사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에도 다른 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내 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과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아래의 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 구와의 공동 협력사업 목록이다.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검색일: 2014.11.28)
[표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제기구 협력사업 현황26)

| 사업명 | 사업연도 | 공동연구기관 |
| :--- | :---: | :---: |
| 한국 재정개혁의 성과와 향후 방향 | $2012-2013$ | WB, OECD, <br> 기획재정부 |
| 지방정부에서 제공 가능한 공공투자부터 <br> 공공서비스의 범위, 지방공공기관의 사례 | $2012-2013$ | OECD |
|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 $2012-2013$ | IDB |
| OECD 지방재정 네트워크 | 2012 | OECD |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br> 선진화 방안 연구 | 2012 | OECD, <br> 기획재정부 |
| 주요국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재정과의 관계연구 | 2011 | OECD, <br> 기획재정부 |
| 중앙지방간 정부의 재정분권화 측정 | 2011 | OECD |
| OECD 지방재정 네트워크 | 2010 | OECD |
| 중앙지방간 정부의 제도 • 재정관계 | $2012-2013$ | WB, OECD, <br> 기획재정부 |
|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투자전략의 <br> 정책과 우선순위 | 2010 | OECD |
| 공공재정회복 | 2010 | WB, OECD, <br> 기획재정부 |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 연금은 316억원이고, 사업수입이 35 억원 정도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 펴보면, 기관고유사업이 약 56억원, 일반사업이 11 억원, 수탁용역사업 이 9 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 수탁용역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 수준이다.
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검색일: 2014.11.28)

## 9. 한국행정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한국행정연구원은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 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 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비전은 「국가행정의 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연 구기관」이며, 3 대 경영목표는 (1)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창의적 연구 수행, (2)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의 조성, (3) 연구 환경 개선과 기관 고유 이미지 확립 등이다. 연구원 조직의 비전 등이 명 시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힘들지 만,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토 대로 하여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 조직 및 인원

한국행정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28명(선임연구위원급 4 명, 연구위원급 15 명, 부연구위원급 7 명, 전문연구원급 2 명), 행정직 12 명 으로 구성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제행정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연구 및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비롯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9]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직도27)

(3) 주요 기능 및 사업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 자료의 수집• 관리•지원,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교류•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행 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관련 분야 연구용역 의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관리체 계 연구도 이러한 사업 중 하나였다. 특히 최근 설립된 국제행정협력 센터를 통해 행정 분야의 글로벌 전문 허브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27)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a.re.kr(검색일: 2014.11.28)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연금 은 119 억원이고, 기타수입이 18 억원 수준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 면, 기본연구사업이 약 10 억원, 그 외 사업이 약 44.5 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2 \%$ 수준으로, 기본연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 \%$ 이다.

##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비전 및 가치, 목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 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비전은 「국민안전의 중심연구기관」이며, 중장 기 목표는 (1) 안전한 국가를 위한 형사정책, (2) 행복한 국민을 위한 형사정책, (3) 통합된 사회를 위한 형사정책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1) 연구의 정책 활용도 제고, (2)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 성, (3)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한 정책 서비스, (4) 공감받는 조직 관리 등이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연구원의 목표 중 국민과 국제 사회를 위한 정책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라는 경 영목표 하에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 고도 화 및 다원화, 정보 허브기능 강화 및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등의 실 천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제개발협력사 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2) 조직 및 인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원장 1 인 이하 연구직 22 명(선임연구위원급 7 명, 연구위원급 4 명, 부연구위원급 11 명 ), 행정직 12 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제협력센터를 별도로 두어 국제개발협 력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직도28)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c.re.kr(검색일: 2014.11.28)
(3) 주요 기능 및 사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센터는 사이버범죄방지가상포럼시 스템 구축사업, 유엔 회의 및 연구 참가 및 프로그램 참여 및 개발, 국제 학술교류를 통한 국가 간 공동연구, 비교형사법 관련 각국 동향 분석,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비교형사법 관련 연구성과의 해외발 표 - 출판 등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 탁, 북한의 범죄와 형사관계법령 및 통일대비 형사정책연구, 범죄방지 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등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연구사업 목표 중 하나로 '국제적 연구협력을 통한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을 설정하고,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 등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재원 현황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재원을 살펴보면, 출연금 은 95억원이고, 사업수입은 7.5억원 수준이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 면, 기본연구사업이 약 9억원, 연구 지원 및 관련 사업이 약 3 억원, 일반사업이 30 억원, 수탁용역사업은 4.4억원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기본연구사업 이외 사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2 \%$ 수준으로, 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 수탁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 \%$ 이 다. 일반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수탁용역이 차지하는 비 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제 3 절 평가 및 개선방안

## 1. 시사점

모든 조직은 조직 내•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 연 구기관은 일반조직과 달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이 복잡하 다. 이것은 기관의 조직 활동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연구기관의 외부환경은 복잡하며 이러한 환경에의 적절한 대응이 정부출연연구기 관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하다. 이와 같이 환경과 조직의 유효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관련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접근은 정부연구기관의 자체 시 스템 분석 뿐 아니라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29)
[그림 11]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환경과 시스템적 구조30)

29) 이민형 외,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계 효율화 방 안, 정책연구 2012-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34-35면.
30) 이민형 외, 앞의 글, 36 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사회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국 제개발협력사업, 세부적으로 법제교류지원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 관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조직의 가치나 비전, 인원, 사 업활동, 재원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 분석은 조직의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1절 에 언급되었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부상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며, 이러한 시스템적 분석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법제교류지원사 업,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사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가적 혹은 조직적 차원에서 장기간 협 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 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제협력이나 국제교류 사업 자체 가 대상국이나 관련 부처 혹은 기관들과의 파트너쉽과 신뢰 구축을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화된 조직과 우수 인 력,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기관 차원,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환경 및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상국이나 관련 부처 혹은 기관들은 외부 환경요 인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적 시각에 의거하여 현재 정부출 연연구기관, 즉 공공연구기관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부상이라는 외 부환경 변화에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어떤 추진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 앞서 살펴본 현황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시스템적 관점에서 공 공연구기관을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추진전략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평 가

(1) 명확한 비전 및 구체적인 전략 부재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상국과의 파트너쉽을 구축해 가면서 상호 간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물 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변화 및 추세에 부응하여 공여 기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에 대상국의 상황 및 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제공하는 해당 사업이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면서 어느 국가에서라도 통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 더 나아가 기관의 각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 분야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조직의 방향성 및 추진과제, 전략 등이 공고히 구축되어야만 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필수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연연의 경우 세계화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조직 비전에 명시하고 있 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전이나 가치에 맞게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며, 국내외 정책 현안을 다루기 위한 비전이나 목표가 우선 시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협력 분야와는 동떨어진 조직의 가치나 이를 설정하기 위한 명제와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일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조직적 차원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추진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분석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공 공연구기관은 극히 드물었다.

아래의 표는 경제사회 분야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과연 각 기관 별 비전이나 가치 등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평 가31)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 공연구기관이 조직의 비전이나 가치, 목표 등에 있어서 국제협력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과반 이었고, 일부 부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제교류 및 협력에 대한 강 력한 추진의지나 원동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었다.
[표 3]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협력분야 비전 및 가치, 목표 부합성 평가

| 기관명 | 비전 | 가치/목표 | 비고 |
| :--- | :---: |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triangle$ | $\triangle$ |  |
| 국토연구원 | $\times$ | $\bigcirc$ | 사업연관성 높은 편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times$ | $\times$ | 사업연관성 높은 편 |
| 산업연구원 | $\times$ | $\times$ | 사업연관성 높은 편 |
| 에너지경제연구원 | $\triangle$ | $\triangle$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triangle$ | $\circ$ |  |
| 통일연구원 | $\times$ | $\times$ |  |
| 한국개발연구원 | $\triangle$ | $\triangle$ | 사언 민 추ㄴㅣㅣㄴ전량의 곺는 편 |
| 한국교육개발원 | $\times$ | - |  |
| 한국교통연구원 | $\triangle$ | $\circ$ |  |
| 한국노동연구원 |  | $\triangle$ |  |

31) 각 기관별 비전이나 가치, 추진전략 중 주요 키워드로 '국제', '글로벌', '세계화'와 ‘협력’ 또는 ‘교류’라는 단어 조합이나 의미를 갖는지를 평가기준으로 하였다.

| 기관명 | 비전 | 가치/목표 | 비고 |
| :--- | :---: | :---: |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times$ | $\triangle$ |  |
| 한국법제연구원 | $\triangle$ | $\bigcirc$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times$ | $\times$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times$ | $\triangle$ | 간접적 연관성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triangle$ | $\triangle$ | 사업 및 추진전략의 <br> 연관성 높은 편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times$ | $\triangle$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times$ | $\times$ | 사업 연관성 높은 편 |
| 한국행정연구원 | $\times$ | $\bigcirc$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times$ | $\times$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times ㅇ$ | $\triangle$ |  |

주: $\bigcirc$ 는 부합, $\triangle$ 는 일부 부합, $\times$ 는 불일치 또는 없음 등을 의미
(2) 조직 우선순위의 부적절 및 관련 기능 불명확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를 선도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 이 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적 중요성에 따른 과제나 연구, 사업이 수시로 발생하거나 이를 우선 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연구기관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주어진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 히 수행하기 위해 이를 규정화하여 사업근거로 활용한다. 이에 국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가지는 주요 기 능 중 하나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출연연이 특화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협력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담부서 및 통합적 추진 애로

최근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사이에서 국제협력 분야가 큰 이슈로 부각되는 한편, 국내외 기관이나 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 는 협력사업이 증대하고 그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다수의 출연연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 구•사업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허브 역할을 강조 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방향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담부서가 아예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규모나 인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조직 역량을 집중하여 해당 연구 및 사업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 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이러한 국제협력 및 교류 관련 기능이 조직 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은 국제협력 분야의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경제•사회 분야의 정부출연기관, 즉 공공연구기관 내 국제협력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를 정리한 것이다. 총 17 개 국제협력 분야 전담부서 중에서 하위부서가 존재하는 규모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7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중 3 개 부서는 센터나 본부 등의 하위부서로 그 역할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 정부출연기관의 국제협력분야 전담부서 현황

| 기관명 | 전담부서명 | 규모 | 비고 |
| :--- | :---: | :---: | :---: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 $\bigcirc$ | 2014년 중순경 출범 |
| 국토연구원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bigcirc$ | 2010년말 출범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제협력정책실 | $\bigcirc$ |  |
| 산업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실 | $\bigcirc$ |  |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국제협력본부 | $\bigcirc$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제협력연구실 | $\bigcirc$ |  |
| 한국개발연구원 | 국제개발협력센터 | $\bigcirc$ | 2010년초 출범 |
| 한국교육개발원 | 국제교류협력실 | $\triangle$ |  |
| 한국교통연구원 | 글로벌교통협력연구실 | $\triangle$ |  |
|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협력실 | $\bigcirc$ |  |
| 한국법제연구원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br> 비교법제연구실 | $\bigcirc$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제협력센터 | $\bigcirc$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제개발협력팀 | $\triangle$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글로벌협력센터 | $\bigcirc$ |  |
| 한국행정연구원 | 국제행정협력센터 | $\bigcirc$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제협력센터 | $\bigcirc$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글로벌전략센터 | $\bigcirc$ |  |

주: © ) 는 센터나 본부 급으로 하위부서 존재, $\bigcirc$ 는 센터나 실 명칭으로 독립기능 수행, $\triangle$ 는 센터나 본부 등의 하위부서로 존재 등을 의미
(4) 전문인력 부족 및 양성 프로그램 부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편,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부족은 공공연구기관은 물론, 여러 부처나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연구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 남아있다.

2010년 9월말 기준 KOICA 등록 전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는 총 2,004 명이며, 산업에너지 분야가 383 명(19.1\%), 정보통신 분야 349 명(17.4\%), 교육 분야 282 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문가 DB 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2,968 건으로 개 인이 2,464 명, 법인이 504 건이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토 목이 791 명으로 가장 많고, ICT가 577 명으로 전체 전문가의 절반이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수치는 나날이 증가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연구 및 사업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기 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여건은 공공연구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표 5] KOICA 전문인력풀제도 등록자 수 (2010년 기준) ${ }^{32)}$
(단위: 명)

| 지원분야 | 빈 도 | 구성비(\%) |
| :---: | :---: | :---: |
| 교육 | 282 | 14.07 |
| 국가 | 2 | 0.1 |
| 기후변화/환경 | 240 | 11.98 |
| 농어촌개발 | 198 | 9.88 |
| 다분야 | 29 | 1.45 |
| 보건의료 | 276 | 13.77 |
| 산업에너지 | 383 | 19.11 |

32) 김철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 활용 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포럼 발표자료집 논문(주제 II), 2013.

| 지원분야 | 빈 도 | 구성비(\%) |
| :---: | :---: | :---: |
| 원조이슈 | 6 | 0.3 |
| 인도적 지원 | 2 | 0.1 |
| 정보통신 | 349 | 17.42 |
| 행정제도 | 235 | 11.73 |
| 기타분야 | 2 | 0.1 |
| 계 | 2004 | 100 |

[표 6]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분야 컨설턴트 등록 현황 ${ }^{32)}$

|  |  |  |  |
| :---: | :---: | :---: | :---: |
| 산업 분야 | 개인위: 명, 개) | 법인 | 합 계 |
| 토목 | 791 | 98 | 889 |
| 관광 | 18 | 10 | 28 |
| 금융 | 144 | 15 | 159 |
| 행정/법 | 64 | 15 | 79 |
| 교육 | 169 | 29 | 198 |
| 경영 | 122 | 18 | 140 |
| 경제 | 74 | 6 | 80 |
| 환경 | 112 | 47 | 159 |
| ICT(정보통신) | 577 | 88 | 665 |
| 전기/전력 | 162 | 50 | 212 |
| 기계 | 68 | 27 | 95 |
| 보건 | 54 | 27 | 81 |
| 건축 | 65 | 57 | 122 |
| 자원개발 | 16 | 6 | 22 |
| 농수임 | 28 | 11 | 39 |
| 합계 | 2,464 | 504 | 2,968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시적 소에 공급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함에도 불구 하고 아직은 여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아래의 표는 2010년 기준 국내 주요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국제개발협력 분야과 밀접한 연 관이 있는 교과목을 개설한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이러한 교육 수요 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대다수 대학이 다양한 교과목을 배정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요 대학의 국제대학원 개설 내용 ${ }^{32)}$

| 학교명 | 과정 수 | 전공분야 |
| :---: | :---: | :---: |
| 경희대 국제대학원 | 4 | 국제통상학과(국제개발협력학), <br> MKE과정: 개발협력 석사과정 |
| 고려대 국제대학원 | 4 | 국제학과(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br> 제평화와 안보지역학) |
| 대구가톨릭대 | 3 | 국제행정학과, 국제통상및비즈니스학과, <br> 국제지역협력학과 |
| 부산대 | 6 | 국제지역 - 협력전공, 한국학전공, <br> 글로벌비즈니스전공 |
| 서울대 국제대학원 | 5 |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br> 국제개발정책학 |
| 아주대 국제대학원 | 5 | 국제경영,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학, <br> NGO학, 한국학과 |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 5 | 한국학, 국제지역학, 국제협력학, <br> 국제무역\&금융학, 국제경영 |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 6 | 국제학부: 국제무역\&투자, 국제비즈니스, <br> 개발협력, 국제관계전공 |


| 학교명 | 과정 수 | 전공분야 |
| :---: | :---: | :---: |
| KDI <br> 국제정책대학원대학 | 6 | MPP 프로그램: 경제개발정책학(MPP/ED) |
| 한국외대 <br> 국제지역대학원 | 12 | 국제개발학과, 국제관계학과 |
|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 3 | 국제지역학과, 국제협력학과, <br> 비학위과정: 선교 $\cdot \mathrm{NGO}$ 특별과정 |

(5) 소극적인 사업 발굴 및 기획

거듭 논의되고 있지만, 그동안 국제협력 분야의 규모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출연연에서 이러한 시장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하여 수행하 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자체수입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움직임 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사업을 접하면서 경험을 축적하 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시장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에 진출하고 이러한 기회나 경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 관별 노력이 필요하다.
(6) 재원 규모 협소 및 불안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규모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대 부분의 출연연이 영세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탁용역사업에 의존하는 연구기관도 존재한다.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은 재원을 기관별 연구 및 사업 들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에 다양한 연구나 사업에 적절 히 예산을 배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국제협 력 분야 연구 및 사업에 배정되는 재원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할당된 재원 부족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연구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힘들고, 사업의 품질에 있어서 질적 저하 등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적 정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 출연연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수탁용역사업에 의존하는 수입구조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연구나 사업을 장기간 동안 효과적인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하기 힘 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제개발협력사업에만 국한되 는 문제는 아니다. 재원이 불안정한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거 나 소기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와 동 떨어진 국제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고,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3.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1) 사업 규모 확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비전, 가치나 목표가 공공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및 이러한 연구의 품질을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본연의 가치이자 목표를 등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혹은 국제교류사업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 수준을 갖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가 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국제기구를 비롯한 해외 관련 기 관과의 교류•협력 범위 및 규모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연구기관들은 적극적인 협력 및 교 류 사업 발굴은 물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그 규모 를 확대하기 위한 기관 차원에서의 뚜렷한 가치와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전제 하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은 가용한 예산 및 인력 투입 범위 내에서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사업 규모 확대는 법 제교류사업의 외연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국제협력 분야 연 구나 사업의 규모를 꾸준히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법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교류 사업의 외연 확대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2)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수립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실 주도 하에 유•무상원조를 조정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물론, 국제협력 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역사가 짧고 이에 비해 그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제협력 분 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나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도 사실이다. 국제협력사업의 중복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 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통합적인 전략이나 비전이 부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연구기관 간의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통합적 인 전략이나 비전 수립에 대해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 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은 각 공공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 전략 등이 국제협력 분야에 부합되는 것이다. 각 공공연구기관별로 앞서 언급된 전제조건을 충족 시킨다는 가정 하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연구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들의 국제협력사업을 전체 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인다. 특히 이러한 통합적인 비전이나 전략 하에 법제교류사업의 중장기 전 략이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법제교류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 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 및 사업 노하우나 애로사항, 발전방안 등을 꾸준히 학습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 또는 교류사업이나 협동연구 등의 분절화나 중복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발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위원회나 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원장이나 부원장급의 의사결정자 그룹과 센터 장이나 실장급의 실무진 그룹, 그리고 부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협력 분야의 역사가 짧고 아직은 초창 기 성장 및 학습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이러한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공연 구기관들이 국제협력사업 분야를 확대하는데에 기여함으로써 해당 전

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 들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쌓게 되는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공유할 수 있다면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국제협력 분야 전문가 양성이나 시장 창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 다. 법제교류사업 분야의 경우에도 아직은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 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교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 축적된 법제 관련 자료 를 교보재로 전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교육할 수 있는 ‘법제교육원’(가칭)을 설립하여 법제교류사업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 한 매개체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혹은 신규 로 진입하는 법제 전문가 풀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체계적 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 은 단순히 법제교류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각의 법제교류지원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하여 적재적소에 투 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다.
(4)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이 국제개발협력 분 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토 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에서 전담부서 형태로 협력 및 교류 분야의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전담부서나 인력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도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원부서 정도의 위치를 갖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직적 차원에서 국제협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더라도 관 련 법률이나 정관, 조직 내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실천에 옮기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책연구 기관은 연구회 소속이므로 연구회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해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관계부처 입장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은 물론, 소속 연구회 및 관계부처 등이 국제협 력분야의 중요성 및 가치 등을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 이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협력분야의 인력을 양 성하고 조직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일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5)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국제협력사업의 경우 각 사업 간의 연계나 공동 추진으로 인해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공공연구기관들 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질 높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듯이 각 기관이 공동으로 국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 를 기획하여 수행한다면 기관별 국제협력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아 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별로 공동으로 국제협력사업을 발굴하 고 이를 기획할 수 있다면 국제협력사업의 다변화 및 다양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와 모습의 국제협력사업을 만들 수 있

기 때문에 공급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이러한 시장 창출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새로운 가능성 은 물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 제 3 장 법학대학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 방안 

## 제 1 절 대학에서의 국제고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 대학의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대학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회제도라는 틀에서 벗어나 지식 자 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사회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이 가진 이러한 전략적인 역할 때문에 대부분 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변 화를 모색하고 있다. ${ }^{33)}$ 현재 세계는 글로벌 경제와 지역별 블록화 경 제구조 내지 단일 경제구조로 발전•재편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 체제로34)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국제교류는 자본과 노 동이 국경 없이 자유로이 넘나드는 세계화시대에 지식의 세계화를 위 한 대학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국제사회의 무한경쟁 시대 속에 국가 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는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지역 핵심인재들을 교육시켜 그들을 세계지역의 미래 리더로 키워내야 할 책무가 대학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대학내부의 사정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에 대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사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보다는 모 일간신문에서 대학평가의 한 요소로 국제화지표를 포

[^4]함시킴으로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마침 중국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중국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진학이 급증하면서 각 대학들은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게 된 것이 국제교류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 정이 이러하다보니 아직도 많은 대학들은 매년 순위가 발표되는 신문 사의 대학평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교류, 즉 대학의 필요에 의한 장 기적인 계획하의 국제교류가 아닌, 양적이고 일방적인 국제화 전략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전략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교육부의 정책지원 사업, 언론사들에 의한 대학평가 지표 중 국제화 평가에서 촉발된 적극적 국제교류이다. 몇몇 대학은 이를 계기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화전략을 통하여 국제화를 대 학교육의 중심 가치로 승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해외유학생을 적극적 으로 유치하며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국제화 지표를 이용하여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들과 인재교류 를 통한 긴밀한 연구•교육을 통한 윈-윈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있 다. 하지만 이렇듯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국제 화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은 아직은 소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대학현장에서의 경험이다. 둘째, 국제화전략을 통한 대학의 재정 난을 극복하고 동시에 대학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교류이다. 이는 지방의 일부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자 중국이나 동남아지역의 현지 대학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는 한국 대학의 학과 또는 전공에 집단적으로 유치하는 교 류이다.35) 물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제화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의 다양화 및 개방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35) 정연호, 앞의 글,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3996 (검색일: 2014. 11.28)

대학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국제교류, 매년 발표 되는 언론사의 대학순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 국제화 전략없이 추진 하는 국제화는 본래 국제교류가 지향하려던 가치를 훼손하기도 한다.
국경의 제한없이 사람, 자본, 지식, 정보, 기술 등이 자유롭게 넘나 드는 이동의 활성화와 긴밀한 상호연결은36) 현재와 미래사회의 특징 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에 서도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지고 있 고, 이것이 국제화를 하여야 할 당위성이기도 하다. 현재 많은 대학들 은 다른 국가의 대학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생의 교류, 복수•공 동학위제도 운영, 교수 및 연구원 교류, 해외봉사활동, 해외 인턴십, 해외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위하여 일정한 어학능력을 요구하거나,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수의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해외 교류대학에서 정규학기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외국대학에서 학습경험을 한 학생들은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한편 우 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학생들을 위하여 각 대학은 장. 단기 어학연 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국제하계캠프, 방학기간을 통한 집중 교육과 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대학의 국제교류는 세계적 지식 네트 워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계와의 교육교류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 게 된다. ${ }^{37)}$ 하지만 대학의 국제화에는 아직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36) 홍준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양적 성장과 질적 햐앙의 딜레마, 대학교육 제18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84\&no=4309 (검색일: 2014.11.28)
37) 김상률, "대학 국제교류의 실태와 영향", 대학교육 제 169 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3994(검색일: 2014.11.28)

## 2．법과대학에 있어서 국제교류

우리나라에서 법과대학은 매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수학한 후，사 회에 진출하여 사회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그러나 법과대학 은 법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이라는 기본취지 보다는 ‘사법고시＇라 는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추상적이며 형식논리 위주의 해석법학 이 론교육에 충실한 면이 있었다．그 결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현상 에 대한 법률적 성찰과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은 뒷전에 미뤄두고 오로지 사법시험에 몰입한 교과목 편성과 강의에 치우쳤다．이렇게 기본법에 충실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법시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과한 후，사법연수원에서 2 년 동안 법조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었다．중래 우리나라에서 법 학교육은 대학에서의 법이론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38）하지만 법학실무교육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이수할 수 있는 교육으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접근이 허용 되지 않았다．그런데 사법시험에 자격제한이 거의 없다보니39）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에 집중되면서 대학 은 공동화（空洞化）되었다．40）한편 대학은 졸업장을 취득하는 곳으로 전락하고，고시공부에 효율성이 높은 사설학원으로 수험생들이 몰리 면서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고립된 집단 수험준비 공간이 형성되었다． 수 만명의 젊은이들이 고시낭인으로 인생을 낭비한다는 심각한 사회

38）정용상，＂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비교법연구 제 12 권 제 1 호，동국 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12．4．45－46면．
39）종래 사법시험은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으로 분류되어 법학교육을 이 수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었으나，2006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에게 법학과목 35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40）류병운，＂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서강법 률논총 제 3 권 제 1 호，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2014．140면．

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대학은 준고시학원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 전체적으로도 가장 국제화가 안되는 곳으로 낙인찍혔다. 특히 사법시험이 기본법률 위주의 암기식 이다보니 '영어 실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41)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법과대학 내 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되는 형편이고, 이러 한 소수의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하여 일정한 공인영어점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영어에 매진하는 등 국제화와는 거리가 먼 형편이었다.

또 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도 국제화와 거리를 두게 한 요인이다. 법과대학에서의 국제교류는 법제교류 혹은 법학을 통한 교류가 주축 이 되어야 한다. '교류'라는 용어는 상대방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전 제로 법률을 매개로 상호 소통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한다는 의미 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의 바탕위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각자가 '법’이라고 명 명된 약속을 지킬 수 있거나 지켜야 하는 것을 규범화한 것이다. 따 라서 법제도는 그 사회를 위한 고유성을 갖는다. 물론 '법제도’에는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규범화한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공통가치, 현대적 사회의 가치 등 서구문명에서 발달된 규범을 그 사회의 고유 한 가치에 접목시켜 규범화한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법과대학의 교 과목이 기본법률 위주로 편성되고, 해석법학이라는 특성은 교수나 학 생들에게 대학생활 동안 국제적 다양성을 제시하기에는 힘에 겨운 일 이었다.
그렇다고 법과대학에 국제화 혹은 법제교류와 절연된 상태에 머문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 대학의 초창기 법과대학 교수 들은 일본을 통해 근대법학을 접한 이래 일제강점기시대 일본으로부

[^5]터 해외법학을 전수받고,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 유학하면서 현대화 된 법문화를 습득하여 한국법률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 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과 꾸준한 교류를 통하여 선진법학을 습 득하고 이를 전수하여 오늘날의 한국법의 전통을 일궈왔다. 한편 국내 에서는 다양한 학회, 학술회의, 비교법연구 등을 통하여 외국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연구하면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입 법안을 제안하거나, 직접 입법에 관여하는 등 법률과 법학의 발전을 위 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 하여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꾸준히 학 자들을 길러냄으로서 한국법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법과대학의 국제교류 혹은 법제교류의 논의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 지 않는 연구 내지 활동에 대하여도 이에 상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의 전제하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되는 것이 향후 법과대학의 법제교류에 있어서 그 효 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1995년부터 12년여의 논의를 거쳐42) 2007. 7. 3. 국회에서 갑자기 '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라 한다)이 통 과되어, 2008. 2. 29. 로스쿨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에 로스쿨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다. 로스쿨의 도입여 부를 논의하던 시점부터 로스쿨은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시대를 만족 시킬만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함으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 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로스쿨 도입단계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는, " 21 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42) 김창록, "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법학논고 제 32 집, 경북대학교 법학 연구원, 2010. 2. 24-25면.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 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 민주, 평등, 정의 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 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 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고 제시하여43) 국 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로스쿨법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 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 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와 세계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세계화와 거리를 두는 현실이 되었다.

한편 로스쿨은 법과대학의 법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이 담당하고 있었던 법실무기능까지 포괄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 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정작 법학전문대학원이 탄생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로스쿨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입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생 산성 있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44) 주된 논의는 로스쿨 입 학정원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두고 법조계 안팍에서 첨예한 견 해 대립이 있었고, 몇 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을 것 인가를 두고 법과대학간에 치열한 눈치경쟁, 시설경쟁 등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실습,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
43)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2004. 10. 4. 류병운, 앞의 글, 158-159면에서 재인용.
44) 정용상, 앞의 글, 48면.

원 수료 후의 연수 등에 대한 치밀한 준비는 거의 없었다.45)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된 후, 당시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정원을 2,000 명으로 결정했다.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공고가 되었고, 각 대학들은 [심사기준]에 따른 신청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8. 8. 29. [표1-1]과 같이 25 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가 이루어졌다.
[표1-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및 배정정원46)
(단위; 명)

| 권 역 | 대 학 | 배정정원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서울권 } \\ & (1,140) \end{aligned}$ | 서울대 | 150 |
|  |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 120 |
|  | 이화여대, 한양대 | 100 |
|  | 경희대 | 60 |
|  |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 50 |
|  |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 40 |
| 대전권 <br> (170) | 충남대 | 100 |
|  | 충북대 | 70 |
| 광주권 <br> (300) | 전남대 | 120 |
|  | 전북대 | 80 |

45)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 학논집 제 18 권 제 2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39 면.
46) 김창록, 앞의 글, 28-29면.

| 권 역 | 대 학 | 배정정원 |
| :---: | :---: | :---: |
|  | 원광대 | 60 |
|  | 제주대 | 40 |
| 대구권 <br> (190) | 경북대 | 120 |
|  | 영남대 | 70 |
| 부산권 <br> (200) | 동아대 | 80 |
|  | 부산대 | 120 |
| 합 계 |  | 2,000명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설치인가 기준에 맞는 대학원운영 및 사회 적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매 5년 단위로 법학전문대학원 의 운영평가를 통하여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퇴 출시키고 새로운 법학대학에게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는 법학전문대 학원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 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는 법학 전문대학원 개원5년이 종료된 2014. 2. 28.자로 운영기준에 맞는 운영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다행히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가 제시한 운영기준에는 "1.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현황"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메뉴얼(3. 6. 1. 1)]과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실적 총괄표" 및 "2. 연구소의 국제학 술행사 개최"[법학전문대학원 평가메뉴얼(7. 4. 2. 1.)] 등을 평가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 }^{47)}$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기준에 맞는 운영을 위 하여 다양한 해외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으로서, 간접적으로 세계
47) 이 연구에서는 국제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학술행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 회로 미룬다.

화, 국제화를 독려하는 셈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에 대하여는 절을 바꾸어 설명한다.

## 제 2 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곡제고류협력 현항

## 1. 해외교육기관과의 교류 현황 조사

2009. 3. 4. 개원하여 2014. 11. 현재 6 년째 운영되고 있는 전국 25 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취지에 맞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국제교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3.6.1.1.)은 각 대학이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현황"을 평 가요소로 제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의 국제교류를 독려하면서 법학교육의 국제화 내지 법제교류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개원한 이래 5 년간의 해외연계 교육기관 현 황, 둘째,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실적 총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 이 제시되면서부터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교수 및 학생교 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실적을 축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평가매뉴얼에 따라 제출한 지 난 5년간의 국제협력사업의 실적을 분석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교류 내지 법제교류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한국법학전문대학협의회에 제출한 자료 를 바탕으로 하되, 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이화여대와 동아대 및 인용 이 모호한 한양대의 자료는 일부 인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참고하였 음을 밝힌다. 한편 본문 중의 모든 도표는 연구자가 각 법학전문대학 원의 홈페이지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

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본문의 도표에서는 별도로 출처를 병기하지 않 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1) 각 대학별 해외교류협정 체결

연도별 각 대학별 해외교류협정은 아래 [표2-1-1]과 같다. 현재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외 326개 교육•연구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각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된 2005년도부터 해외교류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기준이 제시 된 2007년에는 설립인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만 큼 23 개 대학 중 15 개 대학이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당시에 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받지 못한 많은 대학들이 국제교류협정 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2-1-1] 연도별 각 대학 해외교류협정 체결
(단위: 건수)

| 대학 | 2000 <br> 이하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대 | 1 |  |  | 1 |  | 1 |  | 2 |  | 1 |  |  | 3 |  |  | 9 |
| 건국대 |  |  |  |  | 1 |  | 2 | 1 | 1 | 2 |  |  |  | 1 | 8 |  |
| 경북대 |  |  |  |  |  |  |  |  |  | 2 | 2 |  |  |  | 4 |  |
| 경희대 | 2 |  |  |  |  |  |  | 7 | 1 |  | 1 | 6 | 3 |  |  | 20 |
| 고려대 | 2 |  |  |  |  | 3 | 2 | 4 |  |  |  | 1 | 5 | 10 | 2 | 29 |
| 부산대 | 1 |  |  |  |  |  | 4 | 2 | 3 | 2 | 2 | 1 | 3 | 9 |  | 27 |
| 서강대 |  |  |  |  |  |  |  |  |  |  | 3 | 2 |  |  | 5 |  |
| 서울대 | 1 |  | 1 | 1 |  | 3 | 2 | 6 | 3 | 2 | 1 | 1 | 7 | 3 |  | 31 |


| 대학 | 2000 <br> 이하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립대 |  |  |  |  | 2 |  | 5 | 1 |  | 1 | 1 | 1 | 1 |  | 12 |  |
| 성균관 |  |  |  |  | 1 | 2 | 8 | 1 | 5 | 2 | 1 | 5 | 1 | 3 | 29 |  |
| 아주대 |  |  |  |  |  |  |  |  | 2 |  | 1 | 2 | 1 |  | 6 |  |
| 연세대 | 1 | 2 |  |  |  | 1 |  | 4 |  | 4 | 5 | 2 | 3 | 6 |  | 28 |
| 영남대 |  |  |  |  | 1 |  |  |  |  | 1 | 1 | 1 | 3 |  | 7 |  |
| 원광대 |  |  |  |  |  |  |  |  | 3 |  | 2 |  |  |  | 5 |  |
| 인하대 |  |  |  |  |  |  |  |  |  | 3 | 1 | 3 |  | 1 | 8 |  |
| 전남대 |  |  |  |  |  |  |  |  |  | 1 | 2 | 1 |  |  | 4 |  |
| 전북대 |  |  |  |  |  |  | 14 | 1 | 1 | 1 |  | 2 |  |  | 19 |  |
| 제주대 |  |  |  | 1 |  |  |  | 2 |  | 1 | 1 |  |  |  | 5 |  |
| 중앙대 | 1 |  |  |  |  |  |  | 6 |  |  |  | 1 |  | 4 |  | 12 |
| 충남대 | 1 |  |  |  | 1 | 1 | 1 | 1 | 1 | 4 | 3 | 3 | 3 |  |  | 19 |
| 충북대 | 1 | 2 | 1 |  |  | 2 | 1 | 6 | 2 | 1 | 1 |  |  | 3 |  | 20 |
| 한외대 | 1 |  |  |  | 1 | 1 | 1 | 3 |  | 1 |  | 2 | 4 | 4 | 1 | 19 |
| 소계 | 12 | 4 | 2 | 2 | 3 | 17 | 13 | 70 | 16 | 27 | 27 | 32 | 48 | 45 | 8 | 326 |

이후, 2013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행점검을 앞두고 2012년과 2013 년에 각 대학의 국제교류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들이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따른 자발적인 교류 협정이라기 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 내지 인가 시 이행약속을 지키기 위한 교류협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국제교류는 자칫 실적위 주의 교류협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 무늬만 교류협정이지 실질적인 상 호교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국제교류협정은 법학전문대 학원의 교육과정의 안정화와 정비례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

원하여 5년차가 경과한 시점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교류에 대 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진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2) 국제교류협정 체결 대학 수

조사대상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이 매년도 마다 체결한 국제교류협정 의 추이는 아래 [표2-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 논의되던 2005년부터 국제교류가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면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확실시 되면서 각 대학의 국제교류 체결건 수는 전체적으로 70여건에 달하고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본 격적인 운영에 따라 국제교류협력대학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도 입 5년차에 이행실적 점검이 예고된 2013년에 맞춰 2012년-2013년은 각각 48 건, 45 건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행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목표에 따른 필요성 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교류협정이라는 의심을 가질만한 결과이다.
[표2-1-2] 연도별 국제교류협정 체결대학 추이
(단위: 건수)

(3) 대학별 국제교류 대학 수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2014년 2월말 현재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한 해 외 대학, 기관, 연구소 등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2-1-3]에 의하면, 서 울대학교가 31 개 해외기관들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고, 고려대와 성균 관대가 각각 29 개, 연세대가 28 개, 부산대가 29 개 등으로 20 개 이상의 국제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이 7 개 대학이다. 반면 5 개 미만의 국 제교류협력 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은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각 4개, 서강대, 원광대, 제주대가 각각 5 개의 국제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국 제교류협정의 숫자가 많다고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실질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성의 확보,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참고할 만하다.
[표2-1-3] 대학별 국제교류 대학 수
(단위: 건수)

(4) 해외 국제교류체결 대학의 분포

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대학•기관 수


조사대상 23 곳의 법학전문대학이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국제교류헙 정을 체결한 내용은 33 개 국가 48 ) 306 개 대학•연구소•기관들이다.
48) 홍콩은 별도로 분류되고 있지만, 중국에 포함시켜 32개 국가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표2-1-4]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이 가장 많은 국제교류체결 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89건, 미국 61건, 일본 48건, 독일 22건의 순으로, 이들 4개 나라에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교류협정이 집중되어 있다. 그 이외에 6~7건의 국제교류체결이 7 개국이고, 1 개 대 학만이 국제교류를 체결한 국가도 13 개 나라가 된다.

한편 아래 [표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이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한 전체 대학•기관 중, 중국이 전체의 $29 \%$, 미국 $20 \%$, 일본 $16 \%$, 독일 $7 \%$ 의 순으로 이들 4 개국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전체의 $71.9 \%$ 를 차지하고 있어 편중이 매우 심하다.
[표2-1-5] 조사대상 대학의 전체 국제교류협정 체결 대학 수


나. 미국대학과의 국제교류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미국의 기관들과 체결한 미국 소재 국제 교류기관은 47 개 대학, 로펌, 기관이다. 이 중 국내대학 2곳 이상과 중복하여 교류협정을 맺은 미국 대학은 7곳이 국내 21개 대학과 협정

을 체결하고 있다. [표2-1-6]에서 보듯이 워싱턴대가 5개 대학과, 인디 아나대학과 위스콘신대학이 각각 4 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 술교류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47개 미국 대학•기관•로펌 중에서 7 개 대학을 제외한 40 개 기관은 각각 국내의 1 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대학들의 미국대학과의 국제교류도 특정대학 중심의 편중현상이 심하다.
[표2-1-6] 미국대학과의 국제교류 현황
(단위: 건수)


다. 중국대학과의 국제교류
한국과 중국의 국제교류는 중국의 46개 대학, 로펌, 기관이 조사대상 인 한국의 23 개 로스쿨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대학 2 곳 이상과 중복하여 교류협정을 맺은 중국 대학은 15 개 기관이 국내 58개 대학과 중복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표2-1-7]에서 보듯이 정법대가 9개 대학, 런민대가 7 개 대학, 서북정법대 6 개 대학, 서남정 법대와 상하이대학이 각각 5 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학술교류를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46 개 중국 대학•기관•로펌 중에서 15 개 대학을 제외한 31 개 대학•기 관은 각각 국내의 1 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7] 중국대학과의 국제교류
(단위: 건수)


라. 일본대학과의 국제교류
한국의 대학이 일본의 대학•기관들과 체결한 국제교류기관은 26 개 대학, 로펌, 기관이 한국의 48 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중 국내대학 2곳 이상과 중복하여 교류협정을 맺은 일본 대학은 11곳이 국내 33 개 대학과 중복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표-2-1-8]에서 보듯이 게이오대 5 개 대학, 오사카대, 홋카이도대, 큐슈대가 각각 4 개 대학과, 나고야대, 리츠메이칸대가 각각 3 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학 술교류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26 개 일본 대학•기관•로펌 중에서 11 개 대학을 제외한 15 개 기관은 각각 국내의 1 개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8] 일본대학과의 국제교류
(단위: 건수)

(5) 국제교류협력 체결기관의 지역분포

우리나라 23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체결한 국제교류협력 대학•기관 등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 ( $60 \%$ ), 북미지역 $(20 \%)$, 유럽지역( $18 \%$ )의 대학•기관 등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아시아지역의 대학들과의 국제교류협정 체결은, 아시아지역 15 개 나라 183 개 대학•기관 등과 교류협력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을 제외한 체결기관은 13 개 나라 39 개 대학•기관에 불과 하다. 아래 [표2-1-10]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범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국제교류협정체결을 보여준다.
[표2-1-9] 지역별 국제교류협력 대학 비율
(단위: \%)

[표2-1-10] 기타 아시아지역 국제교류체결 대학 수
(단위: 건수)


## 2.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실적 분석

## (1) 해외연계 국가 대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시행 현황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도전해 볼 수 없었던 해외에서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 석해 보았다.
[표2-2-1] 해외에서의 연계 교육프로그램 시행 현황
(단위: 건수)


법학전문대학원들의 5년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종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한 국가는 20개국 382건으로, 중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건수가 105 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02건, 일본이 77건의 순이었다. 하지만 대학원에 따라서는 아직 소수이지만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도 보인다. 어떻든 이러한 수치로만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해외에서의 다 양한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대신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접근 하기 쉬운 연수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볼 해외연계 프로그램이 단기연수에 치운 친 것과 무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2) 프로그램 운영기간별 운영건수 분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난 5년간 운영된 프로그램을 운영기간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2-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주미만이 130건으 로 전체 프로그램 중 $39.7 \%$ 를 차지하고 있다.
[표2-2-2] 운영기간별 프로그램 운영 건수


1 주~2주미만의 프로그램은 이 91 건으로 $27.8 \%$ 를 차지하고 있고, 2 주~3주미만의 프로그램이 60 건으로 3 주미만의 국제프로그램이 전체의 $85.9 \%$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하계 • 동계방학기 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예상외 로 4 주이상이 56 건, 16 주 이상이 15 건, 32 주 이상도 12 건이 되는 등, 비교적 장기의 해외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16 주 이 상의 장기프로그램은 해교교류협력대학과 학기 단위의 교환학생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 법과대학 체제하에서는 감히 실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프로그램 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제화 감각과 해외 법제시스템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주요활동

법학전문대학원의 해외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프로그램 내용 중 교육교류가 $81 \%$ 로 가장 많았다.
[표2-2-3] 프로그램 내용의 분석
(단위: \%)


교육교류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마다 교류의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류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나 대학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연수토록 하는 것 으로서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법제시스템을 현장에서 연수받을 수 있 도록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의 방 학 중 단기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교류는 전체 프로그램 중 $10 \%$ 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교수 혹은 학생들의 참 여로 해외대학의 연구자들과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학술교류활동으로 보인다. 일반교류는 교육교류 혹은 학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정 체결에서부터 해외 법률관련 기관의 방문 혹 은 연수 등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9 \%$ 를 차지하고 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활동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 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향후 프로그 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진지한 내부적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해 본다.
(4) 국제교류 인원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이 과거 5 년간 해외교류를 통하여 해외에 파견한 교 수와 학생, 교류의 일환으로 유치한 교수와 학생 수는 아래 [표2-2-4]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2-2-4] 국제교류 인원 현황
(단위: 명)
국제교류 인원 현황


지난 5 년간 해외교류를 통하여 해외에 파견된 학생은 2,773 명이고, 국내로 유치한 학생은 610 명에 달한다. 지난 5 년간 법학전문대학원생

10,000 명 중, $27.7 \%$ 의 대학원생들이 해외 단기연수를 다녀 온 셈이다. 이 학생들은 모두 법학과 관련된 학생들이므로 향후 국제적 혹은 국 제법률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등의 문제로, 학생들에 게 국제화 내지 국제적 활동을 위한 교과목 운영을 충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향후 국제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 서는 이러한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과 사 회 혹은 다른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자 세한 것은 이 논문 "제3절 3.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으로 미룬다.
(5) 소요예산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과거 5년간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 등은 내부적이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법학전 문대학원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운영비 자료 를 기재한 19 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표2-2-5] 법학전문대학원의 해외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단위: 백만원)


해외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법학전문대학원은 5 년 누적 합계액이 4 억여원이고, 최소비용을 지출한 대학원은 1 천 8 백 여만원이다. 19 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 소요예산액은 1 억 1 천 3 백여 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른 대학원에 비하여 과도하게 운영비를 지 출한 대학을 제외한 18 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 지출 소요경비는 9 천7백여만원으로 평균 1 년에 1천9백5십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 난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과도한 시설, 장학금 지급 등으로 경영압박 을 받으면서도 매년 2천만원에 달하는 해외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대비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하 여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혹은 민간단체와 해외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키워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지난 5년간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은 그 기록이 명확한 프로그램 숫자가 376 개였다. 연도별 운영현황은 아래 [표2-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첫 해인 2009년 해외교류 프로그램은 21 건에 불과했던 것이 해가 지날수록 운영프로그램 숫자가 늘어나고 있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자료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충실도, 기여도,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없지만,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나 름대로 그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2014 년의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27 건에 불과한 것은, 각 대학측의 예산지 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경험이다.
[표2-2-6]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건수)

3. Campus Asia 시범사업
(1) 목 표

Campus Asia Project는 아시아 지역에서 대학들의 지속적인 학문 교 류활동을 통해 아시아 리더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 국 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세계 의 경제, 문화 발전에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ampus Asia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의지로 제안된 사업으로, 이제까지의 대학교류와 차별화하여 아 시아 전역의 모든 대학들이 함께 참여•협력함으로써 아시아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49) 마침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아시아에
49) 최상덕, 아시아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 Campus Asia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서는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한국, 일본,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중국•일본이 "한•중•일 Campus Asia"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논의된 "법의 Global Standard" 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 3국의 협력 하에 "유스 코무 네"(Jus commune, 공통법) 형성을 향한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50)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은 한중일 각 대학의 법학부•사회 과학부에서 공동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3국 및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장래 법조인•연구자•공무원(국제•국가•지방)•기업인으로서 활약 할 수 있는 인재를 주로 학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모는 매년 한국 대학에서 중국의 대학에 5 명, 일본의 대학에 5 명 등 모두 10 명을 파견한다. 또한 중국 - 일본의 대학으로부터 각각 5 명 모두 10 명의 학생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캠퍼스 아시아 유스 코무네 트라이앵글 교류 프로그램'은 영어 및 다른 외국어로 자유롭게 소통 을 하는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법학•정 치학•기타 사회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사고와 지식을 가지고 핵심적 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중일 3 개국의 여러 대학과 제휴를 도모함으로써 (1) 학점 상호인정에 기초한 학부학생 중심의 교류를 진행하여 질적으 로 보증된 학생교환 및 법조양성과 로스쿨의 공동 규범화 (2) 동아시 아에서의 법정보 교환, (3) 아시아법•법정비지원론의 공동형성을 기 대할 수 있다.

현재 경제적•문화적으로 매우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한중일 3 개국 은 앞으로도 아시아 전역에서 공동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갈 것이
5. 91 면.
50) 이 내용은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계획서"(프로젝트 책임자; 손기식, 마인섭), 2012. 1.에서 인용한다.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외교적인 제휴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인프라, 특히 법을 공유하고 함께 이를 3 개국에 서 협조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유 되는 법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법의 현재 상태와 이념을 반영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의 "공통법"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 여, (1) 한중일의 법•정치•사회의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과 운용능 력을 가지고 공통법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인재육성, (2) 공통법 형성의 기초가 되는 법정보•법령용어의 공유화를 향한 새로운 비교법학을 담당할 인재 육성, (3) 그 성과를 다른 아시아의 여러 나라 의 법 발전에 응용하여 법정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법의 형성•운용 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류프로젝트 내용51)

한중일 법분야에 공통된 Campus Asia의 성공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 적인 학생 상호교류를 포함한 본격적인 인재교육교류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우수하고 의욕 있는 학생을 1 학년 말에 선발하여, 2.3학년에 공통 커리큘럼에 의거한 교육을 한다. 구체적으로 2학년 1 학기에 각국에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자국의 정치•법체계에 대하 여 학습하고 동시에 외국어능력을 강화한다. 2 학년 2 학기와 3 학년 1 학기, 2학기에는 각 대학에 유학하여 공통강의를 수강한다. 핵심 커리 큘럼으로서 (1)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입문강의, (2) 사회과학적 소 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를 배양하기 위하여 세계를 비교대조하는 비교법•정치를 다루는 강의, (3) 사회과학분야에 특화한 것을 포함한 어학과목을 설정한다. 또한 이 이외에 각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 어 수업 등을 수강하는 것도 인정한다.
51) 이 내용도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계획서"(프로젝트 책임자; 손기 식, 마인섭), 2012. 1.에서 인용한다.

핵심적 커리큘럼 이외에도 상호간에 개설된 수업에 대해서도 상호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학부학생에 대한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부속 프로그램으로 각 국의 로스쿨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일부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참가대학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The Quality Assurance Council을 설립하여 '학점교환, 학점평가정책, 학위수여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교육을 위한 공통언어는 '영어'를 상정하고 있지만, 각국의 대학에 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치문화나 법문화에 대해서 도 교육을 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현재상황과 장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은, (1) 프로그램의 사용언 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대학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영어는 이미 습득할 필요가 있다. (2) 적어도 파견된 나라의 문화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언어의 기초(문법, 언어표기, 기초회화)가 요구된다. (3) 파견 후에는 더욱 파견국의 법과 정치를 취급하는 고도의 직업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지의 정치와 법에 대하여 영어자료 이 외에 현지어(신문 정도)를 읽을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3 절 평가 및 개선방안

## 1. 시사점

(1) 국제화

대학의 국제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운영과 직결된 문제 이다. 국제화를 막연히 대학 재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비율을 산정하 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유학생을 유치한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의 출발점이었다．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외국학생의 유치로 대학，특히 지방대학들은 재정난을 극복하면서 대학 충원율과 유학생 비율을 높여 교육부의 각종 국고지원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화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그러나 이러한 해외 유학생 유치는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취 지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다．이러한 행태를 국제화로 오인하는 대학들은 멀지 않아 더 큰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국제화는 단 순하고 막연한 구호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보다 구체 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52）우선 대학에서 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첫 째，컨소시엄 방식에 의한 국제교류의 확대，둘째，학점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도입，셋째，국제교육 협력체계 확립을 위한 새로 운 교육방법의 도입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53）대학의 국제화는 대학 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정부차원의 국제화 전략과 관리도 필요하다．현재와 같이 대학평가를 전제로 한 획일화된 국제화가 아 니라 대학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 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54）

이미＂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인가시 의 약속이행이라는 차원이지만，대학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국제교류 가 활성화되고 있다．그러나 대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교류도 특화된 전략에 따라 시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세계화 시대에 경쟁 력 있는 변호사 양성은 변호사 당사자의 생존경쟁을 위해서 필요하지

[^6]만, 법률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이에 종사하고 있는 법률종사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외 유학 생을 교육시키기에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석•박사학위 과 정을 통한 인재양성은 법제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기왕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해외연계대학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서 대학원에서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국내 교수•학생의 파견이나 해외 교수•학생의 유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전환국가의 교수들은 구 소련, 동독, 체코 등에서 공부한 경우가 많아 시장경제질서에 기반을 둔 법체계 및 법 이론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 대하여 법학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질서에 맞는 법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55)
(2) 유학정책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유학생이란 "제 10 조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1항). 유학생 특히 고등교육을위한 유 학은 두뇌의 이동이면서 국제 사회와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세계인을 양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유 학생을 유치하여야 한다.56) 현재와 같이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숫자에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고 글로벌 인 재로 성장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자국에 돌아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여야 한다. 한편 세계 여 러 나라의 인재들을 유학생으로 유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55) 김대희•홍승진 • 이영호, 일본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연 구-팀제훈련보고서-, 법제처, 2007. 89-90면.
56) 손희권,「대학교육」(제178호), 2012. 9-10,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 178\&no=4190(검색일: 2014.11.28)

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요를 감안하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는 물론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의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 }^{57)}$

이 경우에도 경제적 협력관계 측면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의 기여, 인 재양성 등 국제협력의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장기적 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분명한 방향의 설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유학생 정책인 '풀 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반, James William Fulbright 상원의원이 "타국과의 상호이해가 미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국제분쟁을 회피 하는 수단, 종전 후 서방세계•동맹국들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태동되었다. Fulbright 상원 의원은 미국의회에 Fulbright 교류계획 법안을 제출, 1946. 8. 1. 트르 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어 정부주도의 유학교류 프로그램으로 정식 발족하였다.58) 이 프로그램은 준비기간을 거쳐 1948년부터 운영되어 2010년 현재 155 개 국가와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약 30 여만명이 이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또 유럽의 ERASMUS 프로그램도 우리나라의 유학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ERASMUS 프로그램은 중세시대의 유명한 인문주의학자이자 신학자의 이름인 Erasmus인 동시에 이 계획의 정식 명칭인 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 (대학생의 이동에 관한 EC 의 활동계획)의 첫 글자에서 연유하 는 것이다. Erasmus계획은 유럽 역내의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인적교류의 촉진과 그 기반이 되는 학위 등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 EC 전역에 걸쳐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확보, (2)

[^7]세계시장에서 EC 의 경쟁력 향상, (3) 가맹국 대학 간의 협력강화, (4) EC 시민이라는 의식의 고취, (5) EC 역내에서의 협력 사업에의 참가 를 대학졸업자에게 부여 등의 목표를 정해 1987년 6월 이 계획의 실 시가 확정•시행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Erasmus프로그램의 목적은 장 기적으로 유럽학생의 $10 \%$ 를 이동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려는 것으로 매년 15 만여명의 학생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Erasmus프 로그램은 2009년 현재 31 개국 3,100 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59) Erasmus프로그램은 1989년에는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유럽 대 학간 학점호환제도)가 도입되어, 각 대학은 강의내용의 명확화,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학점취득•학점호환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방 향으로 진일보 하였다. 또 EC 는 29 개국 교육부 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2010년까지 EU회원국의 고등교육제도를 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 년 시스템으로 통일한다는 내용 등을 이행하기 위한 Erasmus Mundus프로그램을 2003. 12. 5. 도입하였다. Erasmus Mundu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은 유럽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럽대학 졸업자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EU 의 경제적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이 에 대한 제 3 국가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60 ) 이제 EU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우수한 고등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공동체 의식의 공유를 통한 국제적 '교육시장 및 인력시장’에서61)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유학생은 1967년 6 명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146 개국 5,718 명으로 몽골출신 260 명, 베트
59) 최상덕, 아시아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 Campus Asia 설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5. 31면 이하 참조.
60) 김륜옥,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대학교육 제 160 호, 2009. 7-8. 74면.
61) 김륜옥, 앞의 글, 78 면.

남 235 명, 인도네시아 176 명, 말레이시아 147 명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 아시아권이 지역별 분류에서 가장 수혜가 많았다. ${ }^{62)}$ 현재도 Korea Foundation 장학금으로 국내에 유학을 준비하려는 외국인이 많은 상황 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사례에서와 같은 치밀한 전략적 유학정 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2. 평 가

(1) 법과대학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법조인력 양성 특히 사법고시를 통한 소수의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엘리트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 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법학대학에서는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법 위주의 교육을 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법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고, 그 결과 법학교육은 해석법학 위주로 진행 되었다. 대학에서는 기본 법률인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사 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7 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국제법, 국 제사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학 대학은 국내법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 공무원, 각 민관기업체 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각 대학들은 법학대학 차원에서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의 필요성이나 그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국제교류는 대학전체의 입장에서의 교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법학은 학문의 특성상 대학차원의 국제교류 내지 법제교류가 거의 없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6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11015002(검색일:2014.11.28.) 서 울신문, 2014. 10. 11. 15면.
(2) 법학전문대학원

각 국가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지역단위의 블록화를 통한 상호협 력 등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법학교육은 이러한 협력•협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추세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면서, 법조인력의 양성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력 배출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하게 되었다. 종래 법조인력은 국내법 위주의 송무업무 중심에 초점 을 맞추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교육체제를 벗어나 대학원교육 체제로 전환하여,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수료한 후 법학대학원에서 법률교육을 통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종래 사법고시가 오로지 기본법률 암기위 주의 학습방법, 장기간에 걸친 수험준비로 고시낭인 등 사회•경제적 인 인적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인적•물적기반을 갖 춘 전국적으로 25 개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여 매년 2,000 명의 총정원을 3 년과정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변호사로 양성하도록 하 였다. 다만 변호사자격은 총정원의 $70 \%$ 합격을 보장함으로서 생산적이 며 활용 가능한 법학교육을 통하여 국내외적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 연구 제2절에서, 지난 5 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한 국제교류 현황을 분석해 보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양적 확대 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내실화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 (1) 추진전략

가.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된 후,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범정부적 통합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63)} \mathrm{ODA}$ 사업과 관련하여 30 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은 애매하 다. 즉 동법 제 1 조에 의하면,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 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시 동법 제 3 조에서는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하여, 자칫 인도주의적인 원조라는 목적이 경제협력의 증진이라는64) 경제적 측면 만이 부각될 수 있다. 분명 현재 경제협력의 증진이라는 국제개발협 력사업의 기본정신 및 목표는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에 혼선을 초 래할 중대한 심각성이 있고, 불필요한 국가간 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지만 경제개발협력기본법의 목적 에 충실하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와 교육 등 인도주의적인 비 경제적 목적을 위한 교류협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없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특히 법제교류와 같 은 지식 ODA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63) 이태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 및 ODA 제도개선 방안", 한국형 ODA 선 진화 방안 자료집, 2010. 12. 10. 15-16면.
64) 박광동,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본 ODA에 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7집, 한국 입법학회, 2010, 81면.

하는 기업지원형 원조가 아닌 비구속성 원조를 지향하는65) 것이 바람 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법률교류의 측면은 그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 이는 특히 공적개 발원조(ODA)에 있어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의 입장과 원조를 요구하는 국가의 이해가 맞아야 원조가 제공될 수 있다는 지침의 성격상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제교류에 대한 필요성, 법제교류의 체계, 방법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간헐적인 연구,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단, 경제 - 사회 - 문화교류 등을 위 한 상대국과의 우호증진의 필요, 법학대학 등 연구단체 차원의 학술 교류, 홍보차원의 법제교류 등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무상원조가 진행되면서, 부수적으로 간헐적인 법 제교류•지원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몽골 등 체제전환국들은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고도, 안정적 인 경제성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의 체제전환에 필요한 법정 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과 민간단체에서는 대상국가의 입법 관련한 실무적 지원, 법제전문가에 대한 법제교육 등을 통해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66)}$

이러한 유형의 지원은 이전의 저개발국에 대한 물질적 원조에서 탈 피하여 우리의 발전경험을 접목시킨 지원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65) 박광동, 앞의 글, 88 면.
66) 양효령,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에 의한 인재양성 현황과 시행방안", 동북아법 연구 제 3 권 제 2 호, 2009. 12. 60 면.

즉 성과위주의 지원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발전경험이나 법적지원은 무형의 원조로 투입에 따른 성과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개 중장기적 계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67) 이와 같은 지원은 교육, 제도 정비 와 같은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 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다. ${ }^{68)}$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형의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인적 자원의 개발과 법령의 정비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라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을 통해 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와 더불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선진 법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의 구축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 였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 제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사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무형의 인프라 중에서도 특히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법제도의 구축 과 법률적 소양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 중요하다. 법치주의는 개인의 권리의식을 증진시키며 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사회적 분쟁을 미 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아 울러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사회구성원들은 예측 가능한 사회 속에서 계획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국가적인
67) 권율 외 4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157 면.
68) 이재훈•배소현•주상희, "ODA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활성화 방안 에 관하여",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2, 5면(http://world.moleg.go.kr/news/data/927 (검색일 : 2014.11.28)).

안정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거래를 통 하여 자본축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투자 증가로 이 어지고, 해외로부터 투자유치가 촉진되어 더 많은 생산과 수출로 이 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민주 사회 체제 형성•발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제도 운영경 험은 법제교류에 있어서 필수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 과 법제지원 내지 법률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가적인 지원의 한 방법으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지식ODA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일부기관 등에서 추진•시행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입법지원 보다는 주로 대상 국가의 관계기관에 대한 연수 또는 위탁교육 등에 집중되고 있다.69) 그러나 국내의 지원기관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의 중복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지식ODA사업으로서의 법제교류지원 사 업에서도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조정 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차별적 목표지향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 대한 선진 여러 나라들의 ODA사업은 매우 체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이래 선진국의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오늘날과 같은 비약적 성장 을 일구어내었듯이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국제개발협 력 사업을 통하여 이들 선진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선진 각국은 이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체
69) 박광동, 앞의 글, 70-71면. 특히 71 면 각주6) 7)에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제전환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이들 나라에 대한 잠재적 시 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 력 지원사업을 대폭 늘려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원국 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통하여 지원대상국의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수 십년 동안 지 속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던 선진국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도로나 항만, 공항건설 등 SOC 사업, 학교를 지어주거 나 건물•주택개량사업,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IT 지원사업 및 IT인재 의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 등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통하여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화된 인력양성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여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단기• 1 회성이며 과시성 사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법제교류 지원사업에 있어 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경쟁적으 로 하는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대신 다른 나라들이 잘 할 수 없는 분 야를 특화하여 지원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교류지원을 경제적 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 여, 비경제적인 것이 더욱 가치를 발휘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 대학-민간-공공기관의 유기적 생태환경 구축
(1) 대학 측의 생태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의 강제적 이식기인 일제시대 이래 현재까지 우수한 인적자원이 꾸준히 법률분야에 몰려들었다. 이들이 해외유학

또는 국내에서의 고등교육 이수 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축적해 놓은 법치주의라는 튼튼한 기반이 바탕이 되어 오늘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법률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이를 설계•유 지•운영할 인적자원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일수록 이러한 무형의 인프라를 무시함 으로서 결국 사상누각의 개발지상주의에 현혹되기 쉽다. 교육투자는 일반적인 경제법칙에 따른 투자와 성과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 치가 있다.
우수한 인재들에 의한 법학교육과 국내외에서의 법학연구 및 법과대 학 학생들의 배출은 저비용으로 법치주의를 실현, 국가의 시스템을 구 축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우선 졸업생들의 취업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대•중소기업 등, 전국적으로 고루 펴져, 대학에서 습득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내부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경제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런 의미에 서 법과대학은 법과대학 졸업생을 매개로 법과대학과 거의 모든 민관 단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학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국내외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전수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 한 공간 속에서 법과대학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부모 후원 혹은 자신들 의 학구열에 불타 유학 혹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자 생활을 통하여 연 구결과를 축적하며 후학양성에 전념한다. 동시에 교수들은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각종 국가기관•공공단체에의 자문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 제 공, 직•간접적인 입법활동,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오래전 부터 꾸준히 광범위하게 '법제교류'를 해 오고 있다. 법을 매개로 한 활동 그 자체가 법과대학 교수들의 업무영역이자 활동영역이며, 그들 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많은 민간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민관단체는 대학이 아닌 대학교수 개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민관단체와 개인의 관계이다. 이런 시각에 서 본다면 법학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학문분야와 달리, 법과대학(법학 전문대학원)이라는 집단지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과대학 교수 개인에 초점을 두고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법과대학 교수들도 개인별로 연구 및 활동을 당연시한다. 그러 나 연구나 활동분야의 특성상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집단지성에 의할 때 더욱 진가가 발휘되는 분야도 있다. 물론 대학의 연구자들은 소속 된 대학 이외에 학회 등을 통하여 공동연구, 공동 활동을 하지만 연 속성이나 지속성, 집중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 관 계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집단지성에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단체와 개 인의 관계는 많은 결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법학분야에서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눈에 띄게 활성화 되는 분야가 대학의 특성이나 대학의 목적에 부응하는 연구소 를 통한 연구활동이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지난 5년여 많은 학 술활동을 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를 통하여 축적시켜 오고 있는 것을 제2절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것은 민 관기관과 법학전문대학원 - 대학연구소가 유기적 관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민간 측의 생태

여기에서 '민간'은 '대학’이나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구별하는 개 념으로, 민간단체나 기관은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의 주체 혹 은 사회의 공익적 기여를 표방하며 활동하는 NGO 단체 등을 말한다. 이들 '민간' 측은 ODA사업에 있어서 정부 등 공공기관의 협조자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 단체의 비영리적 활동 혹은 소비계층 의 수요발굴 내지 상품화에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는 회사 등이 ODA 사업 등을 계기로 수원국에서의 활동을 경제적 수익으로 발전시켜 나 가는 경우가 많다. 즉, 지원사업의 동반자로서 수원국의 니즈를 파악 하고 이에 맞춘 선제적 경제활동은 이들 민간단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 원사업이 당장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민간단체나 기업의 협력은 수원국이라는 미래의 시장을 선점한 다는 차원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민간기관들이 주 목표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원국과의 지속적 관계유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3) 정부•공공기관 측의 생태

우리나라는 1965년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수초청훈련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같은 공적개발원조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70) 특히 2009. 11. 25. 경제협력개발 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의 지위에 오르면서 지원국 으로서의 책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법제교류지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중앙공무원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무역협회,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회, 아시아법연구소 그리고 각종 법제교류 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등이 다양한 형태 의 법제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71)

[^8]71)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초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 25 권

그러나 정부•공공기관측의 교류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예산의 지원이라는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수원국의 수 요예측에 맞춘 지원사업 선정과 예산확보 준비기간이 길다는 점 이외 에도, 장기적인 예산지원 사업이 어려워 대부분이 사업이 1 년 단위로 분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업무담당자들의 순환근무로 사업의 연 속성을 도모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원사업의 내실보다는 성과위주의 홍보하기 좋은 사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한편 법제교류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 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명 칭만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지원된 경우도 있었다. 또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워가 함께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 등이 문제로 일단 하드웨어 부분에 대하여 지원한 사업이 종료한 후, 후속 소프트 웨어 지원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미 종료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 동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등 사 후관리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 액이 투자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있었다. 예산의 성격상 일 단 지원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 배정을 받기 어렵다는 강박 때문에 지원 시점에 수원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 도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의 국가들에 집중 되면서 국가 간의 지원경쟁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수원국의 입장에 따라 지원국의 사업지원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생 길 수 있다.

[^9](4) 소 결

이제까지 대부분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정부•공공기관이 자체적으 로 추진하거나, 일정부분 민간기관과 대학교수 등 연구자들의 협력으 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인도주의 적 지원사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제까지의 사업 진행 방법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법과 대학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체제로 2원화되면서 법조인 력의 일원화 및 법학의 세계화는 오로지 국내법 위주의 수험법학의 범주에 머물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 로 눈을 돌려 교수•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및 학술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활동을 위한 법학연구소도 내실을 다지고 있다. 대학의 사정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면 이제 법률전문가를 앞세워 내실 과 지속성 있으며, 지식의 공유에서 지식의 교육까지 일관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대학의 법학연구소를 법제교류사업의 생태계의 일원으 로 편입시킬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대학과 법학연구소는 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교육 공간 등 하드웨어 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 법학교수들 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 잘 다듬어진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프로그 램 등 소프트웨어적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또 교수들의 연구활동 을 통한 다양한 정보는 수원국의 니즈를 용이하게 파악하거나 수원국 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잘 훈련된 교육자들에 의한 교육훈련은 훈련생의 인생에 평생토록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확대 - 분산•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대학 혹은 법학연구소 가 주도적인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 원국 국가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학과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공공기관이 유기적 생태환경 을 구축하여 정부•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법학연구소 등이 각자 역할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배가될 것이 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제까지의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체계, 운영 등에 큰 변혁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의 이기심 을 버리고 보다 대승적 차원의 유기적 생태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널리 펴져나가는 한류문화의 확산, 후속 세대에게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순리를 감안한다면 '나' 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기적 생태환경 조성이야 말로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2) 정책제안

가. 생활밀착형 법제교류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 사업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국 법제연구원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베트남 에 사법연수원을 설립하여 베트남 판사나 직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사 법시스템을 전수시켜 주고 있고, 한국증권거래소는 캄보디아에 캄보 디아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증권감독원, 증권회사의 관련 증권법제를 전수하는 등, 각 지원기관의 특성에 맞는 법제교류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지원 사업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면서 한국법제의 전수 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법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의 약속이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국가의 탄생 과 함께 간단없이 이어져오고 있고, 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일정한 규율에 따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제 현대화된 사

회의 법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은 그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일치될 수 있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제교류에 있어 서는 자국의 법을 수원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를 집행하는 방안을 전수시키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법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조사•연 구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습법'의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법과 결합될 수 있는지 정치한 연구를 거 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교류의 출발점을 수원국의 폭넓은 관 습조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과지 상주의에 사로잡힌 정부 혹은 사업주관자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기간이라는 단기간에 초점을 맞 추기 때문에 이러한 관습법조사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수 원국의 인재들과 지원국의 인재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그마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다보면(비경제적인 사업) 이 러한 노력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 더 큰 경제적인 성과로 되돌아 올 것인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업지 이외에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원국 국민들의 감정 에 호소할 수 있는 법률지원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국제 결혼과 관련한 법제지원사업 등이다.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결혼 적령기인 남성인구가 결혼적령 여성인구를 초과하는 혼인적령기 남녀 의 성비 불균형의 심화라는 문제를 격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남 성들과 거의 동등하게 높아진 한국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어촌 남 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농어촌 남성들 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여 혼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자 지

방자치단체들은 종국에는 농촌이 공동화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 공연히 국제결혼을 조장해 왔다.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통하여 농 촌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외국인 여성들의 결혼을 통한 코리 안 드림과 일치하면서 국제결혼의 대폭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본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농촌의 안정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해 결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대규모로 초대된 이주자인72) 셈이 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자, 도시 저소득근로자 및 이혼경력자 등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기 쉽지 않은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 }^{73)}$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2014. 9. 30 현재 150,510 명이 고, 이 중 여성 외국인 배우자는 128,030 명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85.07 \%$ 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국내 거주하고 있다. 아래 [표3-3-1]은74) 외국인 여성배우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나타낸 것 으로, 20 세에서 45 세미만의 여성이 전체 여성의 $79 \%$ 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가임여성의 증가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후속세대를 키워 낸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단일민족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차별, 이들이 출산한 자녀들의 양 육, 교육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갈 등의 소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에서 보게 될 이 혼의 분석을 통하여 그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의 일단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72) 김현미,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 제5권 2 호, 2012. 141면.
73) 문흥안,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법제연구 통권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 6. 761-762면.
74)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strRtnURL =MOJ_40402000\&strFilePath=moj/\&strNbodCd=noti0703(검색일: 2014.11.28) 통계자료 자 료실 193 번을 편집.
[표3-3-1] 국민의 여성배우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건수)
국민의 여성배우자 연령대별 현황 (2014.9. 30현재)


한편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등 출신의 국적별 현황은 아래 [표3-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 베트남출신의 결혼 이주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이어 필리핀과 캄보디아가 뒤 를 잇고 있다.
[표3-3-2]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및 연도별 추이
(단위: 건수)

| 외국인 <br> 아내의 <br> 국적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네팔 | 16 | 33 | 82 | 159 | 316 | 202 | 211 | 255 | 186 |
| 키르기스 <br> 스탄 | 33 | 80 | 62 | 49 | 54 | 116 | 201 | 119 | 71 |
| 인도네시아 | 99 | 97 | 74 | 77 | 81 | 82 | 89 | 97 | 121 |
| 대만 | 114 | 104 | 129 | 152 | 134 | 152 | 155 | 175 | 248 |


| 외국인 <br> 아내의 <br> 국적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 | 157 | 394 | 1,804 | 659 | 851 | 1,205 | 961 | 525 | 735 |
| 태국 | 266 | 271 | 524 | 633 | 496 | 438 | 354 | 323 | 291 |
| 우즈베키 <br> 스탄 | 332 | 314 | 351 | 492 | 365 | 317 | 324 | 365 | 269 |
| 몽골 | 561 | 594 | 745 | 521 | 386 | 326 | 266 | 217 | 193 |
| 필리핀 | 980 | 1,117 | 1,497 | 1,857 | 1,643 | 1,906 | 2,072 | 2,216 | 1,692 |
| 베트남 | 5,822 | 10,128 | 6,610 | 8,282 | 7,249 | 9,623 | 7,636 | 6,586 | 5,770 |
| 중국 | 20,582 | 14,566 | 14,484 | 13,203 | 11,364 | 9,623 | 7,549 | 7,036 | 6,058 |
| 계 | 30,719 | 29,665 | 28,580 | 28,163 | 25,142 | 26,274 | 22,265 | 20,637 | 18,307 |

"http://www.kosis.kr/", 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동향조사>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건수도 [표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 인건수에 비례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순으로 이혼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표3-3-3] 외국인 아내의 연도별 이혼 추이
(단위: 건수)

| 외국인 아내의 <br> 국적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 | :---: | :---: | :---: | :---: | :---: | :---: | :---: |
| 캄보디아 | 19 | 99 | 178 | 109 | 167 | 192 | 180 | 152 |
| 태국 | 33 | 59 | 85 | 113 | 128 | 137 | 129 | 133 |
| 우즈베키스탄 | 105 | 112 | 160 | 174 | 174 | 133 | 141 | 158 |


| 외국인 아내의 <br> 국적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 :---: | :---: | :---: | :---: | :---: | :---: | :---: | :---: |
| 몽골 | 132 | 173 | 213 | 176 | 154 | 157 | 132 | 125 |
| 필리핀 | 165 | 213 | 268 | 285 | 299 | 328 | 395 | 435 |
| 베트남 | 610 | 895 | 1,078 | 1,292 | 1,552 | 1,931 | 1,992 | 2,057 |
| 중국 | 2,538 | 3,654 | 5,398 | 5,562 | 4,705 | 4,783 | 4,204 | 3,797 |
| 계 | 3,933 | 5,609 | 7,901 | 8,246 | 7,852 | 8,349 | 7,878 | 7,588 |

"http://www.kosis.kr/", 주제별통계>인구.가구>인구동향조사>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 출신국에서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결 혼이주여성이 이혼절차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크게 문 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 }^{75)}$ 그 결과 많은 귀환여성들이 그들의 신분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해 여전히 법적으 로 한국인의 배우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설사 이 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번역하는 등의 비용도 귀환여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한국남성과 결혼 및 이혼이 많은 베트남의 법과대학 혹은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 는 경우 이혼에 따르는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시스 템화하는 사업도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 될 수 있 다. 양국 대학의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들을 통한 인턴쉽 등으로 상담, 서류작성 등의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법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혼에서 뿐만 아니라, 양국의 이해를

[^10]도모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교류협력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이혼절차의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출신국으로 돌아간 결혼이주여성은 재혼하기 위하여 필히 해당 본국 법률에 의거 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는 국제이혼사건 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하는 문제이다. 귀환이주여성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양국 정부 차원 혹은 양국의 대 학•대학연구소 등을 통한 법제교류 내지 공동법률구조사업은 귀환이 주여성의 인권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 해 두는 것은 이들 귀환이주여성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국제이혼에 따르는 미성숙자녀의 보호문제도 매우 심각 하다. 현재 국제적 조류는 미성숙자녀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 시하고 있는데, 국제이혼에 있어서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 섭권 등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인권의 사 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 국제이혼여성이나 그 자녀의 보호는 일 상생활에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법률구조 내지 법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법률구조 및 법률교류와 관련한 인재양 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적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교육부는 지난 2005년 Study Korea Project를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2004년 16,832명 국내 유입 유학생을 2011년에는 89,537명까지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책 성 공에 자신감을 얻은 교육부는 2013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을 유치하기 위해 다시 Study Korea 2020 Project를 수립하여 2020년까 지 유학생을 20 만 명 유치하여 외국인 유학생 수의 비율을 $5.4 \%$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76) 이러한 외국인 유학 생 유치는 동아시아 경제력의 급격한 팽창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자 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학 인구가 1980년 110만 명에서 2009년에는 370만 명으로 급 격히 증가하였고, 2020 년에는 450 만 명까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 }^{77)}$

그런데 특이한 점은 각국이 국제교육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유학생 의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을 자국에 정착시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양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학생 유치로 국가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재정 적 자를 해소한다는 소극적 태도, 적극적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활동 인구를 증대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 해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통 이다. 세계적 공용어인 영어를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를 갖춤으로서 영어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화된 방 법이다. 하지만 법제교류에 있어서 법률용어의 전달을 영어 만에 의 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KOICA의 지원에 의한 몽골
76) 홍준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양적 성장과 질적 햐앙의 딜레마", 대학교육 제 184 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3-4,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 184\&no=4309 (검색일: 2014.11.28)
77) 홍준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양적 성장과 질적 햐앙의 딜레마", 대학교육 제18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3-4,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84 \&no=4309(검색일: 2014.11.28)

대학의 한국법교육센타 운영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을 이수하면서 한국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한국어로 훈련된 유학생 유치의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해 2012년 10 월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전 세계 54 개국에 130 개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78)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만 27개국 84 개 학당이 운영될 정도로 한국어 습득의 열기가 높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시스템을 해외 유학생 유치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 모색 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 대학 내에서 운영 중인 일부 세종학당은 해당 대학의 한국어학과와 유기적으로 협력•운영되고 있음을 현지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와 국제화된 마인드를 갖춘 유학생을 유치하고, 법률적 지식을 습득한 이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산학연계 혹은 국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이들의 전문지식을 현 장에서 학습시켜 자국과의 법제교류에 있어서 양질의 유학생을 양적으 로 확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의식이 그리 높지 않는 상황 에서 한국어능력과 법률학적 소양을 갖춘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교육 - 훈련기회의 제공은 법제교류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노동부 등 정부의 부처이기주의 극 복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각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정부의 해외유학생 지원사업을 재점검하여 제 도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과대학 교수들이 해외 유학생을 초청하여 책임을 갖고 교육

- 훈련시키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구축도 고려 할만 하다. 교육원조는 수원국의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경 제적인 하지만 그 성과가 즉시 나타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의 연구소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연구소를 통하여 유학생 추 천•교육•훈련•산학협력•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평가로 지원의 계속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제안한다.


## 다. 국제개발협력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는 국제화 혹은 세계화 속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 없이 고립되어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대외의존도가 $80 \%$ 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서 필요하다. 이렇게 세계화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로서, 민주주의와 보 편적 인권의 확산, 초국가적 관리체계의 등장, 상품•서비스•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화 등이 포괄적으로 발생한다. 초국가적 기구의 등 장은 종래의 국가 기능과 권한을 축소시킨다. ${ }^{79)}$ 예컨대 국제무역기구 (WTO)의 위생규정이 곧 국내 검역규칙이 되고, 사생활보호를 위한 헌 법 제 17 조는 국제인권규약 제 17 조와 일치한다. 80 ) 현재 1,700 여개에 이 르는 국제기구에 의해 세계가 독립된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 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선진국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고 있고,81) 세계화에 의한 국제교류는 활발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국가의 성공한

[^11]제도는 법제교류를 촉진시켜 다른 나라에 쉽게 전파된다. 최근 우리나 라의 경제발전, 한류문화의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모델이 아시 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 라의 지식ODA 사업 특히 법제교류지원 사업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태동하고 있다. 교류협력을 통한 한국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한 미래 발전에의 활용, 한국법의 세계화에의 기여,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 대한 한국법제의 교류지원을 통한 남북한 교류의 우회통 로 개척, 그리고 이를 매개로 한 남북통일 분위기의 조성과 동북아시 아의 평화에의 기여 등82) 그 활동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 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 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제개발협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2010. 1. 25. 법률 제9938호 제정,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 • 아동 • 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 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 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동법 제3조). 이러한 기본정신은 구체적으로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 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 1 항의 기 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달성을 목 표로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 가, 지방자치단체, 시행기관 등은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82)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 해든, 2006, 260-273면.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 항). 특히 국가 등 시행기관83)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 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 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 }^{84)}$

국제개발협력은 크게 두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85) 첫째, 무상원조 사업은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 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동법 제1조)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28개국 28 개 사무소(주재원 16 개소)를 두 고86)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프로젝트 사업, 국 내초청연수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해외재난긴급 구호, 평화구축지원 사업, 민-관협력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등이다.87) 둘째, 유상원조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형태로
83) 이 법에서 말하는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8호).
84) 이 내용은 2014. 10. 15. 동법 제5조 개정시 제4항에 신설된 조항으로 2015. 4. 16. 부터 시행된다.
8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는 국제개발협력의 주관기관으로,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도록 한다.
86) 구체적으로, 아시아권에는 13 개 국가로, 네팔,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솔로몬 군도이다. 아프리카에는 8 개 국가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DR콩고, 가나, 르완 다, 카메룬, 우간다, 모잠비크이다. 중남미에는 4 개 국가로,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 루, 볼리비아가 았으며, 동구•CIS에는 2 개 국가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 리고 중동에는 이라크가 그 대상이다. 주재원은 16 개국에 16 개소에 파견되어 있다. 탄자니아, 에콰도르, 세네갈, 모로코, 팔레스타인, 이집트, 튀니지, 과테말라, 엘살바 도르, 요르단, 미얀마, 케냐, 알제리, 아이티, OECD대표부, USAID 등이다. http://www. koica.go.kr/ (방문일: 2014. 11. 28.)
87)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ica.go.kr/(검색일: 2014.11.28)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88）산 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 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 금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동법 제1조）．

대학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 하여야 할 필요성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89）우리나라는 2009．경제협력 개바리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였고，반기문 UN 사무 총장은 2010．11．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 는 UN Academic Impact를 만들었다．90）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 력 사업에 대한 국내 대학의 참여를 도모하고 공적개발 원조의 효과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대학과의 파트너십 프로 그램（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운영 중에 있다．91）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사업을 평가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학의 적극적인 전문지식의 활용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아시아 지역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활동은 아시아의 인재양성과 아 시아 경제협력 전략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근대화를 서구화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해온 근•현대 기 아시아의 대학들은 미국과 유럽의 대학들을 발전의 모델로 삼고 그들의 학문•교육•연구 활동을 그대로 모방•답습하기에 천착하였 다．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 통치를 경험한 결 과이기도 하다．92）아직 아시아의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

88）이 법에서 말하는＂개도국＂（開途國）이란 동법 제 2 조 제 1 호에 의하면，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국민소득수준•산업구조 등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89）손희권，＂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대학교육 제178호，2012．9－10，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78\＆no＝4190（검색일：2014．11．28）
90）손희권，앞의 글，9－10，
91）손희권，앞의 글，9－10，
92）최상덕，아시아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 Campus Asia 설계 연구，한국교육개발원，

럽으로 유학하고, 아시아 국가•대학 간의 교류협력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이 연구의 제2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아시아지역은 북미나 유럽과 다른 문화적 토양 위에서 각자 독자적 인 정치•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중, 근•현대기의 제국주의적 식민정책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정치적인 혼란, 불안한 사회, 저개발국 가의 대명사로 각인된 곳이다. 하지만 산업화에 뒤쳐져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낮을 뿐, 아시아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문학적 소양과 가치는 점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은 국경 없는 세계경제 시장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 장 자국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진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단기간 압축 경제성 장을 이룩했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은 이들 아시아 각국의 발전모델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토 양이 각각 상이하여 한국식 개발경험의 적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 게 될 것도 분명하다.
지역의 토양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제도의 설계는 법제도가 그 사회 의 구성원들의 인식의 바탕위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의 국제교류 혹은 법제교류는 해당 국가 구성원들의 인식, 사회적 습관, 제도 등의 선행적 연구를 바탕으로 글 로벌 기준에 맞는 법규범이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 발한 지역연구가 대학에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경우(동법 제3조 제 2 항 제 2 호),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각 대학의 법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과

[^12]효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이나 기관의 참여 및 지원 은 국제적인 조류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ODA수행을 위한 방안이 다.93)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대학과 실질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협력체계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 편 대학의 법학연구소 등도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연구소를 특성화시 키고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부응한 국제개발협력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인턴십을 적극 활용하여 현 장경험을 쌓는 등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마침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로스쿨 재학생과 졸 업생에게 해외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런 기회를 법제교류 협력으로 확대한다면 국제적•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국제개발협력 법 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제교류에 있 어서는 일반적인 개발원조 사업과 달리 수원국에 대한 정치•사회• 문화적 이해 뿐만 아니라 법제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지식이 필요 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법제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개발원조 사업과는 달리 수원국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적 이 해뿐만 아니라 법제와 관련된 역사적•비교법적 지식이 필수불가결하 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93) 박광동, 앞의 글, 85 면.

# 제 4 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 방안 

## 제 1 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민간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은 경제적 실익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 경제 관련 기관의 협력 사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본 연 구 진행시에, 관련 현황을 조사•수집하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제 5 장에서 소개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각 기관의 국제 교류 및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담당하였던 실무자들이 제공한 외부에 공표가 가능한 자료를 적극 채용하였다.94)

아래에서는 아시아법제 교류협력 업무가 가지는 특징과 일반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각 민간기관의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1. 아시아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차이나반도를 중심으로 한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국가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몽골 등은 체제전 환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 대부분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상 대적으로 낮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전환국에서는 외국기업과 투자자의 유치를 통하여 자국 발 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고 있다.
94)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리 각 민간기관 실무담당자들과 상의를 진행하였음.

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법 내지 영국법, 러시아법 등 유럽체계에 근간을 둔 법제들을 모델로 하여 법률의 근대화를 추 진하여 왔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우 프랑스법의 영향을 많 이 받은 반면, 미얀마의 경우에는 영미법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법체 계를 가지고 있고, 몽골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프랑스 내지 영국의 식민통치 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대륙법체계의 프랑스법 또는 영미법체계의 법체계를 전수받은 경향이 크고, 몽골의 경우 지리•문화•정치적 인 접성을 바탕으로 그 법체계를 구성한 영향이 크다 하겠다. 또한 이러 한 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은 오랜 사회주의국가로서 사회주의법체계 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은 대체로 1980 년대에 개방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인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급변이 아닌 특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그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 회주의체제의 중심인 공산당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체제전환 시에 격을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체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95) 중국이 사 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선도적으로 확립하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 오스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전환국가들, 특히 사회주 의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은 국내 개혁과 대외 개방이라는 개혁개방 정 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에서의 개혁개방은 법제도에 있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법체계 및 내용을 계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96) 이
95) 권오승 외 3 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18 면.
96) 이준표,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면.

에 관해서는 종전의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법을 국가통제의 수단으 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법치주의(Rule of Law)'에 대한 인식 수준 이 낮았으나, 시장경제의 기초를 법률개혁에 있다고 보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요구에 의하여 체제전환국가들이 법치주의를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즉, 체제전환국가들의 경우 시 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가들의 법체계는 관습법과 사회주의국가에 적합한 법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제도에 적합 한 정책과 제도를 대거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우대정책을 실 시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투자법제 및 기업법제의 선진화로 귀결되어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들의 법규범화 가 이루어지게 되었다.97) 또한, 서구의 기업법제에 근접한 제도들을 채택함으로써 회사 설립 및 존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이 상당부분 시 장경제체제 국가들과 유사하게 마련되었다. 특히, 동남아의 체제전환 국들은 한국, 중국 등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빠른 속도로 법제를 정 비해가고 있다. 최근, 몽골의 경우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활발 한 법제교류를 통하여 법제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시아 체제전환 국가를 중심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법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살 펴보고, 이를 통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97) ADB, "Enhanc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Technical Assistance Consultant's Reports), August, 2007, p. 6.

## 2. 법제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에는 주로 법률제정지원이나 법률가교육, 심포 지엄 개최 등으로 법제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98) 특히 민간차원 에서는 로펌중심의 법률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법인 율촌, 에 이펙스, 로고스와 지평지성은 베트남에 분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지에 투자를 원하는 한국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99) 법무 법인 JP(정평)도 2007년부터 해외 진출을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2007년에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 로펌인 JP Vietnam을, 2008년에 베트 남 하노이에 그 지사를 설립하였다. 법무법인 JP 의 호치민과 하노이 사무소에는 한국변호사 4 명, 베트남변호사 6 명, 미국 변호사 2 명 등을 포함한 20 여 명의 임직원이 상주하여 주로 부동산개발, 건설, 제조, SOC , 증권 및 금융 분야를 자문하고 있다. 베트남 JP 는 초기에는 베 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개인들이 베트남에 사업을 준비하고 운 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였고, 이후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한국 기업들과 협업 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3년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 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전자상거래법과 국채법의 제정을 지원하는 사 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와 지 평지성이 진출해 있다. ${ }^{100 \text { ) }}$

미얀마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미얀마 현지 법무법인 NK Legal, 회계컨설팅법인 Win Consulting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현지법인과
98) 김대인,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제 1 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82면.
99) 이재훈 - 배소현 - 주상희, 앞의 글, 22 면.
100) 이재훈 • 배소현 • 주상희, 앞의 글, 23 면.

협력해 미얀마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컨 설팅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01)
[표] 국내로펌 동남아시아 법인 현황(2012년 1월 현재) ${ }^{102)}$

| 지 역 |  | 로펌명 | 설립연도 | 인원(명) |
| :---: | :---: | :---: | :---: | :---: |
| 베트남 | 호치민 | 로고스 | 2007 | 한국 2, 베트남 3 |
|  |  | 에이펙스 | 2011 | 미국 1 |
|  |  | 율촌 | 2007 | 한국 1, 미국 1 |
|  |  | 정평 | 2007 | 한국 3 , 미국 1 , 호주 1 , 베트남 6 |
|  |  | 지평지성 | 2007 | 한국 1, 베트남 2 |
|  | 하노이 | 로고스 | 2006 | 한국 1, 베트남 1 |
|  |  | 율촌 | 2009 | 미국 1, 베트남 1 |
|  |  | 정평 | 2008 | 호치민 사무소의 지사 형태로 운영 |
|  |  | 지평지성 | 2008 | 한국 1, 베트남 2 |
| 캄보디아 프놈펜 |  | 에이펙스 | 2007 | 미국 1, 캄보디아 1 |
|  |  | 지평지성 | 2009 | 한국 1, 캄보디아 1 |
| 라오스 비엔티안 |  | 지평지성 | 2010 | 뉴질랜드 1 |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의 경우, 입법을 비롯한 운영 등 종합적인 법 제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 지원도 입법 지원 뿐 아
101) 이재훈 • 배소현 • 주상희, 앞의 글, 24 면.
102) 이재훈 - 배소현 • 주상희, 앞의 글, 25 면의 표를 인용 • 보완.

니라, 그러한 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뒤에서 후견하는 법률 전문 인력 파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103)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교류협력의 전제가 되는 해당 국가들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 및 기초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다른 서구 선진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차 원에서의 법제교류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로펌이나 기업 들이 자체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법제교류협력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에 대한 법제 연구는 물론이고 법령 번역조차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필자는 한국법제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아세안투자법령해설서 작업에 참여하면서 동남 아시아 개별국가들의 기초 법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 들 지역 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실한 연구실적을 다시 한 번 확 인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로펌이나 기업들이 연구 한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정부가 주도가 되어 1960년 초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법제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그 연구실적도 체계적이고 매우 방대하다. 일본 민간기관의 경우 에도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에 대한 법제지원 내지 법제교류협력 에 동참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 민간기관의 법제교류협력의 방안 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법제교류협력 기관인 국제 민상사법센터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103) 이재훈 • 배소현 • 주상희, 앞의 글, 25 면.

## 제 2 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항

## 1. 감정평가협회 104

(1) 협회의 해외 감정평가제도 전수•교류 현황

1) 베트남

가. 필요성
베트남은 급격한 개발•성장으로 인해 토지자원관리에 국가적 관심 이 높은 편이다. 1986 년 경제개혁 개방 조치 이후, 매년 $8 \%$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국토 전반에 걸 쳐 신도시•산업단지를 계획-개발 중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업추진 으로 인해 주거, 교통, 환경문제 등이 야기됨에 따라 토지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 03 년 「토지법」개정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 하여 왔다.
베트남 정부는 토지법 개정과정에서 한국의 보상•평가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개발사업단계 중에서도 토지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보상문제가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해외자본들이 지연 사업비 증가 및 추가재원조달로 인해 사업리스크 가 증가하여 중도 포기된 현지 공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부차원에서 토지 수용•보상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해외 여러 제도검토 중 문화적 유사성과 압축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평가제도를 벤치마킹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감정평가산업 확대로 인한 전문인력 증대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보상, 토지사용권 이전•담
104) 감정평가협회의 국제교류협력 담당자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 용임.

보, 임대료 결정 및 국유기업 지분 분산화 등 과정에서 감정평가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담보대출 등 평가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재산의 민간이양과 지분분산화 정 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감정평가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체계에 대한 한계를 들자면, 토지 보상 및 감정 평가 법제를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이 부족하고, 민간 감정평가사가 존 재하나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현재 정부 가격위원회(Government Pricing Committee; GPC) 의 지원 하에 감정평 가사 양성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과 제도와 법규 등을 도입하거나 개 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나. 베트남(VIETNAM)정부 및 유관기관 제도 교류•지원 사례

ㅇ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 대표단 방문
$\Rightarrow$ 협회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소개(2010.5)

- 베트남 자원환경부 차관, 자원환경부 토지관리총국 대표 10 인
- 한국감정평가협회 현황 및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소개
- 질의 응답 : 표준지와 개별지의 구분기준 등의 차이점, 보상 또는 매매 시의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적용 여부, 지가변동률 조사 관련 제반사항, 협회의 법정단체 여부, 감정평가시의 근거법률 및 제규정 등)

○ 베트남 토지정책 발전 기초조사 착수 $\Rightarrow$ 베트남 토지정책과 한국의 공시지가(2011.1)

- 베트남의 현행 토지이용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 한국의 공시지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베트남 토지이용정책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하여 베트남의 토지정책 및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
- 공적개발원조 $(\mathrm{ODA})$ 모델로써의 행정제도 베트남 정부 적용 여부 검토

ㅇ 베트남 정•관계 고위대표단 방문 (2012.4)

- 베트남 공산당중앙위원회, 국회, 재무부, 건설부, 기획투자부, 공안 부, 조국전선, 공보처, 토지관리처 대표 14 인
- 베트남토지법 개정절차 추진에 앞서 베트남 토지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 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이용계획, 수용 및 보상, 감정평가 등 한국의 토지행정 전반을 공유

○ 한•베간 감정평가업무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 (2012. 6)

- 협회장, 국토부 사무관 등 총 7인 베트남 방문 (베트남 재무부, 자 원환경부, 워크샵 참석, 토지 공시 및 용지보상 관련 현장 시찰, 국회의원 면담 등)
- 활동내용 : 한국 공시지가 산정 및 KLIS/감정평가정보시스템 소 개, 베트남 부동산가격산정 시스템 소개, 베트남 수용•보상제도 의 현황/문제 파악, 한국 과세가치 평가 및 보상평가 제도 소개, 한국형 보상평가제도의 베트남 접목 방안 논의, 용지보상 관련 현 지 국내 건설업체 면담, 토지법 개정 관련 국회의 역할 및 감정평 가 선진화 필요성 논의 등

○ 한•베간 감정평가업무 양해각서(MOU) 체결, 세미나 발표 등을 위 한 해외출장 (2012. 12)

- 협회장, 한국부동산연구원장등 총 6 인 베트남 방문 (베트남 자원 환경부 MOU 체결, 세미나 발표 등)
- 2014년 헌법, 토지법 등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법제도 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 요청, 코이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 회와 코이카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베트남 교육원들이 한국 감정평가제도에 대해 지원받기를 요청
- 또한 공시지가 기준 등 보상평가 사례 제시로 감정평가 관련 베트 남 공무원 연수 제의 받음

2) 몽 골

가. 몽골(MONGOLIA)정부 및 유관기관 제도 교류•지원

- 몽골 국립법과대학의 감정평가법 및 공시제도교육 지원 (2011.10)
- 국민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후원으로 국토계획에 관한 법 등 몽골 법조인력에 대한 한국의 토지 법 교 육 실시
-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MRTCUD) 차관 방문 (2011.3)
- 몽골정부의 수용보상법(안) 제정과 관련 한국의 손실보상 운용 실 태 파악
-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법무내무부, 토지 건설지적청, 울란바토르시 토지행정국 및 도시개발계획국 등 16 인

○ 한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실무기준 번역 지원 (2012.4)

-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실무기준 영문 번역 지원
$\Rightarrow$ 총칙,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품질관리,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감정평가서, 물건별 감정평가, 목적별 감정평가, 보상평가

ㅇ 아시아개발은행(ADB), 몽골 토지법 개정지원 관련 협회 방문 (2012.4)

- 동아시아 개발부 이사, 협회와 몽골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MRTCUD) 와의 협력의 실현방안 모색
- 몽골, 중국, 기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지원 확대방안
- 수용보상 및 토지관리정책 등의 주제로 아시아국가의 대화채널 구축 협의

ㅇ 한국-몽골 법제전문인 포럼 지원 - 한국과 몽골의 토지보상법제 (2012.4)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주관 "몽골 한국법 교육센터" 개소
- 협회 강병운 평가사, 한국의 보상평가와 공시지가제로라는 주제로 한몽 법제전문가포럼 국제학술대회 발표
- 한국-몽골 감정평가 업무협약(MOU) 체결 (2013.5)
- 급격한 개발로 인해 보상사업부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격은 몽 골에 한국 감정평가의 선진기법과 보상관련 성공사례 등을 전수 하고 양국의 감정평가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MOU 체결

○ 한국•몽골 법제전문가포럼 세미나 개최 - 몽골 감정평가의 현주소 및 한국의 보상사업 (2013.5)

- 몽골감정평가협회장, 몽골 국립대 교수 및 감정평가법인 대표 등 총 16 인 한국 방문
- 협회 김원보 전 협회회장, 강병운 평가사, 한국의 보상평가와 공 시지가제로라는 주제로 한몽 법제전문가포럼 국제학술대회 발표

ㅇ 한국•몽골 감정평가 업무협력을 위한 해외출장 (2013.7)

- 국회의원, 협회장, 교수 등 총 10 인 몽골 방문 (몽골감정평가협회, 몽골 재무부, 몽골국립법제원, 몽골국립대 법과대학 및 한국법센 터, 바양호셔 게르지구, 몽골상공회의소 세미나 개최 등)
- 활동내용 : 한•몽 MOU 체결에 따른 교류방안 및 몽골의 감정평 가법률 시행규칙 제정 관련 논의, 몽골 감정평가제도 관련 세부적 교류협력 내용 논의 및 몽골국립법제원의 인적•학문적 지원 의 사 표명, 몽골에서 추진 예정인 게르(전통가옥) 철거 및 보상사업 관련 현장 답사 등
- 감정평가 업무협력 세미나 : 김원보 前협회장(한국의 부동산가격공 시 및 감정평가제도), 강병운 감정평가사(한국의 감정평가 3 방식)


## 나. 현재 진행 중인 몽골과의 업무 협력

몽골감정평가협회 평가사 교육 건

- 일정 및 장소: ‘13 12. 10 (화) ~ 15 (일), 국민대학교
- 대상자 : 몽골 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 $10 \sim 15$ 인
- 교육시간: 총 8 강좌 (하루 2 강좌 90 분 강의)
- 교육내용 : 한국의 감정평가제도 및 공시지가제도, 광산 및 광 업권 평가 방법, 수용보상평가 방법 등
- 요청 사항 : • 교육 및 숙식 지출비용 협회 지원 요청 (항공료 및 기타비용은 몽골 현지 부담)
- 평가법인 2 회 견학 방문
- 한•몽 감정평가협회 공동법인 설립 건(2014.02)
- 현재 외국 자본으로 광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계기구 등의 자산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재무부 주도로 시행할 예정임
- 몽골정부는 경험이 없어 러시아 등 외국회사가 평가입찰에 참 여하여 시행하려고 함
- 한•몽 협회가 공동 설립한 회사면 재무부에 상당한 설득력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며, 양 협회의 교류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 이라고 봄
- 낙찰에 따른 평가물건은 매우 상당하다고 함

다. 협회의 기타 국가 교류•지원

ㅇ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및중개사학회 협회 방문 (2011. 3)

- 중국 부동산감정평가사 및 중개사학회 협회장 및 각 법인 대표 일행 40 인
- 한국의 부동산평가체계 및 협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 의 진행
- 이후 한국, 중국, 일본 3 국 공동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협력회의를 진행하는 한일중 감정평가 협력회의 양해각서 체결 (2013년 일본 에서 개최 예정)

ㅇ 네팔 토지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착수 (2011. 3)

- 네팔 토지 개혁 및 관리부는 토지 관리의 현대화, 지역 토지 세무 서 및 측량 사무소에서 관리된 데이터의 전산화 작업에 관심
- 숙련된 직원의 부족과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진행이 느렸으며, 한 국의 감정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서비스 중심의 정보 력을 갖춘 토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목표
- 협회는 네팔 내 토지자원 관리시스템 강화와 관련된 자료 조사 착수
- 인도네시아국유재산관리청 부청장 방문단 방한 (2011. 8)
- 인도네시아 국유재산관리청 부청장, 감정평가부, 기업평가부, 공적 감정평가, 투자관리규제청, 대사관 대표 9인
- 감정평가사법 입안을 위한 외국 선진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 적으로 방문
- 감정평가시스템, 감정평가사 보상 및 징계, 지속적인 전문성 발전, 감정평가정보시스템, 평가사 자격관리 및 부동산,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에 대해 논의
(2) 감정평가제도 해외전수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1) 정부 지원의 부족

해외의 경우(영국, 호주 등) 정부의 예산,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 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감정평가제도 및 전산프로그램 일체 등 자국 의 인프라를 개도국에 동일 적용하여 이후 평가교육•전산프로그램

수출 및 보수•평가입찰 등에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다. 한편, 감정평가제도 및 감정평가전산정보체계를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를 할 때 한국의 것이 우수하나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없 어 개도국의 감정평가시장 선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차이
개도국의 경우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아 공시지 가제도를 설명해도 그에 이해도가 떨어져 제도의 수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즉,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제도 자체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시지가제도의 개도국으로 수 출이 쉽지 않은 것이다.

다. 해외원조규모가 호의적인 국가를 우선사업대상자로 고려
개도국의 경우 해외원조 사업을 통하여 해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정평가제도 분야에서도 감정평가제도 선진국에서 개도국 에 해외원조 형태로 제도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감정평가제도 중 개도국에 가장 호의적이고 원 조규모가 큰 국가의 감정평가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 보다는 원조금액에 따라 해외 진출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라.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법적 • 제도적 차이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당 보상이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 다. 그러나,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개도국 및 후진국의 경우 개 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감정평가제도를 수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입장에

서는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토지관련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 므로 단기간에 걸쳐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마. 감정평가를 위한 지적제도의 정비 미흡
감정평가는 토지의 경계 등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지적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국가가의 경우 감정평가제도를 수출 하기 어려우며, 감정평가제도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지적제도와 함께 해외진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감정평가제도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요청 사항

가. 해외수출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현재 감정평가제도의 수출은 해외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해외원조사업은 KOICA의 프로그램의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됨 에 따라 감정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해외에 수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KOICA 프로그램의 경우 외교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 이나, 본 기관에서 감정평가제도의 해외 수출을 위한 자금은 국토교 통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사업비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 협조 및 감정평가제도 해외수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독립적인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감정평가제도 수출 총괄을 위한 정부 책임부서 필요

감정평가제도의 해외 수출을 민간이 총괄로 맡는 부분은 한계가 있 으므로, 현 제도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계획 및 총괄을 통해 민•관이 전방위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정부의 해외 감정평가 및 보상제도 진출을 위한 $\mathrm{R} \mathrm{\& D}$ 투자지원
감정평가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해외 전담인력 배치,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 시장 다변화 모색 등의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2. 아시아교류협회 ${ }^{105)}$
(1) 설립 목적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의 개발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동양과 서 양의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지구촌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아 시아 각국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협력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시아 청소년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리드해 나갈 글로벌인재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아시아 각국의 법제를 지원하고, 법제교류를 통해 법제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아시아 공동 체(Asia Union)를 실현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이다.
(2) 조직 및 재원

아시아교류협회는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써 2005년 4 월 7일에 설립되었다. 아시아교류협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 와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등으로 구 성되며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사무국 산하에는 5 개의 사업부서와 아
105) 아시아교류협회의 국제교류협력 담당자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내용임.

시아연구소, 경영지원팀을 각각 두고 있으며, 현재 본부에는 총 14 명 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각국과 국내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지부로는 라오스, 미얀마, 인도, 베트 남, 중국, 몽골, 캄보디아 등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지 부로는 경남 고성군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법제교류나 법제연구 등은 아시아연구소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국제세미나와 연구용역, 아시아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타 사업부서는 주로 국제개 발협력 사업과 청소년교류협력 사업, 문화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 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주로 국제협력팀에서 수행하고 있으 며, 기타 청소년교류협력은 대외교류팀과 교육사업팀, 문화교류협력 사업은 스포츠교류팀과 공연기획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교류협회의 재원은 크게 기부금과 사업비를 구성되어 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개인후원과 기업후원으로 구분되고, 기부금의 대 부분은 기업후원이다. 사업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 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민간의 경우에는 대학의 해 외봉사단,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 교류협회의 연간 총 예산은 약 30 억원이며, 총 예산 중 기부금과 사 업비의 비중은 각각 $50 \%$ 정도이다.
(3) 주요 사업

1) 법제교류협력사업
(1) 한중미래연구소 설립

아시아교류협회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 문화, 학문 등의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05년에 중국 산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동대학교 위해컴퍼스 내에 한중미래연구소를 설립하였다. 한

중미래연구소의 사무실과 집기 등은 중국 산동대학교가 지원하고, 운 영비는 아시아교류협회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소장 은 한국 측에서 맡고 연구인력은 주로 산동대학교의 교직원 또는 대 학원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활동은 한중의 교류협력을 위한 연구용 역, 국제세미나, 특강 등 인적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아시아연구소 설립 및 운영

아시아교류협회는 중국을 넘어 아시아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현재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2 명의 연구인력이 활동하고 있으 며, 주요사업은 조사와 연구용역, 국제세미나, 인적교류사업 등을 진 행하고 있다. 주요실적으로는 ‘동북아 물류현황 및 전망’, ‘아세안저작 권침해실태조사'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국제세미나는 ‘동북 아물류세미나', ‘동북아건설포럼', 'FTA국제세미나-방송통신 FTA의 과 제와 전망’, ‘중국동포의 인권실태 및 보호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세 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3) 아시아 법률전문가 초청 및 인적교류협력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법제교류를 위하여 아시아의 법률전문가 초청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아시아의 공무 원 초청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시아 현지에서 각종 특강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아시아법제포 럼에는 라오스 법무부차관 일행을 초청하여 한국과 라오스의 법제교 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로 라오스 내에 한아세안법제교류센터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아시아교류협회는 이러한 법률전문가 이외에도 유학자의 중국 곡부 시 방문, 농민단체 등의 아시아 농업현장 방문, 대한민국 기업인의 아

시아 기업현장 방문, 고위공무원 등의 아시아 방문 사업 등 대한민국 과 아시아의 인적교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지방정부 또는 대학 간의 교류협력 지원

아시아교류협회는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 국의 지방정부 또는 대학 간의 교류협력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례로 전라 북도와 중국 산동성과 우호협력협정을 맺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중 국 산동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 간의 교류협정을 맺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의 실질적인 인적 교류와 많은 교류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2) 기타 교류협력사업

아시아교류협회가 추진하는 기타 교류협력사업은 크게 수직적 교류 사업과 수평적 교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교류사업은 불 평등의 관점에서 국제개발과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시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봉사활동과 현지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반면, 수평적 교류사업은 평 등의 관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여 상호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인이 서로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을 말 한다.

아시아교류협회의 수직적 교류사업으로는 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아시아 개도국의 개발협력사업, 아시아 개도국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아시아 청소년의 글로벌인재육성사업 등이 있으며, 수평적 교류사업 으로는 아시아청년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스포츠•문화교류 사업 등이 있다.
(1) 수직적 교류사업
(i)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정부나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해외봉사단 사 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거나 자체적인 해외봉사단 사업을 실행하 고 있다. 아시아교류협회의 해외봉사단 사업은 아시아교류협회의 글 로벌인재양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로 교육봉사활동으 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해외봉사단 사업의 문제점 을 극복하고자, 해외봉사단원으로 참가한 봉사단원으로 ‘아카시아봉사 단'을 결성하여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현재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봉사단 파 견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square$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아시아교류협회가 공 동으로 주관하고 있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만14세~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국제이해 증진 및 세계사회시 민으로서 역량강화,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의 교류 다양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신뢰증진, 국내외 청소년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꿈사’라고 하는 봉사단 파견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09. 012009 동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캄보디아(16명) 2009. 072009 하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캄보디아 (16명),라오스(16명)
> 2010. 012010 동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캄보디아 (16명),라오스(16명)
> 2010. 072010 하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캄보디아 (16명),라오스(16명),베트남(16명)
> 2011. 012011 동계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캄보디아 (16명),라오스(16명), 베트남(16명)
2012. 082012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라오스(18명)
2013. 072013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캄보디아(18명) 2014. 072014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라오스(18명)
$\square$ 한국대학생 중기봉사단

단기해외봉사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하 기 위해 중기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파견 되며, 현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글, 미술, IT교육 등 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봉사단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9. 072009 한국대학생 중기봉사단 파견-캄보디아(3명)
2010. 102010 한국대학생 중기봉사단 파견-캄보디아(4명)
2013. 042013 아시아교류협회 중기봉사단 파견-인도(2명)
$\square$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최하고 아시아교류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대학생 봉사단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노력봉 사활동, 한국기업체탐방, 해외 동문과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어문계열 학과가 있는 외대의 특성을 살려 매 프로그램 진행시 파견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봉사단원을 일정 인원 선정하여 통역 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부터 진행된 봉사파견실적은 다 음과 같다.
2011. 072011 하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인도네시아(21명)
2011. 122011 동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인도(20명), 라오스(20명)
2012. 072012 하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인도네시아(21명), 라오스(21명)
2013. 082013 하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캄보디아(21명)
2014. 012013 동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인도네시아(20명)
2014. 082014 하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캄보디아(23명), 라 오스(20명)

연성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다. 연성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1월의 2013 동계 연성대학교 해외자원봉사단은 캄보디아로 파견된 17명으로 구성되었다.
$\square$ 아시아 친한친구 봉사단

아시아교류협회 자체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지역 청소년들이 다함께 봉사활동, 문화교류활동, 주제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고 차 이점을 발견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 가는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고 있다.
2011. 08 아시아 친한친구 해외봉사단-라오스(15명)
2012. 02 아시아 친한친구 해외봉사단-라오스(16명)
$\square$ 미래코 한-몽 청소년 녹색환경봉사단

탄광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의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 단에서 주최하고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단프로그램이다. 몽골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녹색환경봉사단을 파견하여 묘목심기, 지 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쓰레기 줍기, 몽골의 광해관리 관련 기관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과 몽골 청소년들이 함께 활동함으로써 전 일정 동안 자연스러운 문화교류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아 시아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 08 미래코 한-몽 청소년 녹색환경봉사단-몽골 $(20$ 명 $)$
2012. 07 미래코 한-몽 청소년 녹색환경봉사단-몽골(9명)
2014. 07 미래코 한-몽 청소년 녹색환경봉사단-몽골(7명)
$\square$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

경기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아시아교 류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단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이며,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국 에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교실 안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동안의 파견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0. 072010 하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베트남(20명)
2011. 012010 동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베트남(17명), 라오스(14명)
2011. 072011 하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베트남(20명), 라오스(20명)
2012. 012011 동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베트남(19명), 캄보디아(20명)
2012. 082012 하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베트남(20명)
2013. 012012 동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베트남(20명), 캄보디아(20명)
2013. 072013 하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라오스(20명)
2014. 012013 동계 경기학생 해외자원봉사단-라오스(20명)국내봉사단 ‘아카시아(AKASIA ; Association of Korea \& ASIA) 운영’

아시아교류협회의 해외봉사단과 아시아청년포럼 등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자원봉사활동의 한계와 일회적인 행사의 한계를 극복 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인 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해가기 위하여 조 직된 단체이다. 현재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후암동에 위치한 장애우 생 활시설 '가브리엘의 집' 등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달 5 천원씩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해외봉사자들과 연계된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과 국내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ii) 국제개발협력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의 국가가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이겨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나 아동이 질병이나 기아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 는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square$ 사업대상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in 라오스)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연간 일모작 중심의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다. 또한, 곡물작물 중심의 재배로 인해 채산성이 극히 낮으며, 낮은 채산성으로 인 한 자급자족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예방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생산성마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규채소작물의 도입과 신규재배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위해 아시아교류협회에서는 라오스의 사업대상지역에 시범농장을 운영 하여 농가소득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영농 리더 를 양성하여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형성하는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라오스 시범농장단지에는 현재 비닐하우스 8 개동이 완공되어 채 소가 재배되고 있으며, 라오스 농민을 대상으로 선진농법교육과 태국농업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square$ " 6 세 미만 아동과 출산 전•후 임산부 건강지원 프로젝트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Project)"

인도의 사회 최하층에 속하는 멜가트 부족 사람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및 비위생적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에 영양지원이 시급한 6세미만 아동 및 출산 전•후 임산부 여성에게 영양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영양지원이 시급한 6세 미만 아동 및 출산 전• 후 임산부 및 60 세 이상 노약자 및 한부모 가정 아이들 총 550 명을 대상 으로 매년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iii)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개도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역량 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나 유치원 설립, 학교시설 개보수, 학교 교직원 역량강화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교류협회 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현황은 아래 와 같다.


#### Abstract

라오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력을 양성할 학교가 절 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도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인구 10 만명 당 고등교육인구는 845 명에 지나지 않아 국가의 기간사 업을 이끌 고등교육인구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수도 임에 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교류협회에서는 라오스 학생을 대 상으로 한 교육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 라오스 통망마을, 농미양마을, 학사이마을 등에서 초등학교를 신축하 였거나 학교시설 개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square$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개도국의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 한민국의 교육방법 등을 전수하고, 특히 컴퓨터 교육이나 예체능 교육 등 을 실시하여 아시아 개도국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해 오 고 있다.
(iv)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각국 청소년의 글로벌역량을 키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글로벌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 재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인재육성사업은 다음과 같다.
$\square$ 희망청소년중국탐방단

국내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국탐방을 통해 자신감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기준은 근로 청소년, 저소득층,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청소년 중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들은 약 일주일간의 중국탐방활동 전액(항공료, 현지체제비 등)이 지원된다. 현재 희망청소년 중국탐방지역 은 중국 산동성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유교의 발상 지이며,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상업, 문화, 교육 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탐방기간 동안 중국 교육문화 견학, 유적지 탐방,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 이 중 중국 산동대학교에 진 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일정한 선발기준을 거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2009년 8월 고성군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9박10일, 31명)
2010년 5월 통영시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6박7일, 20명)
2010년 11월 고성군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7박8일, 25 명)
2011년 5월 고성군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7박8일, 25 명)
2011년 10월 통영시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6박7일, 21명)
2012년 9월 고성군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7박8일, 23명)
2012년 10월 통영시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7박8일, 21명)
2013년 9월 고성군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7박8일, 23명)
2013년 10월 통영시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7박8일, 19명)
2014년 7월 고성군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6박7일, 23명)
2014년 10월 통영시 희망청소년 중국탐방단 (6박7일, 22명) 예정

## Global Project Go! China (GPGC)

3 주 동안의 중국 현지생활을 통하여 우수한 강사진과의 중국어 수업, 현지중국인과의 팀별활동, 문화탐방, 기업체방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경 험하고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교육 리 더십 프로그램이다. 현재 중국의 명문대학교인 산동대학교(위해캠퍼스)에 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산동대학교는 중국 10 위권의 명문대학교이며, 위해캠퍼스는 산동대학교의 중요한 거점이자 한국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 어져, 현재 500 여 명의 한국유학생이 학업 중이다. 오전에는 전문중국어 강의, 오후에는 팀별수업, 문화체험(태극권, 경극, 전통음식 만들기 등), 생 활체험(시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시내방문 등)이 진행된다. 또한 주말시간 에도 유적지 견학, 기업체 탐방, 봉사 활동 등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동•하계 방학 2회 진행 되며, 현재 7회까지 진행되었다.
$\square$ 중국 명문대학 장학지원

Global Project Go! China(GPGC) 프로그램 참가자 중, 중국에 대해 비전 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나 집안에 여유가 많지 않은 학생을 선발 하여 중국 명문대학교인 산동대학교 입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장학생으 로 선정 시 4년간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 받는다. 산동대학교 장학지원 은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2012년 제 1 기 장학생 고성중앙고등학교 마은비 (산동대학교 중어중문학 과 입학)

2013년 제2기 장학생 경남항공고등학교 최수민 (산동대학교 법학과 입학)
(2) 수평적 교류사업
(i) 아시아청소년네트워크 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청소년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 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미래를 리드해 나 갈 글로벌인재 육성을 그 목적으로 많은 아시아청소년네트워크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청 소년네트워크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square$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ASEAN-Korea Frontier Forum ; AKFF)

한국 정부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1989년 관계를 수립한 이후 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한•아세안 양측이 합의하는 각종 협 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아시아교류협회는 외교부의 후 원으로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일환인 'ASEAN-Korea Frontier Forum(AKFF)' 를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 포럼별 약 $50 \sim 100$ 여 명이 참가하고 있 다. 본 사업은 한-아세안 각 국의 젊은 리더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現 크로 스커팅 이슈에 대한 논의 및 한-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 축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별/국별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한-아세안 모의정상회의를 가짐으로써 국제매너 및 국제회의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오는 12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11 월 말에 '제 5 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 럼’이 관광업, 청년 직업 창출, 재난 관리를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 이다.
‘제 1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2010.08.05 - 2010.08.12), 63명 참가
‘제 2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2011.09.22 - 2011.09.29), 75명 참가
‘제 3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2013.01.31 - 2013.02.07), 91명 참가
‘제 4회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2014.02.14 - 2014.02.21), 95명 참가
$\square$ 동북아 비전 포럼(Northeast Asia Youth Forum ; NAYF)

동북아는 과거부터 위치적, 문화적 근접의 이유로 정략적인 관계를 유 지해 왔으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 존도가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한•중•일 청소년 교류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간외교의 한 분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동북아시아 청소년 교류 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 그리 고 학계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교류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동북아시아 각 국과의 문화•역사를 공유하며, 중요 이슈를 매년 주제로 설정하여 포 럼을 통해 미래의 동북아 차세대 리더들이 동북아시아 통합으로의 협력방 안을 모색하는 장 마련하고 있다. 본 포럼은 동북아 지역 대학(원)생들의 민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를 바탕으로 청소년 네트워크로의 발전 및 유 지를 지향을 목적으로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구축하 는 기반 마련하고 있다.

제 1회 동북아 청소년 비전 포럼 (2010.08.10 - 2010.08.19), 180명 참가 제 2회 동북아 청소년 비전 포럼 (2011.08.12 - 2011.08.21), 180명 참가 제 3회 동북아 청소년 비전 포럼 (2012.08.07 - 2012.08.14), 122명 참가 제 4회 동북아 청소년 비전 포럼 (2013.08.19 - 2013.08.26), 97명 참가 제 5회 동북아 청소년 비전 포럼 (2014.08.01 - 2014.08.08), 67명 참가

Vision Korea! 아시아 유학생 정책제안 프로젝트

한국의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들에 있어서의 교육 수요 확 대에 따라 한국의 발전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요구에 대하여, 정부부처와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외국인 대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에 아시아교류협회는 유학생 대상 정책 개발 차원에서 모범적인 프로그램 을 형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 는 한국 대학(원)생및 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적 네트의 확립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

며, 본 사업 이후에도 대한민국 학생들은 아시아 유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여 한국 유학생활을 잘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아시아 유학 생과 대한민국 대학생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발전시켜 궁극적으 로는 한국 내 유학생들의 자질을 높이고, 한국의 이미지를 고취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유학생들끼의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타지에서 서로 힘들어하 는 유학생들끼리 쉽게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싸이트를 만들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좋은 이미지 를 가지고 돌아가 고국의 다른 아시아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 크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제 1회 Vision Korea (2011.12.18 - 2011.12.22) ,90명 참가
제 2회 VIsion Korea (2012.08.21 - 2012.08.26), 100명 참가
$\square$ 한일중 청년모의정상회의(Trilateral Youth Summi ; (TYS)

[^13]$\square$ 한-중앙아시아청년포럼(Korea-Central Asia Youth Forum)
> ‘한-중앙아시아청년포럼‘은 아시아교류협회가 주최하고 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청소년포럼프로그램이다. 중 앙아시아는 고려인이주지역으로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 개국방문으로 앞으로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한중앙아시아청년포럼은 중 앙아시아 5 개국의 학생과 대한민국 학생이 각각 참석하여 에너지, 환경, 문화 등 총 3 개 분야에서의 전문가 강연을 듣고 분과별 토론 및 국별 토 론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폐막식 이후에는 대한민국 문화체험과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제 1회 한-중앙아시아청년포럼(2014.11.02 - 2014.11.09), 70명 참가

## $\square$ 아시아유스포럼(Asia Youth Forum)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의 국가별, 권역별 청소년네트워크구축사업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청소년네트워크구축사업인 아시아유스포럼(Asia Youth Forum)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을 계기로 아시아의 차세 대 리더들이 모여 향후 아시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quare$ 아시아청소년의 외교역량강화를 위한 외교포럼

> 글로벌 시대의 아시아 청소년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 의 일환으로 아시아교류협회에서는 아시아청소년 외교포럼을 개최하고 있 다. 이를 통해 아시아의 미래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이해함으 로서 아시아의 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교육프로 그램이다.
(ii) 스포츠교류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스포츠를 통한 아시아 청소년 교류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스포츠는 단순하지만 교류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아시아교류협회에서는 다양한 스포츠교류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교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교 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square$ 다문화유소년축구단 (레인보우 사커스쿨 운영’

아시아교류협회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단인 ‘레인 보우 사커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축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꿈을 키 우고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square$ 글로벌유소년축구대회

> 세계 공통의 스포츠인 축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유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다국적 유소년들이 서 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글로벌 유소년들이 몸과 마음으로 서로 를 이해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축구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또래와 문화 .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 및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국내 유소 년 팀 및 다문화 팀, 국제학교 팀, 해외(일본, 중국 등)초청 팀 등이 참가 하고 있으며, 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활동도 함께 진행되며, 개최 지역의 관광지와 문화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아시아교 류협회의 글로벌유소년축구대회 실적은 다음과 같다.
> $2011 ㄴ ㅕ ㄴ ~ ㅈ ㅔ 1 ㅎ ㅚ ~ ㄱ ㅡ ㄹ ㄹ ㅗ ㅂ ㅓ ㄹ ~ ㅇ ㅠ ㅅ ㅗ ㄴ ㅕ ㄴ ~ ㅊ ㅣ ㄴ ㅎ ㅏ ㄴ ㅊ ㅣ ㄴ ㄱ ㅜ ~ ㅊ ㅜ ㄱ ㄱ ㅜ ㄷ ㅐ ㅎ ㅚ ~$
> 2012년 제2회 글로벌 유소년 친한친구 축구대회
> $2013 ㄴ ㅕ ㄴ ~ ㅈ ㅔ 3 ㅎ ㅚ ~ ㄱ ㅡ ㄹ ㄹ ㅗ ㅂ ㅓ ㄹ ~ ㅇ ㅠ ㅅ ㅗ ㄴ ㅕ ㄴ ~ ㅊ ㅣ ㄴ ㅎ ㅏ ㄴ ㅊ ㅣ ㄴ ㄱ ㅜ ~ ㅊ ㅜ ㄱ ㄱ ㅜ ㄷ ㅐ ㅎ ㅚ ~$ $2014 ㄴ ㅕ ㄴ ~ ㅈ ㅔ 4 ㅎ ㅚ ~ ㄱ ㅡ ㄹ ㄹ ㅗ ㅂ ㅓ ㄹ ~ ㅇ ㅠ ㅅ ㅗ ㄴ ㅕ ㄴ ~ ㅊ ㅣ ㄴ ㅎ ㅏ ㄴ ㅊ ㅣ ㄴ ㄱ ㅜ ~ ㅊ ㅜ ㄱ ㄱ ㅜ ㄷ ㅐ ㅎ ㅚ ~$
$\square$ 글로벌대학생축구대회 및 이주노동자축구대회

```
아시아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글로벌축구대회로써, 다양한 국가와 인종이 함께 축구라는 교류를 통해 글로벌환경을 이해하고 상호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서로 이해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 시아교류협회의 글로벌대학생축구대회와 이주노동자축구대회 실적은 다음 과 같다.
2012년 제1회 글로벌대학생축구대회
2012년 제1회 전국고용노동부장관배 이주노동자축구대회
```

(4) 아시아유소년축구교류 및 지도자 연수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각국의 유소년 축구교류와 함께 유소년축 구지도자 연수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iii) 문화교류사업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각국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교류나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교류협회에 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교류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square$ 아시아퓨전밴드 - MOA(Music of Asia) 밴드 운영

아시아교류협회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공연자를 모아, 아시아퓨전밴드인 '모아 밴드[ MOA BAND(Music of Asia Band)]'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아시아를 하나를 만들고 서로 융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square$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 한마음음악회 등

아시아교류협회는 음악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소외계층의 글로 벌역량을 키누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경남 통영시의 범죄예방위 원회와 함께 비행모범청소년의 아시아해외봉사단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 해 매년 연말 '한마음음악회’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square$ 한-라오스 및 한-중앙아시아문화교류의 밤

대한민국의 K-POP을 아시아 각국에 홍보하고,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국과의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라오스와 정기적인 교류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 150 주년을 기념하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계기로 2014년 한-중앙아 시아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 3. 아시아법연구소

우리나라에서 법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것으 로 민간의 법제협력기관으로 특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시 아법연구소를 들 수 있다.106)
(1)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성

아시아법연구소(Center for Asian Law)는 2004년 6월 법학교수, 변호 사 등이 뜻을 모아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한국이 선진화시대를 맞이
106) 이 부분의 내용은 법무법인 안세의 이성환 대표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내용 중 상당부분은 2012년 수행한 법제처 용역과제 ‘법제수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음.

하여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개정하여 나가면서 밖으로는 이웃나라 법률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 }^{107)}$ 아시아법연구소의 설립 취지는 아시아의 법과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류와 협력의 증진 등을 통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공존공영과 유대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108)

아시아법 연구소는 (1) 아시아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조사와 비교연구, (2) 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3) 국제적인 교류의 활성화에 따르는 법률서비스의 지원, (4) 법 률가와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대한 지원과 협력, (5) 법률시장의 개방 에 대비한 법률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진, (6) 장기적으로 아시 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사업으 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9)

조직은 이사장과 연구소 소장과 이사들이 있으나 전담 연구원들이 나 사무직원들의 수자는 극히 미미하고 독립적인 사무실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기부금을 모 금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되어 기업이나 임원들로부터 부정기적으 로 일정 후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 (2) 활동현황

아시아법연구소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인 방법으로연구 를 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학술대회 개최나 참가의 방법으로 교류협 력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법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2005년 11월과 2011년에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한국
107) 아시아법연구소 홈페이지(http://www.lawasia.org(검색일: 2014.11.28)) 참조.
108) 이성환 외,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2012.7.31, 134면(http://www.prism.go.kr)(검 색일: 2014.11.28).
109) 이성환 외, 앞의 글, 134 면.

- 베트남 법제개혁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베트남법제에 대하여 심 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에서 한국 - 캄보디아 국제 컨퍼런스를, 2009년 7월에는 캄보디아 씨하누크빌에서 씨하누크빌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아 시아법연구소는 2008년, 2009년에 법학전공 유학생을 초청하는 행사 를 개최하여 유학생과 법조인간 교류도 주선하였다. 2013년도 활동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4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부 교수와 변호사들이 모여 몽골의 외국인투자법과 환경법, 말레이 시아의 경쟁법 등에 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법세미나 는 2012년까지만 46차례 개최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법제처, LG U+의 용역을 수행하는 등 민간기구로서는 일반 영리사업체와 유사한 수준 의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3) 문제점

아시아법연구소는 재원을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기업과 정부 용역 등에 의하여 주로 조달하고 있다. 학술대회 행사비용은 한 국국제협력단(KOIKA)이나 민간기업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용역을 수주하여 충당하였다.

하지만 최근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그 활동도 상당히 위축 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011년 예산은 수입이 약2290만원, 지출 이2081만원인데, 수입 중 679만원은 회비이고 민간용역수입이 1450 만 원이었으며, 지출은 사무직 인건비가 1184만원, 사무실 임대료가 674 만원이고 활동비 분야 예산은 약 $3 \%$ 정도 이었다. 2012 년 예산은 수입 이 2622만원, 지출이 2019만원인데, 수입은 주로 회비와 집행부 후원 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행사비와 홈페이지 유지비가 약 $2 \%$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이다. 2013년은 수

입이 1024 만원이고 지출은 800 만원 정도인데 용역수입이나 후원비 등 이 없고 사무실 직원비용도 지출되지 않아 정규 근무자가 없는 것으 로 추측된다. 홈페이지도 2013년부터 그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있다. 결국 재정난으로 인하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2014년도에 와서도 아시아각국의 법제에 대한 세미나 등은 꾸준 히 개최하여 여전히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법제교류협력기관인 아시아법연구 소가 격고 있는 대표적 문제점은 재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나 기업 등의 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순수하게 회원의 회비와 임원진 등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시아법연구소가 활동하면서 겪은 또 하나의 어려움은 언 어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110) 아시아국가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언어가 없고 영어도 각국 문화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활용능력이 뛰어 나지 않으므로 법제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상호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 4. 한국협력센터(수파누봉대학)111)

(1) 현 황

1) 한국-라오스 교류 현황

## ○한•라오스 외교

1974년 수교하였으나, 1975년 라오스의 공산화로 외교관계 단절. 1995년 재수교하였으며, 한-ASEAN, 한-메콩협력 등으로 우호적 관계

[^14]유지, 라오스는 2009년 이래 한국의 개발원조에 있어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되어 유•무상 원조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라오스 무역 및 투자
한국과 라오스 무역은 적은 규모이지만 2011년 1억5천만 달러, 2012 년 1억 7천만 달러, 2013년 2억 달러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2 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라오스 수출은 1 억 9천만 달러, 대 라오스 수 입은 1,200 만 달러로 압도적인 흑자를 거두고 있음,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기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목재 등이다.

○한•라오스 주요 협정
1996. 5 투자보장 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
2004. 4 한-라오스 경제공동위 설립 시행약정
2004. 11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 협정(2006.2 발효)
2008. 6 라오스,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단기비자(15일) 일방 면제조치
2009. 6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09. 6 한-라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2010. 4 한-라 항공협정(인천~비엔티안 직항 운영)
2) 한국-라오스 민간협력 현황
$\bigcirc$ 민간 교류 확산
한국-라오스 정부간 협력이나 경제교류의 확산에 따라 민간교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라오스에 대한 관광수요와 한국 대학 및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한 단기 활동이 급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라오스 민간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〇 주요 민간 교류협력 기관
현재 라오스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라오스 수파누봉 (Souphanouvong)대학의 한국협력센터(KCC: Korea Cooperation Center) 와 한국에 소재한 한국-라오스 친선협회(KLFA: Korea-Laos Friendship Association)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한국협력센터(수파누봉대학)
수파누봉 대학교의 경우 2007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 의해 신캠퍼스로 이전하여 한국과 특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협력센터는 2008년 1 월에 출범하였으며 주요 활동으로 한국 대학과 수파누봉 대학의 교류 프로그램, 한국학(Korean Studies) 프로젝트, 한국-라오스 협력 관련 교 육, 개발원조(ODA), 문화에 대한 다양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 음. 2014년 9월 현재 소장(한국인) 1명, 연구원(라오스인) 2 명, 연구보 조원(한국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재원조달

1) 한국협력센터(수파누봉대학)

한국협력센터는 순수 민간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한국-라오스 협 력활동과 과제 수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왔다.

○한국-라오스 협력 활동
한국협력센터는 한국의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의 다양한 협 력을 수행해 왔으며, 센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요 활동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한국협력센터 활동 현황

| 협력기관 | 일 시(기간) | 분 야 | 주요내용 |
| :---: | :---: | :---: | :---: |
| 우송 대학교 | 2008.3.1~6.30 | 석사과정생 파견 | 수파누봉대 교수(3 명) 우송대 석사과 정 수료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2008.7.24~8.19 | 봉사단 파견 | 한국어, IT 교육 실시 |
| 한국동남아연구소 | 2009.2.3~7 | Korea Forum <br> (태국 방콕) | 라오스 내 한국학 현황 <br> (발표: 이요한 교수) |
| 한국교육개발원 | 2009.7.8~10 | 한국교육협력세 미나 | 한-라오스 교육협력 방안 |
|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 2009.12.21 | 주라오스 한국 대사초청특강 (수 파누 봉 대학 교) | 한국-라오스 및 ASEAN 관계 <br> (발표: 박재현 대사) |
| 주라오스 한국대사관 | 2010.11.24 | 한-라오스 수교 15 주년 기념세미 나 | 라오스 내 한류 및 라오스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br> (발표: 이요한 교수) |
| 아시아재단(한국) | 2012.5.22 | $\begin{aligned} & \text { 전문가 초빙 특 } \\ & \text { 강 } \end{aligned}$ | 라오스 내 수자원 및 인적자원 개발 현황 (발표: 이요한 교수) |
| 한국학진흥사업단 | 2013.12.13 | 성과발표회 발표 | 라오스의 한국학 현 황 및 한국학 진흥 을 위한 전략 (발표: 이요한 교수) |


| 협력기관 | 일시(기간) | 분 야 | 주요내용 |
| :---: | :--- | :--- | :--- |
| 한국동남아연구소 | 2014.8 .8 | Korea Forum | 한국-라오스 원조와 <br> 경제개발 비교 연구 <br> (발표: 이요한 교수) |

자료 : 수파누봉대학교 이요한 교수 작성 내용.

○ 한국협력센터 과제 수행 현황
한국협력센터는 소장 및 공동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술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2014년 9월 현재)까지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과 제를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2] 한국협력센터 과제 수행 현황

| 협력기관 | 일시(기간) | 분 야 | 비고 |
| :--- | :--- | :--- | :--- |
| 한국동남아학회 | $2008.1 \sim 12$ | 한국의 대 라오스 교육원조 정 <br> 책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  |
| (주)시너지비전 $2008.1 \sim 6$ 수파누봉대 후속 운영 지원 <br> 국회 농업특위 $2008.9 \sim 10$ 한국•라오스 농업협력모델 개발 |  |  |  |
| 우송대학교 | $2008.9 \sim 12$ | 수파누봉대 수요조사 발굴 과제 |  |

제 4 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 방안

| 협력기관 | 일시(기간) | 분 야 | 비고 |
| :---: | :--- | :--- | :--- |
|  |  | for Korean Studies Research Training: <br> Toward Localization in Laos |  |
| 한국문화교류센터 | $2012.6 \sim 11$ | 라오스 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  |

자료 : 수파누봉대학교 이요한 교수 작성.

○ 한국협력센터 재원조달 평가 - 긍정적 측면
한국 내 라오스에 대한 관심과 학문적 수요의 증가로 한국협력센터 의 설립 이래 [표 1, 표 2]와 같이 한국의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와 협

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재원으로 한국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했던 구성원의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국협력센터 재원조달 평가 - 한계점
한국협력센터의 재원이 단기과제(3개월~3년 이하)에 의존함으로 인해 업무의 과중함과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한국-라오스 친선협회

○협회 연혁과 목적

한국-라오스 친선협회는 2004년 설립하였으며 양 국가 간의 문화, 학술 및 학문, 건설, 자원 개발, 관광 등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재원 조달

한국 기업의 대 라오스 진출 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후원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라오스 친 선협회의 경우 친목 및 사교의 성격이 강하여 한국-라오스 관계를 주 도하기 위한 인력과 자산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라 오스 현지에 있는 한인회도 유사한 상황이다.
$\bigcirc$ 기관의 영세성

이상과 같이 한국과 라오스 협력을 담당하는 민간교류 기관은 개인 또는 소수의 그룹에 의해 운영,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 기관의 안정적 재원조달이 어렵고, 수행 역량 또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특 히 라오스 주도의 한국-라오스 국제 협력 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요원 한 상황이다.
(3) 추진전략

1) 민관 협력

〇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

민간부문은 전문성을 보유하였으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 고, 공공 기관의 경우 현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 이고 역량 있는 한국-라오스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 문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 한국의 강점과 라오스의 취약분야의 선택

라오스는 최빈국의 하나로 인프라, 교육, 보건 등 취약분야가 많고, 이에 선진국의 원조에 의존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 ICT, 개발 인프라 분야에 관련한 사업 에 집중과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다른 동남아 개 도국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사례연구: 라오스 국립대의 Lao-Japan HRD 연구소

○ 주요 연혁과 설립 목적

라오스 국립대(NUOL: National University of Laos)의 산하에 2001 년 Lao-Japan HRD 센터가 설립되었고, 2010년 Lao-Japan HRD 연구 소(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로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본 연구소는 라오스의 공공행정과 기업경영을 위한 고급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일본과 라오스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원 구성 및 주요 활동
연구소의 총원은 41명(2010년 기준)으로 아래 2명(라오스 1 인, 일본 인 1 인)의 공동 연구소장이 4 명의 부소장이 있으며, [표 3]과 같이 구 성되어 있다.
[표 3] Lao-Japan HRD 연구소 구성

| 총 원 |  | 정규직 |  | 계약직 |  |
| :---: | :---: | :---: | :---: | :---: | :---: |
| 남 성 | 여 성 | 남 성 | 여 성 | 남 성 | 여 성 |
| 20 | 21 | 5 | 11 | 15 | 11 |

자료: Lao-Japan 보고서(2010)
주요 활동으로는 라오스 국립대의 경영학대학원(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생들에게 영어, 일본어, 컴퓨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오스와 일본의 교류협 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학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재원조달

Lao-Japan HRD 연구소의 경우 일본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내지 7년 단위 의 목표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 력이 가능한 상황이다.
3) 한국-라오스 협력기관 구축

○ 한국-라오스 상설 협력기관의 필요성
Lao-Japan HRD 연구소는 라오스 엘리트 그룹에 대한 고급인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일본에 대한 우호적 인사를 배출하고 있는 반

제 4 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 방안

면, 한국은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교류협력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설적인 한국-라오스 협력기관의 설립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양국간의 장기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교류협력을 위한 효율성을 위한 제안
한국은 현재 라오스의 투자, 교역, 원조, 관광, 교육 등에 있어 일본 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지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발적인 현 재의 활동들을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양국 간의 교 류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하여 양 국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라오스협력센터(가칭)을 설립할 것 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림 1] 한국-라오스협력센터(가칭)지원체계와 조직도


자료: 수파누봉대학교 이요한 교수 작성(2012년 기준)

위의 [그림 1]과 같이 한국-라오스협력센터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 호협력이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상설 기구의 운영은 양국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 기관별 공공부문의 역할을 공유하고 분담하여 중복적 프로그램의 비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기타 고려사항

1) 개도국의 행정 지연에 대한 고려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개도국의 경우 비자, 기관 등록, 양해각서 (MOU) 체결 등 행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민간교류를 비롯한 협력 사업은 충분한 시한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기존의 현지 네트워크 활용

동남아 개도국에서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동남아 각 국 전문가 그룹이나 현지 한국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도국에 사무소가 있는 KOICA, KOTRA의 협조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법무법인화우의 중앙아시아 법제 민간교류 협력112)
(1) 한-우즈베키스탄 협력관계 현황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1992년 투자협력보장협정, 과학기술협정, 무역협정, 사증발급 양해각
112) 중앙아시아 법제 민간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은 법무법인 화우의 관련 업무 담당 자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서를 체결하였고, 1994년 문화협정, 항공협정, 1998년 이중과세방지협 정, 1999년 세관분야공조협정, 2003년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 조약, 2005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다.113)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규모는 양국 간 첫 수교가 이루어 진 1992 년 이후 최근 2012년까지 총 185 건, 미화 6억 1,120 만 달러에 이릅니다. 업종별 투자순위는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방 송•통신산업, 금융 및 보험업 순이다.114)
(2)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제도 개선작업 참여 배경

우즈베키스탄은 1994. 4. 18.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고, 2008. 7.22. "증 권시장법"을 제정하여 증권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증권법제를 정비하고 증권거래 시 스템을 개선하여 증권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일 환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의 한국형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 다.115) 그런데 한국형 증권거래시스템의 도입은 우즈베키스탄 관련 법 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였다. 이에 2003년 법무법인(유) 화우는 법 무부와 한국거래소의 요청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증권법제도의 문 제점 및 미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제를 현대 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하 "본 프로젝트").
(3)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 중인 현행 증권 시장법은 기준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116)
113) 김한칠 외,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제 현대화 작업 지원방안 연구 법무부 용역과 제, 2013. 12. 17, 4면((http://www.prism.go.kr(검색일 : 2014.11.28)).
114) 김한칠 외, 앞의 글, 4 면.
115) 김한칠 외, 앞의 글, 1 면.
116) 김한칠 외, 앞의 글, 1 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거래소로부터 한국형 증권시장 시스템을 도입 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법무법인 화우의 권고 의견에 따라 자체적으 로 증권시장법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2013. 7. 27.에는 제 1 차 개정초안이 나오게 되었다. 제1차 개정초안이 도출된 이후 법무법 인 화우는 중간보고서의 제출 및 우즈베키스탄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국내에 초대한 국내 세미가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시로 우즈베 키스탄측에 증권시장법에 관한 자문의견을 전달하였고, 그 후 우즈베 키스탄에서는 제 1 차 개정초안을 수정 - 보완한 제 2 차 개정초안을 마련 하였다. 제 2 차 개정초안과 관련해서는 양국대표단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세미나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현행 증권시장법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된 개정 초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 역시 포함되게 되었다.117)

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18)}$
ü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및 증권관련 법제 현황 분석
ü 현행 증권시장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미비점 검토
ü 증권시장법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미비점 검토
ü 적극적인 증권시장 육성정책 제안
(4) 재원조달

본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재원을 조달하였다.
(5) 기대효과

본 프로젝트는 증권법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 써 우즈베키스탄이 효과적으로 증권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
117) 김한칠 외, 앞의 글, 2 면.
118) 김한칠 외, 앞의 글, 2 면.

을 주는 것을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119) 또한 본 프로젝트는 우즈베키 스탄과 유사한 법제도를 가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던 한국형 증권시장 시스템 및 법제도의 수출사업이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 }^{120)}$ 나아가, 우즈베키스탄 현행 증권법제 현황 분 석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121)
(6) 수행상의 문제점 및 제안사항

본 프로젝트는 약 8 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주로 우즈베키스탄 증 권시장법의 개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본건 프로젝트가 우즈베키 스탄 증권법제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증권시장 법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주식회사법 및 하위규정 등의 개정작업 에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예산부 족을 이유로 이후 하위법령 등의 개정작업을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측에서는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도 법무법인 화우 가 계속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 제 3 절 평가 및 개선방안

## 1. 평 가

(1) 재정상의 문제점

민간기관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상 안정적 인 사업비용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교류사업의 특성상
119) 김한칠 외, 앞의 글, 2 면.
120) 김한칠 외, 앞의 글, 2 면.
121) 김한칠 외, 앞의 글, 2 면.

수익성이 높지 않고 해외파견이나 현장근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 지 않기 때문에 민간국제교류협력기관들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리성을 전제로 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나 공공기관의 공적 교류협력 사업과 달리 일반 민간기관의 국 제협력 사업은 대부분 조직이 영세하고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재정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발주하는 국제교류헙력사업의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우수민간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 경영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상설 지원센터의 설립도 필요 할 것이다.
(2) 노하우 미축척에 따른 전문성의 부족

민간기관의 국제 교류협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평가되는 것은 전문인력과 노하우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문성 부 족은 재정 지원의 부족과 연계된 부분도 크다.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안정적 자금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 에 안정적인 임금 지급이나 비용 조달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 서, 해당 사업 종사자의 이직이 갖은 것이 현실이며, 현지 국가에 대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특히, 선진국에 비 하여 체제전환국가들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하여 외국인의 입장에서 해당 국가의 제도나 법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어렵게 축적한 지식 과 노하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류협력 사업 종 사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국가 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 소년의 글로벌역량 강화사업을 통하여 아시아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 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협력사업에 50 대와 60 대의 퇴직자를 활용 하여 재교육과 재취업지원 등에 일정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국제교류협력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교 류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효과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3)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비전과 정체성의 모호

민간기관의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부족하 고, 민간기관의 정체성 또한 애매한 경우가 있다. 민간기관의 국제교 류협력사업이 수익을 위한 사업인지 공익을 위한 사업인지가 불명확 한 경우가 많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선교활동 등과 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체의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교류협력 사업의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을 확정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이나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교류협력 전문민간 기관을 발굴 육성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민간기관 끼리의 과다경쟁

민간기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문제점으로 국내 민간기관 끼리의 과다경쟁이 지적되기도 한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취지상 협력을 통 해 사업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경쟁의 논리와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국내 민간국제교류기관의 과다경쟁은 아시아 현지 교민단체나 기업, 현지 정부나 민간기관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 히려 해외 현지에서도 협력 보다는 과대 경쟁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전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시사점- 일본의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 사례

아시아 체제전환국 등의 법제와 법률 시스템은 일본의 법제와 시스 템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2) 일본 정부와 아시아 국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져 온 바 있으며, 이에 1994년 이후로 일본 법무성은 베트남에서 법제연수 를 시작한 바 있다. ${ }^{123)}$
일본 정부는 법정비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국제거래의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 력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 }^{124)}$ 한편, 기업 측에서도 경제교류, 국 제교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도 시장경제질 서에 맞게 정비되어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민상사법 분야의 법정비지원을 본격적으로 담당할 조직의 설치를 희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사업에는
122)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비교사법 제 16 권 1 호, 한국비교 사법학회, 2009. 3, 196면.
123) 권오승 외,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용역과제, 법무부, 2004. 12. 15, 46면(http://www.prism.go.kr(검색일: 2014.11.28)).
124) 법제처, 일본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팀제훈련 보 고서, 법제처, 2007. 8, 84면(http://world.moleg.go.kr/news/report/11(검색일: 2014.11.28)).

법조관계자와 학술관계자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학자, 변호 사 등의 협조를 얻어 민상사법 분야의 법정비지원을 담당하는 국제민 상사법센터(Inter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Law Center)를 설립하였 다. 국제민상사법센터는 일본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서 100 개 이상의 회사 -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125)

국제민상사법센터는 JIKA로부터 민상사법 분야 지원사업의 위탁을 받아 자기 소속의 직원이나 법무성 그 밖의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서 법정지비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26)

## 3. 추진전략 및 정책 제언

(1) 추진전략

우리나라는 아시아 체제전환국가를 중심으로 한 법제교류협력에 있 어서 민간기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효 과적인 민간 차원의 법제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 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기관의 법제교류협력을 체계 적으로 총괄하며,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들의 법제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 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제대로 된 판례집이나 법 령해설 관련 자료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관련 판례집 편찬, 법령해설집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당 국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기초연구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5) 법제처, 앞의 글, $84 \sim 85$ 면.
126)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법제처, 앞의 글, 85 면의 내용을 참고.

셋째, 이 지역에 대한 법률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법률정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재육성이 더욱 효과적이다. 일본 의 경우도 지원대상국의 인재육성과 법학교육지원에 법제교류협력의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 }^{127)}$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과 같은 법 제연구기관, 법과대학에 설치된 각종 연구소, 업별 협회 등과 연계하 여 학술기관, 교육기관, 업별협회 등에서의 체계적인 법정비지원 사업 을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법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현지화 전략의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의 법제교류는 ODA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싼 항공료와 국내체제비 등을 감안할 때 법제교류 방식의 다 양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제교류를 국가별 또는 권역별로 현지화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현재 일부 대학과 로펌에서 아시아 개도국에서 법제교육과 법 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효과와 방식에 있어서 재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적인 민•관•학 간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교류•협력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 하다. 가령 대한민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한국문화원, 한글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한국교육원이나 세종학당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해당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법제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
127) 이와 관련하여 나고야대학은 법학교육지원에 중점을 두어 몽골국립대학 법학부, 타슈켄트국립법과대학, 하노이법과대학 등에 일본법교육센터를 만들어 해당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과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다(법제처, 앞의 글, 89 면).

국에 한국법제교육원을 개설하여 민관학 공동으로 해당국가와 인접국 가의 법학자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128) 이 중 우수한 법학자 및 연구자 등을 선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초청하거 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연구 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2) 종합적인 체계적인 사업 추진

현재 적지 않은 기관에서 법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 법 제교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별로 법제교류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와 대학, 로펌이나 기업 등 민간 기관에서도 해당국의 다양한 파트너와 다양한 법제교류사업이 추진되 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법제교류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첩적이고 통일된 방향성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 는 법제교류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에 법제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민간기관과 학계, 정부부처의 기능을 효과적 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유무상지원사업과의 연계

대한민국의 무상원조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담당하고 있고, 유상 원조사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교류협력사업의
128) 아시아교류협회에서는 2012년 아시아법제포럼 당시에 라오스 법무부차관을 초 청하여 라오스 내에 한아세안법제교류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고 한다. 라오 스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 고, 이들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라오스에 한아세안법제교류센 터를 설립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법학자와 공무원, 학생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법 제교육을 하고, 이러한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이 되면 대한민 국으로 초청하여 보다 심층적인 법제교육을 하는 방안은 민관학 협력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 이러한 유무상대외원조사업과 연계할 경우 실효성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정비사업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도로관련법제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증권거래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주면서 금융투자 관련 법제 정비사업도 함께 지원함 으로써 법제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지 의 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제도에 적합 한 법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법제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그 예로,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 대하 여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합한 부동산감정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한 담보 및 금융 관련 법제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정비해 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해외 유무상원조사업과 법제교류사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민간학 교류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민관기관의 법제교류협력 사업이 해당기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지 법제교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법제교류가 초창기라는 점에 서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무상원조사업과 경제협력, 법제교류 등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일본의 국익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 우가 많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 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제수출을 통해 우리 기업과 문화가 자연스 럽게 해당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 로는 개도국의 낙후된 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접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 제 5 장 중앙행정부처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 제 1 절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 1. 일반적 현황

중앙행정부처의 법제교류협력사업현황은 사업의 목적 및 참여국 수 등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차원은 국제법 제교류의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을 위한 것과 상대국의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차원 은 상대국이 양자인지 혹은 다자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상호 배타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호교차적 차원으로 전자의 목 적을 위해 양자 혹은 다자간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후자의 목적을 위해서도 양자 혹은 다자간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전자와 후자 의 목적이 혼합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차원의 구분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국제법제교류협력의 유형 구분

| 구 분 | 양 자 | 다 자 |
| :---: | :---: | :---: |
| 우리나라의 법제개선 |  |  |
| 상대국의 법제개선 |  |  |

이 같은 구분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의 국제법제교류협력사업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제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은 주로 다자간 사 업과 양자간 사업 및 독자적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자간 사업

의 대표적인 경우가 범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129}$ ) 국제회의 참가 및 동 위원회 아태지역 사무소유치와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 개 최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09년에 대법원이 서울에서 '기 업도산절차의 국제적 동향(Inter-national Trends in Business Insolvency Procedure)'이라는 부제 하에 국제법률심포지엄(Judicial Symposium in Korea 2009)를 개최한 바 있는데, 동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선진적 도산절차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개최한 국제 법률 콜로퀴엄(Judicial Colloquium in Korea)과 국제법률심포지엄 등 이 같은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같은 사업들은 우리나라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제교류협력사 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관련 법제에 대한 국제회의 참 가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소개하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통해 우리나 라법제의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 차원 의 법제개선을 위한 사업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양자간 사업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선진국 방문이나 국외직무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사업이다. 이는 인적교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방식에 속하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제교류협력 사업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130)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독자적 사업유형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유형구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법제처의 "세계법
129) 동 위원회는 1966년 12월 17 일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총회 산하기구로 상거 래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으로 국제상거래의 원활화에 대한 기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 선출된 60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 임기는 6년인데, 우리나라은 1980년 이래 옵서버로 참가하다가 2004년부터 정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UNCITRAL 웹사이트 http://www.uncitral.org/(검색일: 2014. 11.28)
130)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 지는 않다.

정보센타"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동 사업은 세계 각국의 법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국내 정부 및 기업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는 단순히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의 한 범주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상대국 법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유형도 다자간 유형과 양자 간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 서 다자간 사업은 국제회의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 표적인 사례는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법제포럼'과 '아시아 법제교류전문가회의'가 있다. 전자는 지난 2011년 이래 진행되고 있으 며, 후자는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동 국제행사는 참여국의 법제 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 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대국의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교류협 력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공동으로 시행하 고 있는 태국의 배출거래제 관련한 공동 컨설팅 사업도 다자간 사업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사업은 태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탄소배출 권거래제(TVETS: Thailand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에 필요 한 지원사업 중에 법제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교류 협력사업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국 법제를 개선에 기여하기위한 양자간 사업은 외교부와 기획 재정부는 물론 법무부(검찰청 포함), 법제처, 대법원 등에서 광범위하 게 시행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업은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사업과 법관련 부처(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대법원 등) 사업과는 구 분된다.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동일하나, 전자는 해당 부처의 직무내 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반면에 후자는 고유직무라기 보다는 직무

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131) 우선 외 교부의 경우에는 산하 기관인 우리나라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KOIC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분야 중 '공공행정’분야에 국제 법제교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는 '경제개발전략 수 립’,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 부의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mathrm{KSP})$ 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 중 2011년에 실 시한 ‘규제개혁과 경제발전',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경험', 2012년에 실시한 ‘조달행 정 법제도에 관한 프레임워크 구축’,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 관련 법제',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등 경제개발경험 모듈화 사업 이 이에 속한다 하겠다.

한편 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사업으로는 "법무 한류"(K-Law)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법무한류’ 사업은 ‘법제정비지원 사업’, ‘법조인 초청연수사업’, '국제형사사법 지원사업’, ‘법무한류 인 프라 구축 및 전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세계법제정보센 타'를 구축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필요한 법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에 법제정보 와 입안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KOICA와 공동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 법관과 법원 직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 에서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31) 이 같은 구분은 각 기관 직제관련 법적규정의 직무에 명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직무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주요 행정부처의 경우에는 국제협력 및 교류관련 추진체 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회의(포럼, 세미나 등 포함) 등에 참여하거나 주요 선진국을 방문하여 기관에 필요한 법제관련 정보 및 현황에 대 한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32)}$

## 2. 문제점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사법부인 대법원 포함)의 법제교류협력 사업 은 이론적 측면, 사업내용적 측면, 추진조직적 측면, 추진절차적 측면, 추진기반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이론적 측면

첫째, 법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못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교류협력은 한국의 법제를 개선하 기 위한 것과 상대국의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구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같 은 점은 관련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추진체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 다. 단지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사업의 경우에는 국제교류협력과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구별된 개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정립을 필요로 한다.
둘째, 첫 번째 문제제기와 같은 맥락에서 법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목적 설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의 경우 공공외교 의 일환으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32)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및 정보가 통일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

어 일부만 정리할 경우 오독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단지 주요 기관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추진체계와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 상의 내 용만을 포함하였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 외교는 상대국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 부를 상대로 하는 외교와 구분된다. 한편 법제교류협력사업은 정부뿐 만 아니라 민간 등 상대주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 도 아니고, 그 목적도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법제개선이라는 목적 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제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2) 사업내용적 측면

첫째, 기관별 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앞에서 간단히 요약한 바와 같이 법제교류협력사업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대법원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히 확인 되지 않은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행되고 사업 간의 중복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상대국 인력도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우리나라 기관을 통해 진 행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사업이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국적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비록 상대국 의 법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영 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은 분명하지만 상대국의 법제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제를 모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어 능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상대국 또는 상대인력 이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법제교류협력 사업 은 법제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와 외교활동 및 사안에 따라 상 대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 기 관에서 법제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문역량이 필수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 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추진조직적 측면

첫째, 우리나라 법제교류협력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할 추진조직이 부 재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협력사 업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차원의 통합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부나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영역 안에서 통합성을 갖고 있으나, 법 무부와 법제처 및 대법원 등의 법제교류협력 사업 등은 통합성의 측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둘째, 전문화된 기관별 추진조직이 미흡하다. 법제교류협력 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소규모로 진행될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규모가 증대되면 이에 대한 전문화된 조직적 대응이 불 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청의 국제협력단 설치는 다른 기관에 비해 진일보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제교류협력 을 주요한 사업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는 전문화 된 추진조직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추진절차적 측면

첫째, 상대국의 필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개발도상 국을 상대로 하여 상대국의 법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은 상대

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부나 기획 재정부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대국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단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업에 대한 평가절차가 미흡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법제교류협력 사업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 다. 가령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추진절차 내에서 이를 평 가하기 위한 단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추진절차 내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평 가를 위한 추진절차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추진기반적 측면

첫째, 사업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법제교류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업관련 뿐만 인력 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이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에 대한 홍보체계가 미흡하다. 법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 류협력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국민홍보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 히 동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 나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의 홍보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 제 2 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사업 현황

## 1．외교부

1）추진체계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법제교류협력 혹은 법 제관련 교류 사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시행하고 사업은 없다．사업 명칭의 측면에서 볼 때＇법제교류협력사업＇은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우리나라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중에 포함될 수 있으나，이를 특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단지 외교부의 또 다른 산하기관인 우리나라 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 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분야 중에 법제교류협 력 분야에 포함 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KOICA는 외교부의 산하기관으로＂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 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33）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KOICA는 본부와 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있는데，본부는 4이사， 1 본부， 10 부， 8 실， 29 팀，그리고 28 개의 해외사무소（주재원 17 개소）를 갖추고 있다．이 밖에도 KOICA 조직도 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회를 두고 있다（「우리나라국제협력단법」 제 12 조，「우리나라국제협력단 정관」 제 5 장）이사회는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전략기획이사，개발협력1이사，개발협력2이사，경영관리이사） 와 당연직 이사（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외교부 개발협력국장，국토 교통부 건설정책국장，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그리고 비상근이

133）KOICA 웹사이트 참조 http：／／www．koica．go．kr／（검색일：2014．11．28）

사（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서 임명）등으로 구성된다．이 이사회는 KOICA 업무에 대한 제반 사 항134）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본부차원에서 무상원조 정책방향과 KOICA를 비 롯한 실행기관의 사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무상원조 사업의 중복 성을 방지하며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를 개최하고 있다．${ }^{135)}$ 그리고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은 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제19조）．이를 위해 재외공관은 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행기관의 현지 주재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ODA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이 같은 조직을 토대로 KOICA의 일반적인 사업추진절차는 ‘수원국 정부와 사업발굴협의＇，‘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수원국 공식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업예비선정’，‘정부간 협의＇，‘사업내용 확정＇，‘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사업평가＇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34）구체적으로 1．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5．국내•외 사무소 및 산하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직제，인사，복무，보수，회계，재 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과 기타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재 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8．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9．협력단의 해산에 관 한 사항， 10 ．기타 사업수행 및 협력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 한 사항 등이다．
135）동 협의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9 조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 15 조，그리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의거하여 운영 되고 있다．동 협의회는 모든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본회의 와 분과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본회의는 외교부 제 2 차관이 주재하며，각 시행기관 의 국장급이 참석한다．분과협의회는 외교부의 개발협력국장의 주재 하에 각 시행 기관의 과장급 및 실무자급이 참석한다．이를 통해 차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검 토하고 조정하며，이외에 무상원조 관련 현안 및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

## <표 5-2> KOICA 사업 추진절차

1. 수원국 정부와 사업발굴협의
o 중기전략 및 국별원조전략 등을 토대로 무상원조사업 발굴협의

- 수원국 빈곤감소전략,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 할 수 있는 적정사업 발굴
o 사업발굴은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연중 실시
- 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 주요외교행사 계기 등을 통해 사업발굴

2.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o '사업발굴협의' 단계를 통해 형성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의 공식사업 요청서(Project Request Form)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
3. 수원국 공식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단 파견 등)
o 수원국 공식사업요청서를 일차 검토하여 ‘사업형성조사 대상사업’ 분류 o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청사업에 대해 조사단파견 등 지원적정 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조사과정에서 사업내용을 수정•보완)
4. 사업예비선정(사업심사위원회 등)
o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한 심사 실시
o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예비선정
5. 정부간 협의
o 양국 시행기관간에 합의된 사업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합의실시
o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양 기관간 합의에 의해 시행)
6. 사업내용확정(Record of Discussions 체결)
o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과 사업세부내용 협의

- 사업세부내용 및 부담사항 등을 명기한 협의의사록 (R/D, Record of Discussions) 체결

7.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
o 정부간 합의 완료후, 사업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 사업착수 o 사업집행 단계는 (1)집행계획수립, (2)사업시행자선정 및 계약체결, (3)사 업집행 및 모니터링, (4)사업종료 순으로 진행
8. 사업평가
o 프로젝트 평가는 프로젝트의 계획수립, 집행 및 성과를 평가하며, 평가 시기에 따라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출처: KOICA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그러나 이 같은 사업추진절차는 사업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 다. KOICA 사업형태는 '프로젝트 사업', ‘연수사업’, '해외봉사단파견', ‘전문가 파견', ‘해외재난복구지원',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36)}$
2) 사업현황 137 )

KOIC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공공행정'분야에 국제법제교 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KOICA의 사업분야는 '교육', '보건', '공공 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환경, 여성, ICT, 인권)', '기후
136) 이 밖에도 $\mathrm{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라는 개발경험 공 유차원의 컨설팅 사업도 있으며, 이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과 거의 동시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137) 이하의 내용은 우리나라국제협력단 웹사이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KOICA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검색일: 2014.11.28)

변화대응'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공공행정' 분야는 '경제개발 전략 수립’,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등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다.
<표 5-3> 공공행정분야 ODA 사업 개념도

*출처: KOICA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이 중에서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이라는 전략목표에 국제법제 교류협력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전략목표는 "국가사회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 및 법치주 의 확립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법조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법조인 초청연수, 기술자문(중장기 자문단), 법조 인 양성 프로그램 등의 사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공정한 법체계 도 입 프로그램으로, 선진법률체계 구축, 사법제도 개혁, 법제도 개선연 구, 사법행정 공정성 • 효율성 개선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셋째, 범죄 예방 및 치안강화 프로그램으로, 범죄예방 및 국세사업, 공조체제 구 축, 시민안전서비스 강화, 사이버범죄 대응능력 증대, 정치적 안정제 고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현재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분야의 사업은 방글라데시, 베트 남, 나이지리아, 온두라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표 5-4> KOICA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사업내용

| 국 가 | 사업내용 |
| :---: | :--- |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사이버범죄수사 역량강화사업 <br> $(2012 ~ 2014 ㄴ ㅕ ㄴ / 300 ㅁ ㅏ ㄴ ㅂ ㅜ ㄹ) ~$ |
| 베트남 | 베트남 법관 아카데미 설립지원사업 <br> (2013~2015년/950만불) |
| 나이지이라 | 나이지리아 CCTV 시스템을 이용한 치안강화 <br> 시범사업(2013~2015년/450만불) |
| 온두라스 | 온두라스 치안역량강화사업 <br> (2013~2015년/500만불) |
| 출처: KOICA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검색일: 2014.11.28) |  |

2. 기획재정부
1) 추진체계

기획재정부의 직무 중 국제협력 또는 국제교류는 핵심 사항 중의 하나인데, 법제교류협력 분야가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법제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재정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조직 및 추진체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직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화폐•외 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경 제협력 • 국유재산 •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 인데，국제금융과 경제협력 직무를 수행 맥락에서 국제협력 및 교류업 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이 맥락에서 경제정책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로 ‘주요국 및 국제기 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가 있으며，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 등이 당당업무 관련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1 조，제 21 조의 2 ，제 22 조）

한편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orea and Knowledge Sharing Program，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이 를 통해 일부 법제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이의 추진체계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기획재 정부훈령 제101호，2012）과 「 KSP 정책자문사업 운영지침」）．경험공유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데，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협의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동 위원회의 의 장은 기획재정부 제 1 차관이 되고，추진협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 되는데，참석기관은 경험공유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 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한편 추진협의회 산하에는 대외경제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추진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조정 및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이 밖에도 전문가위촉위원회를 두어 정책자문사업의 국별 수석고문을 선정하고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기관으로 총괄기획 및 감독기관

이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협력대상국 수요조사 및 선정, 사업수행기 관 선정, 사업점검 및 평가에 참여한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는 정책자 문사업의 추진방향, 추진계획, 성과평가 등을 심의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진행되는 정책자문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준비 단계, 사 업수행단계, 평가 및 공유단계로 구분된다.
<표 5-5> KSP 정책자문사업 추진절차



출처: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ksp.go.kr/kr/ksp/ksp.jsp (검색일: 2014.11.28))

## 3. 사업현황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제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지식공유사 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과 법제관련 국제회의개최나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식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법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138) 우리나라의 지식공유사업(KSP: Korea and Knowledge
138) 이하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mathrm{KSP})$ 웹사이트를 참조한 것 이다. http://www.ksp.go.kr/kr/ksp/ksp.jsp (검색일: 2014.11.28)

Sharing Program, 또는 경제발전공유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노하 우를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여 상대국의 경제발 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2004년 시행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기획재정부의 주관 하에 우리 나라개발연구원(KDI)이 국가정책자문사업을, 우리나라수출입은행이 국 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을,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국제법제교류와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2011년에 실시한 '규제개혁과 경제발전',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해외투자유 치 관련 법제 정비 경험, 2012년에 실시한 ‘조달행정 법제도에 관한 프레임워크 구축',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 관련 법제',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등이 있다.
<표 5-6> KSP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중 법제 관련 사업 사례

| 연 도 | 분 야 | 사업제목 |
| :---: | :---: | :--- |
| 2011 | 행정 ICT 분야 | 규제개혁과 경제발전 <br> 산업단지의 개발 $\cdot$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br> 제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
|  | 경제일반 | 종달행정 법 제도에 관한 프레임워크 구축 |
|  | 산업에너지 | 농어촌 정비 및 개발지원 관련 법제 |
|  |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  |

*참조: 제목을 중심으로 선택한 사례임. 이 밖에도 제도나 정책 등에 법제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음
*출처: KSP 웹사이트 http://www.ksp.go.kr/kr/projects/modul.jsp(검색일: 2014.11.28)

한편 기획재정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공동으로 태국의 배출거래제 관련한 공동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139) 태국은 2014년에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TVETS: Thailand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를 도입하기로 하고 탄소 거래시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국온실가스 위원회(TGO: Thailand Greenhouse Gas Organization), 자발적인 온실가 스 감축사업(Thailand 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Program) 등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GGGI가 태국의 '기후변 화 마스터 플랜(2013-2050), 수립의 일환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협력 사업을 3년간(2013-2015)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GGGI 와 공동컨설팅을 실시하여 배출권거래 제 관련 법제도 프레임 수립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 획재정부는 '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제도 연구', ‘우리나라의 배출 권거래제 연구', ‘태국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국내 초청 워크샵 개최', '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 도출' 등의 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4. 법무부와 검찰청

1) 추진체계

## 가. 법무부

법무부의 국제교류협력업무는 법무실과 검찰국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제관련 교류협력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법무실의 경우에는 국제법무과에서, 검찰국의 경우에는 국제형사 과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제9

[^15]조 와 제 10 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시행규칙」제5조 와 제6조）．

이에 따라 법무실의 국제교류협력관련 업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 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관한 사항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 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간행 및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검찰국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나．검찰청

검찰청은 2008년 국제협력단을 설치하여 검찰의 국제협력 업무를 종합 및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검찰국제협력단 설치 및 운영규 정」）．국제협력단은 단장，검찰연구관 및 검찰수사관，실무관등을 두고 있으며，필요에 따라 국제협력팀과 국제자금추적지원팀을 둘 수 있도 록 하였는데，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검찰국제협력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3 조와 제4조）

1. 대검 각 부서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 지원
2. 외국 검찰•수사기관 •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
3. 검찰의 국제수사공조 지원
4. 국제자금추적 지원
5.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 외빈방문 등) 지원
6. 검찰업무 관련 통역 등 외국어 지원
7.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사업현황

법무부와 검찰청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법무부의 「예산 및 기금운 용계획 개요」(2014년도)에 의거할 경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 사업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 지원
- 국제형사협력(ODA) 지원
- 마약수사
- 로스쿨 지원과 국제협력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및 기업환경개선(ODA)

이 중에서 법제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은 "국제거래 및 국 제통상 법률 지원사업", "국제형사협력 지원", "로스쿨 지원과 국제협 력",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및 기업환경개선" 등이 될 수 있겠다. 이 중에서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무한류"(K-Law)라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선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부문에서는 "국제거래 규범 성안•도입 작업을 위한 국제회의 적극 참가"와 "국가경쟁력 제 고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법무교류•협력 추진"이 포함된다. 이 중에

서 주요한 사업으로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140)}$ 국제회의 참가 및 동 위원회 아태지역 사무소유치와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를 들 수 있다. 법무부는 지 난 2002년부터 UNCITRAL의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 로 파견하는 사업을 펼쳤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 UNCITRAL 아시 아 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유치하고 2012년 1월 10일 개소 하였다.141) 이후 법무부는 동 지역사무소와 기타 기관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국제행사를 마련하여 국제상거래 관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142 ) 이 밖에도 국제거래 및 통상관련 해외출장 등 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013년 5월 27일 서울에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하고, 동 센타 건물에 대한상사중재원, 국 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 런던중재법원, 홍콩국제중재원, 싱가포르 국 제중재원, 미국중재협회 사무소를 입주하게 하여 중재관련 국제교류 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143)

한편 "법무한류" 사업은 ‘법제정비지원사업’, '법조인 초청연수사업’, ‘국제형사사버 지원사업', ‘법무한류 인프라 구축 및 전파'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 }^{144)}$
140) 동 위원회는 1966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총회 산하기구로 상거래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으로 국제상거래의 원활화에 대한 기여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 선출된 60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 임기는 6년인데, 우리나라은 1980년 이래 옵서버로 참가하다가 2004년부터 정회원국 으로 활동하고 있다. UNCITRAL 웹사이트 http://www.uncitral.org/(검색일: 2014.11.28) 141) <연합뉴스> (2012년 1월 10일자)
142) 가령 2013년 11월, 법무부와 UNCITRAL 아태 사무소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 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중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6월, 법부무가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와 법제연구원 및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으 로 제 1 회 아태지역 PPPs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중앙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2014년 6월 10일자).
143) <매일경제> (2013년 5월 27일자)
144) 이 같은 구분은 법무부의 설명자료(2013년 6월)에 의거한 것이다.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973

우선 법제정비사업으로는 ‘체제전환국 증권법제 정비지원’과 ‘APEC 회원국의 기업환경법제 개선지원’ 사업 등이 있다. 체제전환국 증권법 제 정비지원 사업은 우리나라거래소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나라의 증권거래소가 진출하거나 선진화 추진 중인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양국전문가 초빙, 현지 세미나 및 국내초청 세미나 개최,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실태조사, 법제정비 지원자료 제공, 현지 법령 연구 및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 라오스 증권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 였으며, 현재 벨라루스와 우즈베키스탄 등의 증권법제정비 사업, 그리 고 미얀마와 몽골에서 중재법제 정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45)}$ 또한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선진적인 법제도를 가 지고 있는 국가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하여 다른 개발도상국의 법제 를 개선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때 우리나라이 계약분쟁 해결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어 관련 기업환경법제 개선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연계하여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페 루, 2012년에는 태국과 필리핀, 2013년에는 베트남과 브루나이를 대상 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2011 년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작성해 서 현지 공청회 및 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국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법무한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조인 초청연수사업은 1997년 부터 KOICA와 공동으로 개도국 법조인, 고위공직자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관련 국제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과정은 통 상 2 주로, 주제관련 강의 및 세미나 1 주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체험 및 주요시설 견학 1 주로 구성되어 있다.

[^16]법무한류의 또 다른 분야인＇국제 형사사법 지원사업＇은 아세안 국 가에 대한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국의 마약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해당국의 마약수사관 및 감식관 초 청 교육，마약감식장비를 비롯한 수사 장비 지원，취약지역 대상 대국 민 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146)}$ 에 검사를 파견하여 아태지역 국제 형사사법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표 5－7＞검찰관련 국제조약 등 체결 현황（2013년 5월 10 일 기준）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수형자이송，MOU）

|  | 형사사법공조 | 범죄인인도 | 수형자이송 | MOUs |
| :---: | :---: | :---: | :---: | :---: |
| 아시아／ 태평양 | 호주，중국， <br> 홍콩，인도， <br> 일본，몽골， <br> 태국，뉴질랜드， <br> 필리핀，베트남， <br> 인도네시아， <br> 말레이시아 | 호주，중국， <br> 홍콩，인도， <br> 인도네시아， <br> 일본，몽골， <br> 태국，뉴질랜드， <br> 필리핀，베트남， <br> 캄보디아， <br> 말레이시아， | 중국，몽골， <br> 베트남，인도， 태국 | 중국，몽골， <br> 베트남，태국， <br> 호주， <br> 인도네시아 |
| $\begin{gathered} \text { 중동/ } \\ \text { 아프리카 } \end{gathered}$ | 알제리， <br> 쿠웨이트 <br> 남아프리카공 <br> 화국 | 알제리，쿠웨이트 <br> 남아프리카공 <br> 화국 | 쿠웨이트 | 두바이，사우디 아라비아 |

146）동 사무소는 유엔 전문기관으로 약 5,000 명의 인력을 두고，오스트리아 빈에 본 부가 있으며 21 개의 현장사무소와 2 개의 연락사무소를 브뤼셀과 뉴욕 시에 설치해 놓고 있다．동 사무소는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유 엔 기관이다．1991년 《유엔 마약 통제 계획》（UNDCP）과 빈에 본부를 둔 《범죄 예방 사법부》가 1997년에 양자가 통합되었다．UNDOC 웹사이트 참조 http：／／www． unodc．org／（검 색일：2014．11．28）

|  | 형사사법공조 | 범죄인인도 | 수형자이송 | MOUs |
| :---: | :---: | :---: | :---: | :---: |
| 남•북 <br> 아메리카 |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 페루, 아르헨티아 | 아르헨티나, <br> 브라질, 캐나다, <br> 파라과이, 미국, <br> 과테말라, <br> 멕시코, 칠레, <br> 페루, <br> 코스타리카 |  | 미국 |
| 유럽/ 중앙아 시아 | 불가리아, <br> 프랑스,러시아, <br> 우즈베키스탄, <br> 벨기에, 스페인, <br> 카자흐스탄, <br> 유럽평의회 | $\begin{aligned} & \text { 불가리아, } \\ & \text { 프랑스, 스페인, } \\ & \text { 우즈베키스탄, } \\ & \text { 카자흐스탄, } \\ & \text { 유럽평의회 } \end{aligned}$ | 유럽평의회 | 카자흐스탄,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몰도바, 네덜란드 |
| 기타 |  |  |  | 세계은행(WB) UN 재단 |

* 참조: 위 표에서 '유럽평의회'는 대한민국이 유럽평의회의 유럽형사사법 공조조약, 유럽범죄인인도조약, 유럽수형자이송조약에 비회원국으 로서 가입하였다는 의미임.
* 출처: 검찰청 웹사이트 http://www.spo.go.kr/spo/major/network/network01.jsp (검색일: 2014.11.28.)

이와 함께 법무부는 우리나라고동교육재단과 협력하여 해외 주요대 학에 "우리나라법센타‘를 개소하고 있다. 2011년에 중국 연변대, 2012 년에 태국출라롱콘대 및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등에 이를 "우리나라법 센타"를 개소했다. 또한 영문 우리나라법 개설서를 발간 및 배포하고 있다.

## 5．법제처

1）추진체계
법제처는 법제교류협력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법제지 원단에 법제교류협력팀을 설치해 놓고 있으며，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계법제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법제처 직제」 제 10 조의 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제7조의2）．

2）사업현황
법제처의 법제교류협력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하 나는 지식정보교류와 활용을 위한 세계정보센타를 통해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와 이를 국내에 제공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은 주요국과 의 다자 혹은 양자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이다．

우선 첫 번째 사업인 세계법정보센타 운영을 통해 세계 각국의 기 본법을 비롯한 일반과 경제법 등에 관한 법령과 관련 연구보고서 및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기업 및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이를 통한 서비스는＇세계법령정보 서비스＇，＇테마검 색서비스＇，＇세계법제 뉴스＇등이다．${ }^{147)}$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국내외 간의 법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기여하고 있는 것이 다．단지 동 사업은 외국정부나 민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과 구분된다 하겠다．

두 번째는 법제처가 미국，중국，일본 및 베트남 등 법제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의거한 양자 간 교류협력사업과 관련 국제 회의나 포럼 개최를 통한 다자간 교류협력사업이 있다．우선 양자 간

[^17]차원에서 아시아권 11 개국가 16 개 기관들과 교류협력에 대한 양해각 서148)를 체결하여 법제협력 관련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다자 간 차원에서 '아시아법제포럼'과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를 개최 하고 있다. 전자는 지난 2011년 이래 진행되고 있으며, 후자는 2013년 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미얀마 등에 법제정보와 입 안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림 5-1> 법제처 법제교류사업 현황


출처: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148) 이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법제처 자료이므로, 2014년 11월 현재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2014년 11월에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과 양해각서 를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 법제처 보도자료
http://www.moleg.go.kr/news/mglNews?pstSeq=68495(검색일: 2014.11.28)

## 6. 대 법 원 149)

1) 추진체계

대법원의 법제교류협력사업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시행되는데, 사법 행정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 을 의미한다. 이 사법행정에서 대법원 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 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업현황

대법원의 법제교류협력 사업은 국제회의 참여나 선진국 사법부와의 인적교류 사업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사업 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대법원은 2 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통 해 사법제도와 사법선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11년에 동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서울에서 '기업도산절차의 국제적 동향(Inter-national Trends in Business Insolvency Procedure)'이라는 부제 하에 국제법률심포지엄 (Judicial Symposium in Korea 2009)를 개최한 바 있는데, 동 회의를 통 해 기업도산절차에 관한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과 UNCITRAL 의 저명인사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선진적 도산절차와 관련한 법제도

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0년에는 국제 법률 콜로퀴엄(Judicial Colloquium in Korea 2010)을 개최하여 전자소송에 대한 국제동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소송에 대한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바도 있다. 마찬가지로 2012년에는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제2회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개최하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법조인들을 초청하여 법원과 국민과의 소통, 국민의 재판절차 참여, 미디어와 사 법 등의 법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사법 운영경험을 전파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2005 년부터 KOICA와 공동주관으로 동남아,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 국 법관과 법원 직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맥 락에서 2008년부터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 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국내 전문가 파견 및 베트남 연수생 초청사업을 전담하기도 하 였다.

## 7. 기타 주요 행정부처 국제교류협력 추진체계 및 사업영역

1)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 }^{150)}$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의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인 13 개 151 ) 분야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3 번째인

[^18]＂부내 국제협력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업무 이다．따라서 이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며，이를 보좌하기 위 해 실장 밑에 국제행정협력관 1 인을 두고 있는데，이 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 진에 관한 사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등의 업 무를 보좌한다（「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8 조 제 1 항，제 3 항， 제5항）．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한류담당관을 두고 국제협 력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제4조）．

> 이에 따른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 발 및 보급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안전행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2）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는 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 정책국，관광국，체육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을 통해 시행되

[^19]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3 조, 제 14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9 조).

이에 따른 법적 규정에 따른 주요 업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문화콘텐츠산업실
-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 업무
- 문화정책국
- 문화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 관광국
-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 체육국
-생활체육, 전문체육, 스포츠산업,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 의 진흥을 위한 장기•단기종합계획의 수립
-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
- 국가 간•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교류 및 협력은 주요 직무에 포함된다. 구체 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직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 에 관한 사항＇，＇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 한 사항’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이를 위해 국제협력국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 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 13 조）．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 행을 위한 정책조정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 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조정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남 • 북간 농산물 반•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식품산업정책실에서＇한식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업 무를 당담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5 조）．

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를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있으며，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담당관과 통상협력담당관을 설치해 놓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 2 ，「보건복지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 2）．또한 장애인정책국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5 조）．
－기획조정실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국
－장애인 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환경부

환경부의 주요 국제협력 및 교류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제」제6조의2）．또한 기획조정실 장 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을 두고 동 업무를 보좌하 도록 하였다（「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또한 환경정책실에서＇환경사업의 해외진출 지원＇과＇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 10 조，「환경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자연보전국에서는＇생물다양성 • 생물자원보 전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기획조정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관련 국제기구（녹색기후기금을 포함한 다）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환경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환경 분야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 동향의 파악•대책의 수립 등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실
－환경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국제협력에 관 한 사항

6）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포 함되며，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기획조정실 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 또한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담당관，개발협력지원팀장 등을 두어 기 획조정실장의 국제협력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의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 2）．인력수급정책국의 인력수급정책과 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용노동의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2）．
－기획조정실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 국제기구의 고 용노동 분야 업무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조정
－인력수급정책국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프로그램 참여 등 국 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주요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 고 있는데，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두고 있 다（「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 2,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제 3 조의 2），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기획조정실
－부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조정
－여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8）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주요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 며（제9조），국토도시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 책실，도로국，철도국 등에서 담당업무에 대한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 를 시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 11 조， 제 13 조，제 14 조，제 15 조，제 16 조，제 17 조，제 18 조）．이중에서 기획조정 실의 경우에는 기획실장 밑에 국제협력통상담당관을 두고 실장을 보 좌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 조）．또한 건설정책국의 경우에도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지원과 및 기타과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이와 같이 항공정책실의 경우에도 국 제항공과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2 조）．
－기획조정실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도시실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 남북 육상, 항공, 수자원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 한 사항의 조정•관리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 의 • 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제 5 호의 2 부터 제 5 호의 4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 건설정책국
-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 관리
-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 금(EDCF), 우리나라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 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외국건설인력 도입 • 관리계획 수립
- 수자원정책국
-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실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 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항공정책실
-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 - 발 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자 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항공협력 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 - 영공통과 이용 권 배분에 관한 사항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 • 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항공기 등록. 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 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 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 국제민간항공기구 • 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 • 운영 • 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도로국
-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철도국
-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국제교류 및 협력업무는 해양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 으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해양산업정책과 및 국제원양정책관을 두고

있다（「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이 밖에 수산정책실， 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 등에서 해당 업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 제 14 조）．
－해양정책실
－해양우리나라발전 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운영 및 한 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남•북극 관련 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해양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관련 국제협력
－수산 분야 국제법규 및 국제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해양영토관리 기본계획 수립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해양영토의 통합관리
－해양영토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협력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엔해양법협약의 운영
－국제수로기구（ IHO ）관련 해양지명 등에 관한 업무
－한•러 어업협정 운영 및 한•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UU）방지협정 이행
－국제수산기구와의 협상 및 교류
－고래 등 희귀 해양 동식물에 관한 국제기구 관련 업무
－국가 간의 수산 분야 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세계무역기구 관련 수산업 분야 협상추진 및 수산업 분야 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세계무역기구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과 무역에대한기술장벽 협정에 관한 업무
－해양수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업무
－수산물수출입정책의 수립 • 조정

- 수산물교역조건의 개선
-수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 수산 분야 남북 합의사항 이행
-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업무
- 수산정책실
- 한 • 일 및 한•중 어업협정의 운영
- 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업무
- 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 - 해운물류국

- 양자간 • 다자간 해운협정 및 해운협력
- 국제물류 관련 정책 • 계획 수립 및 법렁 • 제도의 운영
- 국제물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양자간 • 다자간 국제물류협력, 물류기업 관련 해외진출 및 외국 인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등 국제물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
- 연안해운의 육성 및 보호 정책 수립
- 남북간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
- 해사안전국
- 외국선박의 항만국통제, 국적선에 대한 지도 • 감독 및 해상교통 안전진단
- 선박 •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업무
- 선박보안 및 선박등록에 관한 업무
- 국제해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 해양안전과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 관련 다자간 • 양자간 국제협력
- 국제해사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국제기준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 해양오염손해배상제도의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관 리 - 운용
- 항만국
- 국내외 항만정책 수립 • 조정 및 총괄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및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 항만재개발•마리나항만개발사업 관련 민자•외자 유치 및 국제 협력


## 제 3 절 개선방안

## 1. 이론적 측면

첫째, 지역 및 국가별 전략의 측면에서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정립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법제교류협력은 "국경을 초월하여 법 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획득하기 위한 물적 및 인적교류 와 협력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교류협력은 매우 다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법제교류협력 사업은 참여자 숫자에 의거할 경우에는 다자간과 양자간으로, 대상에 의거할 경우 전통적인 정무외교와 공공외교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 통방식에 의거할 경우 일방향과 쌍방향 활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 며, 사용되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분은 결국 대상 지역 및 국가별 전략 의 측면에서 수렴되는 것인 바, 이를 중심으로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정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법제교류협력의 목적은 대상 지역 및 국가별로 선택적이고 복 합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제교류협력은 다층적인 성격의 활동이며, 이는 한 가지 목적

으로 정립하기에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다층적 성격으로 인해 대상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선택적이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 점이 있다. 가령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 차원 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는 대상국의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활 동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우 리에게 필요한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한 편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자간 방식 혹은 양자간 방식 등을 선택적 및 혼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정 사안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인 행위 로 한일 간의 주요한 갈등사안이 되어왔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에 대한 법적 측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안보 및 복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논란에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선별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법제교류협력사업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2. 사업내용적 측면

첫째, 기관 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대법원 등의 법제교류협력사업은 상 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상호보완성은 해당 지역 또는 해 당국의 법제뿐만 아니라 인프라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격을 갖게되며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행정 비용 감소효과 등을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력사업을 활 성화하여 개별 기관의 법제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개도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차원의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제고와 향후 해당국의 법제도 개선 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법제를 활용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관계 를 제고하는데 있다. 이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이 우리나라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제교 류협력 사업내에 이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거나 개별국 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제교류협력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교류협력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 제활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언어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경험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법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지식이외에 국제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법제교류협력 사업 담 당자들에게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외교부 국립외교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 방안, 추진 기관 중 선택된 기관(예를 들면 사법연수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 또는 대학에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의 행정부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의 사업 중에도 법제교류협 력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추진조직적 측면

1) 범기관 협력체 구축

우리나라 법제교류협력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할 범기관 협력체를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교류협력의 주요 기관인 법무부, 검찰청, 대법원, 법제처 간 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기관들 은 법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 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둘째,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여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 행할 계획이 있는 기관 간 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법제교류협 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 니라 외교부는 공적개발원조와 공공외교 등의 전문화된 사업을 펼치 고 있으므로, 이 같은 영역과 법제교류협력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협 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법제교류협력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관 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역할분담 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법제교류협력 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기관별 전문화된 추진조직 구축

법제교류협력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추진조직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청의 국제협력

단 은 매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제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국제협력단과 같은 형태의 전문화된 추 진조직을 구축하여 개별 기관성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 4. 추진절차적 측면

1) 사업준비 단계 마련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법제교류협력 사업(공적개발원조 활용)을 진행하기 위한 명시화된 추진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 서 사전준비단계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상대 국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시화된 절차는 물론 사업준비 단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서 관련 사업이 상대국보다는 추진기관들의 홍보나 1 회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전준비단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평가단계 마련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 준비단계에서처럼 외교부나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추진절차에 평가단계를 포함하고 있 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한 평가단계에서는 개별사업뿐만 아니라 법제 교류협력 사업 전체에 대한 범기관적 차원의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 한 평가단계는 진행된 사업의 실시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단계를 의미한 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 게 될 것이다.

## 5. 추진기반적 측면

1) 정보체계 구축

법제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는 관련 정보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타는 이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모델로 간주할 수 있 다. 이 시스템은 세계법제정보를 총 망라하여 해당국의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축적하고 점차 확대해 갈 수 있는 근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뿐만 아 니라 인프라,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교류협력 사업을 위 한 체계적인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사업에 대한 홍보체계 구축

법제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협조는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 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무척 부족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이에 대해서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와 연구자들도 관련 자료를 찾 기에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제6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 제 1 절 지적 고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 1. 유사사업 개념

법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협력, 경제협 력, 공적개발재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등과의 관계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법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비슷한 유형152)

| 용 어 | 내 용 |
| :---: | :---: |
|  | -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r> 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r>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br> 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반 공공 • 민간력 부문 <br> 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협 <br> 력을 의미함. <br> - 국제개발협력에는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 기타 <br>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수출신용, 민간투자 <br> 와 같이 다양한 협력 방식이 포함됨. |
| 공적개발원조 |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r> 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 <br> 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 |

152)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9\&menuNo=222(검색일: 2014.11.28)

| 용 어 | 내 용 |
| :---: | :---: |
|  | 도국 또는 국제기구(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 하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 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함. ODA는 (1)정부기관이 (2)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 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3)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임(증여는 무상원 조라고도 하고,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함) ODA 는 OECD 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따라 (1)공여주체(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 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 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 에 공여 될 것), (2)공 여목적(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3)증여율(차관일 경우, 양 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 이상이 어야 할 것), (4)수원국(OECD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 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 국제협력 | - 일반적으로 국제협력이란 국가 간 및 국가와 국제기 관 간의 모든 유•무상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 인력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 <br> - 국제협력은 원조나 경제협력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 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 협력분야를 경제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문화 분야로까 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음 <br> - 국가 간에 재원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교류차원의 협력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원이 이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협력, 개발협 력 및 개발원조와 차이점이 있음 |


| 용 어 | 내 용 |
| :---: | :---: |
| 경제협력 | - 경제협력은 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 때로는 대개도국 경제협 력의 줄임말로 이해되기도 함. <br> - 경제협력은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상업차관, 수출신 용, 민간부문에 의한 직•간접투자, 해외건설, 무역,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 국가 상호간 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함. <br> - 선진국 간,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 분야의 제반 협력관계를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음. |
| 공적개발재원 | - 공적개발재원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 흐름을 측정하 는데 사용되는 개념 <br> - 이에는 (1)양자간 ODA (2)다자간 증여 및 양허성 비양허성 차관 (3) 증여율이 낮아 ODA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공적 개발 자금 흐름(리파이낸싱(Refinancing: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 는 것) 포함) 등이 포함됨 |
|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 153 ) |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과 지식 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지원사업으 로,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 약적인 개발협력사업임 <br> - KSP는 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구성됨 |

법제교류협력은 아래와 같은 비슷한 유형과 관련성에 있어서 상호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2. 유사사업 협력 방법

위의 유사개념 중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공적개발원조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협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양자의 경우 사업 목표와 운영에 있어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표] KSP 사업과 KOICA DEEP Program 비교154)

| 구 분 | KSP 사업 | KOICA DEEP Program |
| :---: | :---: | :---: |
| 발주기관 | - 재정부 | - KOICA |
| 수행체계 | - KDI 총괄수주후 전문성을 고려, 자체수행 또는 외부 기관 재위탁 | - KOICA 입찰 통해 선정된 외부사업시행자들이 수행 |
| 사업유형 | - 정책자문사업 | - 정책자문, 개발조사사업 |
| 외부 <br> 사업시행자 | - 민간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그룹, 수은 등 | - 공공연구기관, 대학교, 민간엔지니어링 업체 |
| 현지사무소 | - 없음 | - 운영중 |
| 주요 <br> 추진절차 | - 공관 통해 수요조사 <br> - 후보사업 자체 선정 <br> - 현지 실태조사 <br> - 중간/최종보고회 <br> - 정책연수, 국내세미나 <br> - 사후평가 | - 공관사무소 통해 수요조사 <br> - 후보사업 자체 선정 <br> - 현지 타당성조사 <br> - 중간/최종보고회 <br> - 초청연수/전문가파견 <br> /기자재지원 <br> - 중간/종료/사후평가 |

154) 이재영, KSP 사업 예산 7년간 32 배 확대 KOICA와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보 도자료, 2012.10.5.(http://jaeyoung.net/?c=user\&cur_page=5\&idx=408\&mcd=commission\&me=bbs_ detail)(검 색일: 2014.11.28)

제 1 절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 구 분 | KSP 사업 | KOICA DEEP Program |
| :---: | :---: | :---: |
| 사업 소요기간 | - 1-3년간 사업기간 다양 | - 1-3년간 사업기간 다양 |
| 평균 사업 규모 | - 과제당 약41 백만원 | - 사업당 약 9.4억원 |

(1) 공적개발원조의 형태

OECD DAC 기준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원조는 전달 경로 (양자간/다자간원조), 상환 조건(무상/유상원조), 원조 형태(기술협력, 프 로젝트, 예산지원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55)
[표] ODA 형태별 지원156)

| 원조전달경로 | 상환조건 | 원조유형 및 양식 |
| :---: | :---: | :---: |
| 양자간 | 무상원조(상환 의무 없음) | 예산지원 |
|  |  | 프로 젝트 |
|  |  |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
|  |  | 국내/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 십 지원 |
|  |  | 부채경감 |
|  |  |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
|  |  | 개발 인식 증진 |
|  |  | 행정비용 |

155)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11\&menuNo=305(검색일: 2014.11.28)
156)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11\&menuNo=305(검색일: 2014.11.28)

| 원조전달경로 | 상환조건 | 원조유형 및 양식 |
| :---: | :---: | :---: |
|  | 유상원조(상환 의무 있음) | 차관 |
|  |  | 혼합신용 |
|  |  | 다자개발은행협조융자 |
|  |  | 차관지 원비 |
|  |  | 소액차관 |
| 다자간 | 국제기구출연 및 출자(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  |
|  |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  |

이러한 공적개발원조는 주로 시설물 등에 대한 물적 예산원조에 중 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개도국의 국가개발 정책 및 제도 구축, 경제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KOICA 개발컨설팅 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사업수행을 실시하고 있다.157)
[참고] KOICA 개발컨설팅 DEEP 프로그램 158)
$\square$ 추진방향: 우리 발전경험을 기초로 20 여년간 KOICA 사업을 통해 습 득한 현장경험 및 수원국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Country Tailored Consulting)
o (원칙 1) 수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컨설팅 (Participatory Consulting)

- 우리의 발전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과정에 서 수원국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파악하고 수원국 상황에 맞는 방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수원국 인사가 참여하는 컨설팅 제공

157)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m7Umcmo22L8J:www.mofa.go.kr /webmodule/common/download.jsp\%3Fboardid\%3D235\%26tablename\%3DTYPE_DATABO ARD\%26seqno\%3D07400afb4fe005dfe006b062\%26fileseq\%3D01afcffd1fe707105aff6049+\& $\mathrm{cd}=2 \& \mathrm{hl}=\mathrm{ko} \& \mathrm{ct}=\mathrm{clnk} \& \mathrm{gl}=\mathrm{kr}$ (검 색일: 2014.11.28)
158)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m7Umcmo22L8J:www.mofa.go.kr/

O (원칙 2) 역량강화까지 고려한 성과중심형 컨설팅 (Result-Oriented Consulting)

- 수원국 발전을 위한 제도구축 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방안까지 포함하는 컨설팅 제공
o (원칙 3) 정책•기술컨설팅을 포괄하는 포괄적 컨설팅 (Comprehensive Consulting)
- 정책컨설팅 뿐만 아니라 기술컨설팅까지 제공함으로써 후속 원조사 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제공


특히 이러한 ODA에 관한 종전의 물적 지원시스템에서 본격적인 지 식정보교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의 계기를 선언한 것으로는 2011년 제4 차 고위급회의에서의 부산선언의 내용에서부터 일 것이다. 이 선언에 서는 효과적 개발을 위한 협력 중 효과적 제도 및 정책에서 수원국 주도 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능 강화, 정책 제안 이해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webmodule/common/download.jsp\%3Fboardid\%3D235\%26tablename\%3DTYPE_DATABO ARD\%26seqno\%3D07400afb4fe005dfe006b062\%26fileseq\%3D01afcffd1fe707105aff6049+ $\& \mathrm{~cd}=2 \& \mathrm{hl}=\mathrm{ko} \& \mathrm{ct}=\mathrm{clnk} \& \mathrm{gl}=\mathrm{kr}$ (검 색일: 2014.11.28)
[참고] 2011년 제4차 고위급회의에서의 부산선언의 내용159)

| 구 분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
| :---: | :---: | :---: | :---: |
| 서 언 | 새로운 글로벌 환 경 조망, 개발협 력의 공통원칙 및 행동방침 설정 | 공통원칙 | (1) 주인의식 (Ownership <br> Development Priorities by <br> Developing Countries) <br> (2) 결과중심 (Focus on Results) <br> (3)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쉽 <br>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 <br> (4) 투명성과 상호 책임성 <b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o each other) |
|  |  | 공동 행동방침 | (1) 개발정책 및 절차에서 개 도국의 민주적 주인의식 심화 (2)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 강화 (3)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지 원 확대와 개별국가의 상황 과 필요에 맞춘 지원 <br> (4) 다양한 개발재원의 촉매 적 역할 확보 |
| 원조 효과성 심화 | 주인의식, 결과 <br> 및 책임성 강화 | - 원조의 비구속화 가속화, 2012년 중간 점검 <br> - 수원국 시스템 활용 강화 <br> - 여성권한, 시민사회 및 의회 역할 강화 |  |
|  |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협력 | - 공적자금 개발활동에 관한 전체 정보의 공개 및 표준화된 정보 공개 방식 활용 - 2012년까지 중장기 예측 가능성 제고 |  |

159)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4_S04.jsp(검색일: 2014.11.28)

| 구 분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 :---: | :---: | :---: |
|  | 취약, 분쟁상황 <br> 에서의 지속가능 <br> 한 개발 촉진 | -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활용 <br> - 수원국 주도 취약성 평가 활용, 재원 의 효과적 활용 및 결과 중심 접근을 통한 상호신뢰 강화 |
|  | 재 난상황에서의 복원력 강화 및 취약성 감소 | - 충격을 견디는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 호 체제 구축 투자 |
| 효과적 <br> 개발을 위한 협력 | 효과적 제도 및 정책 | - 수원국 주도 하 개발 관련 핵심 국가기 능 강화, 정책 제안 이해 지원을 위한 정 보 수집, 정책 개혁에 관한 지식 공유 등 |
|  | 남남/삼각협력 | - 삼각협력의 확대,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과 인정 <br> - 지식공유, 동료학습 및 남남협력 내 조율 권장 |
|  | 민간분야 | - 민간분야의 역할 중요성 인정 <br> - 민간의 성장과 개발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민간역할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
|  | 반부패 및 불법 자금 | - 부패 척결에 관한 공약이행, 자금세탁, 조세회피 대처 위한 장치 마련 |
|  | 기후변화 재원 | - 기후변화 대처 문제의 가발전략 포함, 기후변화 재원 활용에 있어 원조 효과 성 원칙 적용 권유 |
| Post-Busan 이행체제 | 수원국 현장중심 <br> 이행과 가벼운 형 <br> 태의 글로벌 거버 <br> 넌스 구축 | -2012년 중반까지 소수의 선택적 평가 지표 개발 <br>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 출범 <br> - 2012년 6월까지 각료급 참여대상, 각 |


| 구 분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 :---: | :---: | :--- |
|  |  | 료급 참여 등을 포함한 실질 운영방안 <br>  <br> 협의 <br>  <br>  |
|  | OECD 및 UNDP가 파트너십의 효과적 <br> 운영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  |

(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양자 간 KSP 로서의 국가정책자문사업, 다 자간 KSP 로서의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자문과 컨설팅 및 모듈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정보교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표] KSP 형태별 지원

| 사업구성 | 원조유형 <br> 및 양식 | 내 용 |
| :---: | :---: | :---: |
| 국가정책자 문사업 : 양자 간 KSP ${ }^{160}$ ) | 일 반지 원 <br> 사업 <br> (1년 프로 <br> 그램) | 일반지원국(Development Partner Countries)을 <br>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사업 |
|  | 중 점 지 원 <br> 사업 <br> (3년 프로 <br> 그램) | 중점지원국(Strategic Development Partner Countries)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문과 이를 적용 및 시행할 수 있는 세부추진계획(Action Plan)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컨설팅사업 |
|  | (1)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rightarrow$ (2)정책수요세미나 $\rightarrow$ (3)중간 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rightarrow$ (4)역량강화연수 $\rightarrow$ (5)고위정책 대화 및 현지 최종 보고회 $\rightarrow$ (6)국내 전파세미나 및 사업평가 |  |

160) http://www.ksp.go.kr/kr/pillars/policymain.jsp(검색일: 2014.11.28)

| 사업구성 | 원조유형 <br> 및 양식 | 내 용 |
| :---: | :---: | :---: |
| 국제기구와 <br> 의 <br> 공동컨설팅 <br> 사업 : <br> 다자간 <br> KSP ${ }^{161)}$ | 1단계 | 사업발굴 및 준비단계 |
|  | 2단계 | 사업수행단계 |
|  | 3단계 | 정리평가단계 |
|  | (1)후보사입 $\text { 정 } \rightarrow \text { (4)진 돈 }$ | 발굴 $\rightarrow$ (2)사업실행계획 합의 $\rightarrow$ (3)과업명세서 확 $\rightarrow$ (5)컨설팅 $\rightarrow$ (6)정책권고 $\rightarrow$ (7)평가 |
| 경제발전경 <br> 험 모듈화사업 <br> 162) | 1단계 | 관계부처를 통한 수요조사 |
|  | 2단계 | 조제 및 연구진 선정(과제별 Task Force 팀 구성) |
|  | 3단계 | 연구수행 |
|  | 4단계 | 보고서 발간 |
|  | [A: 실무협의회, $\mathrm{B}: \mathrm{KDI}$ 대학원, C : 과제별 TF 팀 구성] (1)실무협의회 $\rightarrow$ (2)전체 워크숍 $\rightarrow$ (3)계약 및 집필 $\rightarrow$ (4)중간보 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rightarrow$ (5)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 종보고회 개최 $\rightarrow$ (6)최종심의 |  |

161) http://www.ksp.go.kr/kr/pillars/jointmain.jsp(검색일: 2014.11.28)

162 ) http://www.ksp.go.kr/kr/pillars/modulcycle.jsp(검 색일: 2014.11.28)

| 사업구성 | 원조유형 <br> 및 양식 | 내 용 |
| :---: | :---: | :---: |
|  |  | 기현재조누 <br> A |

3.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의 근거 및 교류 형태
(1) 근 거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의 근거와 관련하여서 법적 근거가 무 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와 관련한 법률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국제교류와 관련한 법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및 이법 시행령,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및 이법 시행령,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이법 시행령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법 시행령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 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1조）．즉 이법은 ODA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현행 공적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연수 생 초청，전문인력 파견，해외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 고 있고，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지원 등의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 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설치•운영되 고 있어，공적개발원조업무가 합의된 기본이념이나 원칙 수립이 미흡 한 상태에서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추진기관간 사업 중복 등 비효 율을 초래하고，유무상 원조간의 연계가 저해되어 공적개발원조의 효 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 1월에 제정 된 것이다．${ }^{163 \text { ）}}$

이 법은＂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양자간 개발협 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 한다（제2조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 국의 빈곤감소，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성평등 실현，지속가 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 다（제3조제1항）．이때 국제개발협력은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2）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 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3）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4）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그 밖에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3조제2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
| :---: | :---: |
| 제 1 조(목적) <br> 제 2 조(정의) <br> 제 3 조(기본정신 및 목표) <br> 제 4 조(기본원칙) <br> 제 5 조(국가등의 책무) <br> 제 6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br> 제 7 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br> 제 8 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 립 등) <br> 제 9 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br> 제 10 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 <br> 할 및 기능) |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안의 작성 등) <br> 제 12 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br> 제 13 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br> 제 14 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br> 대한 지원) <br> 제 15 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 16 조(전문 인력의 양성) <br>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br> 제 18 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br> 제 19 조(재외공관의 역할) <br> 제20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  |
| :--- | :--- |
| 제 1 조(목적) | 제 9 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 제 2 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제 10 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 |
| 제 3 조(위원회의 운영) | 제 11 조(평가의 기준 및 방법) |
| 제 4 조(실무위원회의 겅 및 운영) | 제12조(평가소위원회) |
| 제 5 조(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 제 13 조(정보 공개) |
| 제 6 조(수당 등) | 제 14 조(통계자료의 제출) |
| 제 7 조(운영세칙) | 제 15 조(협의체) |
| 제 8 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법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으나,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과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및 이법 시행령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경 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재외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제협력요원에 관 한 법률 제1조).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
| :--- | :--- |
| 제1조(목적) | 제8조(복무) |
| 제2조(정의) | 제9조(소환) |
| 제2조의2(국제협력의사) | 제10조(의무불이행통보) |
| 제3조(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선발) | 제11조(중도귀국) |
| 제4조(국제협력봉사요원 • 국제협력 | 제12조(보수등) |
| 의사의명단통보등) | 제13조(복무종료통보) |
| 제5조(종사명령등) | 제14조(지휘•감독) |
| 제6조(근무지변경) | 제15조(권한의위임•위탁) |
| 제7조(근무지이탈금지등) |  |

이 법은 2014년 1월 21일부로 폐지되었고, 그 시행은 2016년 1월 1 일 부터이다.

이 법 시행령은「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제1조(목적) |  |
| 제2조(대상자선발기준등) | 제10조(일시귀국) |
| 제2조의2(국제협력의사의임용) | 제11조(복무기간의연장) |
| 제3조(직무교육실시) | 제12조(복무상의무등) |
| 제4조(직무교육의연기) | 제13조(보수등) |
| 제5조(직무교육기간등) | 제14조(재해보상) |
| 제6조(근무지이탈허가) | 제15조(상벌등) |
| 제7조(국외근무기간등) | 제16조(권한의위임•위탁) |
| 제8조(근무시간) | 제17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 제9조(휴가) |  |

다만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및 이법 시행령은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이법 시행령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이 법은 우 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지역으로부터의 점증 하는 협력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 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지 역에 대한 각종 국제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전담 수행하는 정부출연 기관 형태의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164)
16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648\&ancYd=19910114\&ancNo=04313\&efYd= 199101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검 색일: 2014.11.28)

| 한국국제협력단법 |  |
| :--- | :--- |
| 제1조(목적) | 제 18 조(자금의차입) |
| 제2조(정의) |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
| 제3조(법인격) | 제18조의3(국회에대한보고) |
| 제4조(설립) | 제19조(사업연도) |
| 제5조(사무소의설치) | 제20조(사업계획및예산의승인) |
| 제6조(정관) | 제21조(결산서의제출) |
| 제7조(사업) | 제22조(수수료등의징수) |
| 제8조(임원) | 제23조(업무의지도•감독등) |
| 제9조(임원의결격사유) | 제24조(권한의위탁) |
| 제10조(임원의직무) | 제25조(산하기관) |
| 제11조(임직원의겸직제한) | 제26조(비밀엄수의무) |
| 제12조(이사회) | 제27조(유사명칭의사용금지) |
| 제 13 조(직원의임면) | 제28조(「민법, 의준용) |
| 제14조(공무원의파견) | 제29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 제 15 조(운영재원) | 제 30 조(벌칙) |
| 제16조(출연금) | 제31조(과태료) |
| 제17조(국유재산등의무상대부등) | 제32조 삭제 |

이 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 령 제1조).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  |
| :--- | :--- |
| 제1조(목적) | 제 10 조의4(기여금의관리 • 운용) |
| 제2조(당연직이사) | 제 10 조의5(기여금계정의설치등) |
| 제3조(공무원의파견) | 제 10 조의6(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 |
| 제4조(공무원인전문가등의파견) | 심의위원회) |
| 제5조(직원의파견) | 제 10 조의7(기여금의조성및운용상황 |
| 제6조(정부외의자의출연금) | 보고) |
| 제7조(정부의출연금) | 제 11 조(사업계획및예산안의승인) |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  |
| :---: | :---: |
| 제 8 조(정부출연금의교부) <br> 제9조(국유재산의무상대부등) <br> 제 10 조(자금차입의승인신청) <br> 제 10 조의 2 (국제 빈곤퇴치기여금의부 <br> 과제외 대상) <br> 제 10 조의 3 (기여금부과 • 징수사무의대행) | 제 12 조(세입세출결산서의제출) <br> 제 13 조(잉여금의처리) <br> 제 14 조(산하기관) <br> 제 15 조(사업수행의지침시달) <br> 제 16 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 |

다만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이법 시행령은 한국국제협력단에 관한 설립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검 토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은 어느 특정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ODA 에 한정된 영역도 아니다. 즉, 법제교 류협력은 ODA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에 포섭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 다. 예컨대, 법제교류가 ODA요건을 갖춘 경우, 구체적으로 보면 ODA 는 (1)공여주체(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 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 에 공여 될 것), (2) 공여목적(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 적일 것), (3)증여율(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 율이 $25 \%$ 이상이어야 할 것), (4)수원국(OECD개발원조위원회(DAC)수 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 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조건을 충족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ODA의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을 벗어난 경우에는 ODA를 벗어나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협력의 범위 에서 법제교류협력의 유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165)
165)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9\&menuNo=222(검 색일: 2014.11.28)

여기서 고려할 것은 법제교류협력에 대해서 Good Governance（좋은 정치•좋은 통치이론）측면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66)}$
（2）교류형태

법제교류협력의 교류형태로는 시설지원사업，법제정보교류사업，법 제정비협력사업，입법지원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서양의 「법과 개발」의 구체적인 지원 상황167）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세계은행 group | 1．북아프리카， 중동： <br> 상법개정，법의 통일（예멘）， <br> ADR 의 도입 <br> 2．라틴아메리카： <br> 민법， <br> 민사소송법， <br> 상법개정 <br> 3．동구，중앙 <br> 아시아： <br> 헌법，은행법， <br> 도산법，민법， <br> 민사소송법 <br> 4．동남아시아： <br> 기업개혁， <br> 회사재건，경쟁， 조세，무역， | 1．북아프리카， 중동： <br> 법원운영의 근대화，법관• 법원직원의 훈련， 인프라스트럭쳐 （infrastructure） 정비 지원， 토지등기 제도지원 <br> 2．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제국： 법원개혁，모델 법 원의 설치（아르헨티 나），부처•옴부 즈맨 사무소， 로 • 스쿨， | 1．북아프리카， 중동： <br> 법의 보급，법의 지배•사법개혁 의 필요성에 관한 공공지식 캠페인 <br> 2．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제국： 법－법원에의 액세스，여성을 위한 <br> 법률부조（에콰 도르）；토착－빈 곤집단의 지원변호사회 • NGO 와의 협력 <br> 3．동구 ．중앙 | 대여／ <br> 무상 |

166）일본의 ODA대강（大綱）에서는 「‥자구노력의 지원을 기본으로 광범위한 인재， 국내의 여러 제도를 포함한 I 사회경제기반과 기초생활분야정비 등을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자원분배의 효율과 구성이나 『좋은 통치』의 확보를 도모하여 나아가 건전한 경제개발의 실현을 목적으로 $\cdots$ ，라고 공표하고 있다．
167）박광동，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2008，21－28면．

제 6 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조달, 지적재산 등의 분야의 법안기초 | 변호사회의 <br> 개혁, ADR 의 촉진, <br> 인적자원관리의 <br> 개혁, <br> 국가법익옹호 <br> 시스템의 <br> 설립(볼리비아) <br> 3. 동구 . 중앙 <br> 아시아: <br> 행정관리, <br> 사법부문, 부처, 전자적 <br> 사례관리, <br> 법학교육의 <br> 개혁법안기초 <br> 능력의 강화, <br> 재판관임명•교 <br> 육제도의 쇄신 <br> (예를 들면, <br> 아르메니아), <br> 재판소 - 파산 <br> 특별법원의 <br> 전문가의 훈련, <br> 항소 법원• <br> 대법원의 <br> 컴퓨터화 (예를 <br> 들면, 그루지야) | 아시아: <br> 법관, 변호사, <br> 기업가, 은행가, <br> 정부의 공무원, <br> 법학자, <br> 일반민중등의 <br> '스테쿠홀다'지 <br> 원을 위한 <br> 정보•공공지식 <br> 캠 페인 <br> (예를 들면, 러시아) <br> 동남아시아:정보 <br> 네트워크의 <br> 창설, 여성과 <br> 아이를 위한 <br> 법률부조 <br> (캄보디아), <br> 커뮤니케이션 <br> 전략 |  |
| 국가연합개발계화 (UNDP) |  | 북아프리카, 중동: <br> 사법개혁의 <br> 이익에 관한 <br> 정책 <br> 어드바이스, <br> 국회 | 사회적 참가를 <br> 증대시키기 <br> 위한 네트워크, <br> 공공지식 <br> 캠페인 | 無償 |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 의원－사법부에 의 지원（「아랍 제국에 있어서의 지역 <br> 가버넌스• <br> 프로그램」）；모 델 재 판소 <br> 프로젝트；법관• 법원직원의 훈련 |  |  |
| 아메리카개발은행 （AfDB） | 아프리카： <br> 「개발을 위한 법」 <br> 이라고 명명할 <br> 수 있었던 <br> 다양한 활동을 <br> 준비중．예를 들면， <br> 주식시장－자본 <br> 시장의 발전을 <br> 위한 법적 <br> 틀제정 법• <br> 사법관계법 <br> 개혁은행법의 <br> 통일화（ECOWAS）； <br> 일반상법（OHADA）； <br> 안전한 국제거래 <br> 기업통치 개혁 | 아프리카：아프리 카법에 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민간부문개 발인프라스트럭쳐 （infrastructure）정비 지원；법원 • 등기 소에의 지원， 훈련 | 아프리카：법에의 <br> 액세스，특히 <br> 투명성 문제의 <br> 개혁 | 대여／무상 |
| 美州개발은행 <br> （IDB） | 라틴－미국， <br> 카리브해 제국： <br> 사회•경제입법의 <br> 개혁（우루과이）； <br> 상법，행정법， <br> 형사소송법의 <br> 개혁（특히 <br> 몇몇의 법원에 <br> 있어서의 공개 | 라틴아메리카， <br> 카리브해 제국： <br> 법원， <br> 민사－형사사법부 <br> 문，옴부즈맨 <br> 사무소， <br> 검찰청에의 <br> 기술적•인프라 <br> 스트럭쳐（infrastr | 라틴아메리카， <br> 카리브해 제국： <br> 법에의 액세스， <br> 특히 사회에서 <br> 뒤떨어진 <br> 사람들의 <br> 액세스의 <br> 개선；범죄예방 <br> 프로그램（아르 | 대여／무상 |

제 6 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구두심문의 실시) | ucture) 정비 <br> 지 원;재판관, <br> 재판소직원의 <br> 훈련;인프라스트 <br> 럭쳐(infrastructure) <br> 정비 투자, <br> 최고사법심의회 <br> 를 위한 관리 <br> 훈련(코스타리카) <br> ;공선 변호사, <br> 치안판사, <br> 로스쿨의 <br> 강화;시 민등록부 <br> (파라과이) - 등 <br> 록 관리 <br> 시스템의 근대화; <br> ADR 의 촉진 | 헨티나) |  |
| 아시아 <br> 개발은행(ADB) | 동남아시아:토지 <br> 개혁, 토지권 <br> 입법(캄보디아); <br> WTO가맹 | 동남아시아:사법부, 행정청, 중앙조달국 (몽골)에의 지원;지방행정의 | 동남아시아: <br> 법정보시스템의 <br> 확랍(미크로네시아); <br> 법학교육 | 대여/무상 |
| 미합중국국제 개발청(USAID)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상법, 헌법, 행정법개혁 <br> 2. 라틴 - 미국, 카리브해 제국: 헌법, 형법, 토지법 개혁 <br> 3. 동구, <br> 중앙아시아: <br> 선거법의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권력분립의 <br> 강 화 ADR 의 <br> 도입;국회, 법원, <br> 부처, 로•스쿨, <br> 훈련 기관, <br> 특별분쟁 해결 <br> 프로젝트의 <br> 지원(남아프리카) <br> 2. 라틴 - 미국,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법원에의 <br> 액세스의 <br> 발안•선도NGO <br> 의 <br> 발전;인권 - 법의 지배 주지 캠페인 <br> 2. 라틴 - 미국, <br> 카리브해 제국: <br> 여성과 토착 | 무상 |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도입 - 개혁정당 <br> - 결사법, <br> 미디어 입법, <br> NGO 입 법의 <br> 개혁 <br> 4. 추가: <br> 아메리카 <br> 합중국(United <br> States of <br> America) <br> 상업성과의 <br> 공동주최에 <br> 의한 <br> 실체상법개혁 <br> 프로 젝트 | 카리브해 제국: 법원, 국회, 옴부즈맨 사무소, 공설변호인, 중재 센터, ADR 의 전개, 경찰, 법학교육(법률 클리닉)의 지원 <br> 3. 동구, 중앙 아시아: <br> 사법 행정, <br> 법원, 국회, <br> 사법 행정청, <br> 로스쿨의 지원 <br> 4. 동남아시아: <br> 캄보디아에 <br> 있어서의 <br> 사법부 | 집단의 법원에의 액세스 강화; 일반대중의 법교육;미디어의 발전;인권NGO 의 공공지식 캠페인의 지원 <br> 3. 동구, 중앙 아시아: <br> 법률의 보급; NGOs, 여성단체, 미디어, 지방의 법학교육 운동, 커뮤니케이션 캠 페인에의 무상지원 <br> 4. 동남아시아: 여성을 위한 법정보, NGOs를 통한 토착 집단의 권리와 인권의 증진(캄보디아) |  |
| 독일기술협력청 (GTZ)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헌법개정 (에리트레아); 상법, 행정 법, 형법개정(남아 프리카) <br> 2. 라틴 - 미국, 카리브해 제국: 형법전과 절차 개혁;구두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검찰청, <br> 재판소법원대법 <br> 원의 개혁(잠비아) <br> 2. 라틴 - 미국, <br> 카리브해 제국: <br> 법원, 행정 기관, <br> 형사사법부, 인권 <br> 커미셔너(commis <br> sioner)(과테말라),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정보 캠페인, 여성의 권리의 발안 - 선도, 국경을 넘은 NGO네트워크(서 아프리카)라틴 - 미국, 카리브해 제국: 법에 관한 | 무상 |

제 6 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변론의 <br> 도입;법원법의 <br> 개정;환경법의 <br> 도입 동구, <br> 3. 중앙 아시아: <br> 민법전, 상법전, <br> 은행법, <br> 증권거래법, | 법의학의 지원 <br> 3. 동구, 중앙 아시아: <br> 헌 법재판소, 대법원(그루지야), 고등상업재판소 (우즈베키스탄)에 의 포괄적 지원 | 공공지식의 <br> 발안 - 선도 <br> 2. 동구, 중앙 아시아: <br> 법률의 보급, 법관협회를 위한 워크샵 |  |
|  | 도산법, <br> 반독점법, <br> 재판소법, <br> 국제상거래법의 <br> 제정•개정(코 <br> 카서스 지방) <br> 4. 동남아시아: <br> 노동법, <br> 사회복지법의 <br> 제정 - 개정(중 <br> 국);상법개정 | 4. 동남아시아: <br> 사법 행정, 대외 <br> 무역성 직원의 <br> 연수(중국) |  |  |
| 영국국제개발청 (DFID) | 1. 북아프리카, 중동: <br> 가정내 폭력, 성적학대, 아동학대에 <br> 대한 경찰적 <br> 감시 강화 <br> 프로그램모델적 <br> 가족보호 Unit의 <br> 설정 <br> 2. 동남아시아: <br> 커뮤니티 <br> 치안유지에의 <br> 참가적 <br> 어프로치의 |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br> 커뮤니티 경찰, 협의 그룹, 범죄예방 <br> 위원회의 설립 전통적인 커뮤니티• <br> 시스템 (예를 들면, 촌의 장로)에의 연결의 확립 (예를 들면, 말라위); 형사사 법의 강화사건의 애로의 | 1.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제국: 도로범죄예방 프로젝트(자메이카) <br> 2. 동남아시아: 법에 관한 공공지식 캠페인:여성을 위한 법적 능력강화와 조정 세미나지방NGOs 의 지원 | 무상 |

제 1 절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도입 | 삭감증인출정의 <br> 개선을 촉진하는 <br> 순서죄수 및 <br> 심리를 기다리는 <br> 구류자의 대우개선 <br> 사회 복귀 <br> 프로그램일반방 <br> 문자 계획의 도입 <br> 2. 북아프리카, 중동: <br> 가정내 폭력에의 <br> 피해자중 심리적 <br> 어프로치의 도입 <br> (예를 들면, <br> 요르단), 가족보호 <br> 문제에의 관심을 <br> 높이기 위한 <br> 공공지식 캠페인 <br> 3. 라틴아메리카, <br> 카리브해 제국: <br> 빈곤자를 위한 <br> 사회 보장의 <br> 개선커뮤니티 <br> 치안유지의 <br> 지원(자메이카) <br> 4. 동남아시아: <br> 법원에의 액세스를 <br> 쉽게 하키 위한 <br> 기금의 설립지방 <br> 수준의 기술혁신을 <br> 위한 정부 및 <br> NGO 의 개방 |  |  |
| 스웨덴 <br> 국제개발청 <br> (SIDA) |  | 1. 동아시아: <br> 법관, 집행관, 파산 재산관리인 |  |  |

제 6 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 개발원조기관 | 법령정비지원 | 법기구의 정비 | 민간기관 연계 | 자금제공형태 |
| :---: | :---: | :---: | :---: | :---: |
|  |  | 등의 능력향상 (베트남) <br> 2. 동남아시아: 행정관 연수 (싱가폴) <br> 3. 동구:행정관 연수(헝가리) |  |  |
| 캐나다국제개발청 (CIDA) | 중동: <br> 헌법기초를 <br> 위한 조사, <br> 법원제도의 <br> 구축 등의 <br> 지원(이라크) | 1. 중동: <br> 가버넌스, 인권, 선거 감시, <br> 환경, 젠더 등의 프로젝트에의 자금원조(이라크) 동구:행정, 의회의 재무처리 제도개혁(러시아) <br> 2. 중앙 아시아: 민주화, 인간의 안전보장 프로젝트 등에의 지원 | 중동: <br> 시민사회의 능력형성 (이라 크, 요르단, 레바논) | 무상 |
| 국제협력기구 <br> (JICA) | 동남아시아: <br> 민법전, 민사소송 <br> 법전기초•개정 <br> 지원(베트남, <br> 캄보디아) | 1. 동아시아: 현지조사, 본방연수 (중국, 몽고리아) <br> 2. 동남아시아: <br> 현지조사, 현지 <br> 세미나, <br> 본방연수, <br> 전문가파견 <br> 등에 의한 <br> 법학교육 지원, <br> 법 관등의 <br> 법조양성 지원 <br> (베트남, 라오스, <br> 캄보디아) <br> 3. 중앙 아시아: |  | 무상 |

$\left.\begin{array}{|l|l|l|l|l|}\hline \text { 개발원조기관 } & \text { 법령정비지원 } & \text { 법기구의 정비 } & \text { 민간기관 연계 } & \text { 자금제공형태 } \\ \hline & & \begin{array}{l}\text { 현지조사, 현지 } \\ \text { 세미나, }\end{array} & & \\ & & \begin{array}{l}\text { 본방연수, } \\ \text { 전문가파견 }\end{array} & & \\ \text { 등에 의한 }\end{array}\right)$

## 제2절 분야별 협력 모형

국내의 법제교류협력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법제교 류협력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러 한 공감대 형성한다면 협력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국내의 법제교류협력기관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법 제정보에 관한 기관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법제교류협력기관간 협 의체 구성, 법제연수협력프로그램 구축, 입법화지원협력프로그램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168)}$

이러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협력 모형은 아래 와 같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1. 중앙행정부처 협력 모형

현재 중앙행정부처로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 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168)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57-61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 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각각의 부처마다 다양한 형태의 외국과의 법제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처의 법제교류는 주로 부처의 소관 법률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거나 부처의 담당업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관 법률 또는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법제교류협력 이 이루어지 진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법제교류협력사업의 중복 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 부처 협력 모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중앙행정부처 협력 모형


죽, 각 부처에서 법제 관련 교류협력에 대해서 법제교류협력협의회 등을 통하여 내부 조율을 한 후 ODA 또는 일반 국제교류로 분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 이다.

## 2. 공공연구기관 협력모형

공공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DA사업, 연구회 국제협력사업, 기타 연구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제교류협력사업도 이러한 형태 속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 특히 ODA사업, 연구회 국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동연구 등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연구기관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법제교류협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림] 법과대학 협력 모형


## 3. 법학대학 협력모형

현행 법과대학은 학부에 있어서의 법학과(일반 법학과 대학원 포함) 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다만,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 원을 전부 포섭하여 법학대학으로 포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협력 모형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법과대학 협력 모형

4. 민간기관(경제기관) 협력모형

경제기관 민관기관의 경우는 주로 경제영리 목적의 기업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ODA 및 자체 예산을 통한 사 업 투자에 그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제 수출 보다는 경제수익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ODA 의 경우에 대상국 사전타당성 및 발전계 획 수립에 일정정도 참여하여 법제교류협력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림] 민간기관 협력 모형


## 5. 종합모형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종합모형의 구축을 구상 할 수 있다
[그림] 종합 모형


위의 종합모형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법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 치 부분이다．이러한 법제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기존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거나 시도를 하였던 조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교류지원사업 및 KLP（Korea Law Project）에서의 관련기관회의와 일본의 법정비지원연락회（法整備支援連絡会）등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교류지원사업 및 KLP 관련 국내 기관회의
■ 법제교류지원사업 및 KLP 관련 국내 기관회의
2006년 아시아 법령정보 교류 및 법제지원사업에 관한 협조체제 구 축（2006．5．11．개최）${ }^{169 \text { ）}}$
○ 국내 ALIN 파트너 기관（6개）
－고려대 통상법연구센터，국민대 북한법연구센터，한국외국어대 법 학연구소，연세대 법과대학，아시아법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
○ 정부 및 공공기관（5개）
－대법원，법무부，법제처，중앙공무원교육원，KOICA
$\square$ 아시아 법령정보 교류 및 법제협력사업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2007．4．4．개최）${ }^{170)}$
○ 국내 ALIN 파트너 기관（7개）：
－국민대 북한법연구센터，고려대 통상법연구센터，서울시립대 법률 행정연구소，아시아법연구소，연세대 중국법연구센터，한국외국어 대 법학연구소，한국법제연구원
○ 정부 및 공공기관（8개）：
－대법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법무부，법제처，외교통상부， 중앙공무원교육원，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증권선물거래소

169）한국법제연구원，아시아 법령정보 교류 및 법제지원사업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 2006 국내 ALIN기관 회의 자료집，2006．5．11．，2면．
170）한국법제연구원，아시아 법령정보 교류 및 법제지원사업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 2007 국내 ALIN기관 회의 자료집，2007．4．4．，1면．

## 일본 법정비지원연락회（法整備支援連絡会）

제1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0．1）${ }^{171)}$
$\bigcirc$ 각 기관 개요 및 활동 보고 및 질의 응답제2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0．10）${ }^{172 \text { ）}}$
○ 법정비지원연락회 기관간 지원대상법영역과 대상지역에 대한 협의
$\square$ 제3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1．9）${ }^{173)}$
$\bigcirc$ 동경대학，일본변호사연합，나고야대학대학원법학연구과，법무성법 무총합연구소 보고제4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3．1）${ }^{174)}$
$\bigcirc$ 일교대학，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제5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4．1）${ }^{175)}$
$\bigcirc$ 스루가다이대학（駿河台大学），아시아개발은행（ADB），지구환경전략 연구기관，나고야대학，관서대학，일교대학

제6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5．1）176）
○ 베트남대법원，규슈대학，관서대학，일본변호사협회，국제협력부제7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6．3）${ }^{177)}$
○ 베트남 법원，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학습원대학，나고야대학，게이 오대학
$\square$ 제 8 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7．1）178）
○ 캄보디아 법원，스루가다이대학，국제민상법센터，독립행정법인국제 협력기구（JICA），일본변호사연합회，법무총합연구소，아시아경제연구소

171）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2）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3 ）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4）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5）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6）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7）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5．html（검 색일：2014．11．28）
178）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6．html（검색일：2014．11．28）

일본 법정비지원연락회（法整備支援連絡会）
제9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8．1）${ }^{179}$ ）
○ JICA，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일본변호사연합회，일교대학（一橋大学）
$\square$ 제10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09．1）${ }^{180 \text { ）}}$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베트남사무소，최고검찰청，게이오대학，재 단법인국제민상사법센터，국제협력기구（JICA）
$\square$ 제11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10．1）${ }^{181)}$
○ 한국법제연구원제12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11．1）182）
○ 베트남 대법원，나고야대학，일본변호사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특허 청，국제협력기구（JICA），나고야대학，게이오대학，고베대학（神戸大学）
$\square$ 제13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12．1）${ }^{183)}$
○ 미국국제개발청（USAID），나고야대학，게이오대학，일본변호사연합 회，국제사법지원센터，JICA
$\square$ 제14회 법정비지원연락회（2013．1）${ }^{184)}$
○ 국연개발계획（UNDP）개발정책국，국제개발법기구（IDLO），스웨덴 국 제개발청，JICA
$\square$ 「법제교류지원사업」세미나 및 관련기관회의（2008．7．25．개최）185）
$\bigcirc$ 국내 ALIN 파트너 기관（9개）：
－국내 기관：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국민대 북한법연구센터， 아시아법연구소，연세대 중국법연구센터，서울시립대학 법률행정

179）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6．html（검 색일：2014．11．28）
180）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6．html（검 색일：2014．11．28）
181）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6．html（검 색일：2014．11．28）
182）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26．html（검색일：2014．11．28）
183）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59．html（검 색일：2014．11．28）
184）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00059．html（검 색일：2014．11．28）
185）한국법제연구원，「법제교류지원사업」세미나 및 관련기관회의， 2008 법제교류지

일본 법정비지원연락회（法整備支援連絡会）
연구소，베트남경제연구원，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국법제 연구원，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정부 및 공공기관（7개）：
－대법원，법무부 국제법무과，법제처，중앙공무원교육원，국제협력 단（KOIC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외교통상부법제교류 국내기관회의（2009）${ }^{186)}$
○ 청운대 베트남학과，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법제교류 간담회（2011）${ }^{187)}$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경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대외경 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LDI
$\square$ 국내회원기관 간담회（2013）${ }^{188)}$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국민대학교 법과대학，아시아법연구 소，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quare$ ALIN 국내 회원기관 및 협력기관 전문가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2014）
○ ALIN 국내 회원기관 및 협력기관 전문가회의 189）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대학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건국대학 교 법학과，해양수산개발원 미래전략연구본부，국회，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한남대학교 법학과，신라대학교 법학과

원사업 자료집，2008．7．25．，1면．
186）한국법제연구원，법제교류지원사업（П），최종심의자료，2010，11－13면．
187）한국법제연구원，법제교류지원사업（VII），최종심의자료，2014，43－53면．
188）한국법제연구원，법제교류지원사업（VI），최종심의자료，2013， 13 면．
189）한국법제연구원，법제교류지원사업（VII），최종심의자료，2014，47－48면．

일본 법정비지원연락회（法整備支援連絡会）
○ 정책실무협의회 190）
－사법연수원
$\square \mathrm{KLP}\left(\right.$ Korea Law Project（II）관련 정책실무협의회（2014）${ }^{191)}$
$\bigcirc$ 헌 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한국국제협력단（KOICA），언론중재위 원회，사법정책연구원，법제처，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러한 기관은 강제력이 있는 정책결정기구는 아니고，관련 기관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법제교류협력위원회를 허브로 하는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즉，이 법제교류협력위원회는 매 년 개최되는 각 부분별 법제교류협력과 관련한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이를 통하여 개별 부문별 및 전체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피하 고 개별 부분별 단위들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다만 이러한 위원회의 소속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이러한 소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사업 수행상의 효율화를 고려한다면 부처 또는 공공부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이를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190）한국법제연구원，법제교류지원사업（VII），최종심의자료，2014，63－64면．
191）한국법제연구원，KLP（Korea Law Project（II），최종심의자료，2014，38－39면．

## 참 고 문 헌

## 문 헌

권오승 외,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법무부용역과 제, 법무부, 2004. 12. 15, 46면(http://www.prism.go.kr(검 색일: 2014.11.28)).

권오승 외 3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권율 외 4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 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6.

김대인,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제 1 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김대희•홍승진•이영호, 일본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사 업에 관한 연구-팀제훈련보고서-, 법제처, 2007.

김한칠 외, 우즈베키스탄 증권법제 현대화 작업 지원방안 연구 법무 부 용역과제, 2013. 12. 17, 4면((http://www.prism.go.kr(검색일: 2014.11.28).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법제처, 일본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팀제훈련 보고서, 법제처, 2007. 8(http://world.moleg.go.kr/news/ report/11 (검 색일: 2014.11.28)).

심동섭, 세계화와 법의 교류, 해든, 2006.

이성환 외, 법제수출을 위한 기본전략과 과제, 법제처•법령정보관 리원, 2012.7.31, 134면(http://www.prism.go.kr)(검색일: 2014.11.28).

이민형 외,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및 운영체 계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2012-1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이준표, 메콩경제권 국가들의 기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외 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비교사법 제 16 권 1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3.

James J. Duderstadt,(이철우•이규태•양인 옮김),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최상덕, 아시아 대학생 이동 프로그램 Campus Asia 설계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2009. 5.

한국행정학회, 선진 각국의 기업법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등 현황 과 발전적 모델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김륜옥,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대학교육 제160호, 2009.
김상률, "대학 국제교류의 실태와 영향", 대학교육 제169호,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 =3994(검 색일: 2014.11.28)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논집 제 18 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3.

김창록, "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법학논고 제32집, 경북 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

김철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활용 기관의 역할과 과제", 국제개발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포럼 발표자료 집 논문(주제 II), 2013.

김현미,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 제5 권2호, 2012 .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강법률논총 제 3 권 제 1 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문흥안,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법제연구 통권 제4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3.6.

박광동,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본 ODA에 대한 고찰", 입법학연구 제7집, 한국입법학회, 2010.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기초이론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원 광법학 제 25 권 제 3 호, 2009. 9.

법제처, "한국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출에 관한 고찰",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기념 로스쿨 대상 공모전 논문, 2012.

손희권,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학교육 제 178 호, 2012. 9-10,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78\&no =4190(검색일: 2014.11.28)

손희두, "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동북아법연구 Vol. 3, No. 2, 2009.

양효령,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지원에 의한 인재양성 현황과 시행방 안",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 2009. 12.

이재훈•배소현•주상희, "ODA를 통한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2, 5 면
(http://world.moleg.go.kr/news/data/927(검 색일 : 2014.11.28)).
이태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문제점 및 ODA 제도개선 방안", 한 국형 ODA 선진화 방안 자료집, 2010. 12. 10.

정연호, "한국대학의 국제화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제169호,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2011.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3996(검색 일: 2014.11.28)

정용상,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 비교법연구 제 12 권 제1호, 동국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4.

홍준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양적 성장과 질적 햐앙의 딜레 마", 대학교육 제184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magazine. kcue.or.kr/last/popup.php?vol=184\&no=4309(검색일: 2014.11.28)

ADB, "Enhanc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Technical Assistance Consultant's Reports), August, 2007

## 자 료

<연합뉴스> (2012년 1월 10일자)
<중앙일보> (2013년 11월 14일자, 2014년 6월 10일자).
<매일경제> (2013년 5월 27일자)
<연합뉴스> (2013년 11월 17일자)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2004. 10. 4.
손기식, 마인섭,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계획서", 2012. 1.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 법령정보 교류 및 법제지원사업에 관한 협

조체제 구축,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 2006 국내 ALIN 기관 회의 자료집, 2006.5.11.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 법령정보 교류 및 법제지원사업에 관한 협 조체제 구축,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 2007 국내 ALIN 기관 회의 자료집, 2007.4.4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사업」세미나 및 관련기관회의, 2008 법제교류지원사업 자료집, 2008.7.25.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사업(ㅍ), 최종심 의자료, 2010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사업(VI), 최종심 의자료, 2013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사업(VII), 최종심 의자료, 2014 한국법제연구원, KLP(Korea Law Project(II), 최종심의자료, 2014

##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방문일: 2014. 11. 28.)
http://www.lawasia.org(검 색일: 2014.11.28)
http://www.uncitral.org/(검 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ksp/ksp.jsp (검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projects/modul.jsp(검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projects/jointlist.jsp(검색일: 2014.11.28)
http://www.uncitral.org/(검 색일: 2014.11.28)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5
\&strWrtNo=2973\&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
0000\&strOrgGbnCd=100000(검 색일: 2014.11.28)
http://www.unodc.org/(검 색일: 2014.11.28)
http://www.spo.go.kr/spo/major/network/network01.jsp(검 색 일: 2014.11.28.)
http://world.moleg.go.kr/introduce/world.moleg.go.kr(검색일: 2014.11.28)
http://www.moleg.go.kr/news/mglNews?pstSeq=68495(검 색일: 2014.11.28)
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검색일: 2014.11.28)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9\&menuNo=222(검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ksp/ksp.jsp(검 색일: 2014.11.28)
(http://jaeyoung.net/?c=user\&cur_page=5\&idx=408\&mcd=commission\&me = bbs_detail)(검색일: 2014.11.28)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11\&menuNo=305(검 색 일: 2014.11.28)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m7Umcmo22L8J:w ww.mofa.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3Fboardid\%3D235\%26tablename \%3DTYPE_DATABOARD\%26seqno\%3D07400afb4fe005dfe006b062\%26f ileseq\%3D01afcffd1fe707105aff6049+\&cd=2\&hl=ko\&ct=clnk\&gl=kr(검 색 일: 2014.11.28)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4_S04.jsp(검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pillars/policymain.jsp(검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pillars/jointmain.jsp(검색일: 2014.11.28)
http://www.ksp.go.kr/kr/pillars/modulcycle.jsp(검 색일: 2014.11.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2264\&ancYd=20100125\&ancNo =09938\&efYd=2010072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0000 (검색일: 2014.11.2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7648\&ancYd=19910114\&ancNo= 04313\&efYd=1991011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0000(검색일: 2014.11.28)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19\&menuNo=222(검색일: 2014.11.28)
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_00025.html(검 색일: 2014.11.28)
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_00026.html(검 색 일: 2014.11.28.)
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_00059.html(검 색 일: 2014.11.28)
http://www.moj.go.jp/housouken/housouken05_00059.html(검 색 일: 2014.11.28)
http://moleg.tistory. com/3101(검색일: 2014.11.28).
http://www.odakorea.go.kr(검 색일: 2014.11.28)
http://www.scourt.go.kr(검색일: 2014.11.28)
http://www.odakorea.go.kr(검 색일: 2014.11.28)
http://www.klri.re.kr(검색일: 2014.11.28)
http://www.e-alin.org(검색일: 2014.11.28)
http://www.stepi.re.kr(검 색일: 2014.11.28)
http://www.krihs.re.kr(검 색 일: 2014.11.28)
http://www.kiep.go.kr(검 색일: 2014.11.28)
http://www.kisdi.re.kr(검 색일: 2014.11.28)
http://www.kdi.re.kr(검 색일: 2014.11.28)
http://www.kwdi.re.kr(검색일: 2014.11.28)
http://www.kipf.re.kr(검색일: 2014.11.28)
http://www.kipa.re.kr(검색일: 2014.11.28)
http://www.kic.re.kr(검색일: 2014.11.28)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100846(검 색 일: 2014.11.2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 $\mathrm{id}=20141011015002$ (검 색일:
2014.11.28.) 서울신문, 2014. 10. 11.
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strOrgGbnCd=100000
\&strRtnURL=MOJ_40402000\&strFilePath=moj/\&strNbodCd=noti0703(검 색일: 2014.11.28)
http://www.kosis.kr/
http://www.ksif.or.kr/business/locSejong.do(검 색일: 2014.11.28)


[^0]:    1) (1)후진국을 돕는 인도주의, 한국의 국제적 책임의 완성, (3)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 화, (4)교역의 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 (5)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초, (6)법의 지배 강화정책과 동북아 평화, (7)한국법제의 성장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한 장래 발 전에 기여, 한국법의 세계화에 기여, (8)통일 또는 북한 체제 개방 대비 경험 비축 등[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43-45면].
    2)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이념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8, 79면; http://moleg.tistory. com/3101(검 색일: 2014.11.28).
    3) 박광동, 앞의 글, 80-81면.
[^1]:    7) KOICA는 개발도상국의 교육, 보건, IT 등 특정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물, 시설물, 기자재 등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 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간(통상 2 년 5 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총 지원액의 약 $50 \%$ 이상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봉사단 파견, 연수생초청, 해외재난긴급구호, 평화구축지원, ODA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OICA 단독 사업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 하는 민간단체 $(\mathrm{NGO})$ 의 해외원조활동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을 분담 수행한다.
[^2]:    9) ODA Korea 홈페이지 : http://www.odakorea.go.kr(검색일: 2014.11.28)
[^3]:    13）법제처，＂한국 헌법재판소제도의 수출에 관한 고찰＂，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
    최 기념 로스쿨 대상 공모전 논문，2012，20면
    14）손희두，＂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동북아법연구 Vol．3，No．2，2009，86면．
    15）손희두，앞의 글， 86 면．
    16）손희두，앞의 글，87면．

[^4]:    33) James J. Duderstadt,(이철우 - 이규태 - 양인 옮김), A University for the 21 st Century,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85-86면.
    34) 정연호, "한국대학의 국제화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제 169 호,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2011.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3996(검색일: 2014.11.28)
[^5]:    41) 사실 사법고시에서 영어는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700 점만 넘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    52）정연호，＂한국대학의 국제화 현황과 과제＂，「대학교육」（제169호），한국대학교육협 의회．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3996（검색일：2014．11．28）
    53）김상률，＂대학 국제교류의 실태와 현황＂，「대학교육」（제169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169\＆no＝3994（검색일：2014．11．28）
    54）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유학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다음에서 살펴볼 유학정책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7]:    57) 손희권, 대학교육」(제178호), 2012. 9-10,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php?vol =178\&no=4190(검색일: 2014.11.28)
    58)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100846(검색일: 2014.11.28) 참조.
[^8]:    70) 권오승 외 3 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 면.
[^9]:    제3호, 2009. 9. 208면 이하에 이들 기관들의 법제교류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다.

[^10]:    75) 문흥안, 앞의 글, 787-789면에 의하면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경우 $61.9 \%$ 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79)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강법 률논총 제 3 권 제 1 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45 면.
    80) 류병윤, 앞의 글, 145 면.
    81) 박광동, 앞의 글, 214면.
[^12]:    2009.5., 93-94면.

[^13]:    ‘한일중 청년모의정상회의‘는 지난 8월 25일(월)부터 30 일(토)까지 5 박 6 일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으며 외교부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이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교류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혼란 스러운 현 시기에 개최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의미가 적지 않고, 한중일 3 국의 평화적인 민간 교류를 위하여 기획된 한일중 청년모의정상회의는 대 한민국, 중국 및 일본의 청년 리더들이 각 국을 대표하여 참가한 정상회 의 형식으로, 참가자들은 동북아의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심 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중일 3국의 공동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일 3 개국의 대학(원)생 52 명이 참석하여 경제, 환경, 문화 등 총 3 개 분야에서의 전문가 강연을 듣고 분과별 토론 및 국별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성명 및 각국 정상 입장 표명문을 작성하였으며, 민속촌 방 문 및 문화 공연 관람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이번 회의의 성 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향후 매년 한일중 청년모의정상회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참가한 학생 스스로 논의하였다.

    제 1회 한일중 청년모의정상회의 (2014.08.25 - 2014.08.30), 52명 참가

[^14]:    110) 아시아법연구소 권오승이사장은 언어장벽을 법제교류협력사업의 중요한 문제점 으로 지적하고 있다.
    111)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이요한 교수의 자문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15]:    139) KSP 웹사이트 참조 http://www.ksp.go.kr/kr/projects/jointlist.jsp(검색일: 2014.11.28)
[^16]:    \&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검 색 일: 2014.11.28)
    145) <연합뉴스> (2013년 11월 17일자)

[^17]:    147）세계법령정보센타 웹사이트 http：／／world．moleg．go．kr／introduce／world．moleg．go．kr（검 색일：2014．11．28）

[^18]:    150) 2014.11.19.부터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이 보고 서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기능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자치부로 조직개 편이 되어 아직 관련 자료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151) 이에 따른 주요 업무는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 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3)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4) 부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굴.조
[^19]:    정，6）부내 법령업무 총괄，법령의 공포 및 관보 발간，7）부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8）부내 역량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9）부내 민원 （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의 개선，10）부내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11） 부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12）부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13）부내 국제협력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업무 연구 지원 등임．

